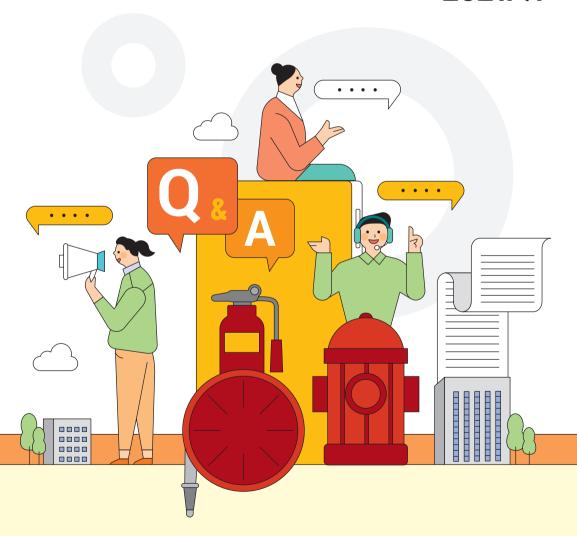
2021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

2021.9.





일러두기

- 본 질의・회신집에 수록된 사례는 민원인이 제시한 문장 및 자료 만을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내용의 유사성만으로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내용이 유사하다 하여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 또는 각종 신고 및 불복청구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합니다.
- 질의·회신사례집에 수록된 민원처리사례는 2015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처리된 사례 중 대표적인 내용들을 모아서 정리하여, 해당년도 법령을 함께 수록하였으므로 사례별 처리내용에서 인용된 법령은 개정이나 폐지, 정부 정책의 변경 등이 이루어진 경우 참조하기 부적정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Ⅰ 」 소방시설법	1
1. 건축허가등의 동의	3
2.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유지·관리 ·····	7
3.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13
4.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실 유지·관리 ······	15
5. 임시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설치기준 ·····	22
6.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26
7. 증축 또는 용도변경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35
8.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	41
9.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56
10. [별표6]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	······ 75
11. 무창층의 정의	81
12.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보고서 제출	84
13. 소방안전관리[보조]자	99
1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106
15. 실내장식물의 방염대상물품 관련	109

Π	ı 다중이용업소법	113
1.	영업장 내 안전시설등 설치 관련 질의 등	115
2.	간이스프링클러 소급적용 대상 관련 질의 등	120
3.	영업장 내부구획 및 구획된 실 관련 등	122
4.	영업장 바닥면적 산정 및 방염 면적 산정 등	123
5.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 등	128
6.	기타 질의사항 등	134
\blacksquare	₁ 소방시설공사업법	139
1.	소방시설업의 등록	141
	소방시설업의 운영	
3.	설계	149
4.	시공	157
5.	착공신고	165
6.	완공검사	169
7.	감리	172
8.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	180
9.	소방기술자의 의무	189
IV	ı 화재안전기준	193
1.	화재안전기준(기계) ····	195
	화재안전기준(전기)	

소방시설법

1. 건축허가등의 동의 [^(약칭)소방시설법 제7조, 시행령 제12조]

□ 건축허가동의 관련 소방시설설치 기준일자

[소방시설법 제7조]

관계법령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요구받으면 그 건축물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행정기관에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한다.

질의 1

● 연면적 450㎡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최초 건축물 사용승인시에 비상경보설비 설치가 되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일과 사용승인일 중 소방시설설치기준 적용일은?

🔍 회신 1

 ○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 ・협의 및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방시설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건축허가등과 관련한 협의과정이 누락되었다면, 건축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적용합니다.

질의 2

최초 사업허가승인월이 '13년 6월인 대상물의 사업이 변경되어 최종 사업허가승인월이 19년 2월인 경우, 소방시설법 적용 기준일은?

🕒 회신 2

◎ 소방시설설치기준 적용 기준일은 최초 사용승인계획 신청 시점입니다.

 최초 건축허가과정에서 허가동의된 사업계획은 이후 사업 변경계획이 신청 되어도 변경계획이 신청된 시점의 소방시설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칙 〈대통령령 제27810호, 2017.1.26.〉호제2조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에 관한 적용례에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어, 사용 승인계획변경 등 허가의 변경사항은 개정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 니다.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 범위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2조]

관계법령

제12조(건축허가등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목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질의 1

● 연면적 400㎡ 이상인 지상4층의 다세대주택이 소방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 회신 1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1호가목에 따라 연면적이 400㎡ 이상이지만 층수가 5층 미만인 다세대주택은 소방시설법상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에 해당되지 않아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이 아닙니다.

0-

□ 다만, 별표2 제118호자목에 따라 50세대 이상인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의 내부(필로티와 건축물 지하 포함)에 설치된 주차장은 소방시설법 상 특정 소방대상물에 해당(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되어 건축허가등 동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질의 2

■ 1층에 50m²의 사무실을 휴게음식점으로 기재사항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 회신 2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제2항제2호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동의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 용도에서 휴게음식점 용도로 표시변경하는 것은 소방시설을 추가할 사유가 없어 건축허가동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 3

① 연면적 400m² 이상인 건축물에 약 40m²를 증축하는 경우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 회신 3

- 건축허가동의시 연면적 400㎡ 이상의 건축물이란 건축허가신청서상에 기재된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 해당합니다.
- ◎ 건축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기존 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해 현재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또는 증축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축 부분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유지 관리[소방시설법 제9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소방시설법 제9조]

관계법령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질의 1

🕒 회신 1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설치할 의무가 없지만 관계인이 자발적 으로 설치한 설비를 임의설비라 하고, 그 중 관계인이 소방관련법령에 적합 하게 설치되기를 원해 착공신고 등 관련절차에 따라 설치되는 설비를 자진 설비라고 합니다.
- 자진설비 전체를 존치할지 철거할지 여부는 관계인이 판단하는 사항이나, 자진설비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판단할 때 일부 장소에 대한 설치 제외 등의 사항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만약 설치된 설비가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인 경우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 안전기준』 제11조제1호에 따라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는 분사헤드의 설치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자진설비 관련 용어정의 및 관렵법령 적용기준]

○ 설비종류별 용어정의

설비명	정 의
소방시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설비
법정설비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상 설치의무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대체설비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6]에 따라 설치할 경우 법정설비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자진설비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상 설치의무가 없으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관련 법 령에 적합하게 설치되기를 원하는 소방시설
임의설비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상 설치의무가 없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자 진설비 제외) 또는 소방시설과 구성품·기능·구조 등이 유사한 설비

○ 설비별 법령 적용기준

구 분		착공신고 및	자체점검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	형식승인 제품사용	위반시 처벌	
		감리자 지정				공사업법	시설법
법정설비	0	0	0	0	0	0	0
대체설비	0	△1)	0	△2)	0	0	0
자진설비	0	△3)	X	X	0	0	X
임의설비	Х	X	Х	X	Х	Χ	Х

- 1) 비상경보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로 대체한 경우『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제1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2)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상 설치의무가 있는 소방시설(법정설비) 기준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결정
 - 예)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이나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 비상 경보설비를 면제받은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없음
- 3) 착공신고는 하여야 하나, 소방공사감리자는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질의 2

■ 스프링클러배관 누수부위에 관련부속을 체결하거나 부식된 동관을 컷팅한 후 부속체결 연결작업을 소방안전관리자가 자체보수해도 되는지?

🕒 회신 2

-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범위내에서의 정비행위는 소방시설법 및 공사업법 상 위반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가 보수행위와 관련하여 관계인으로부터 대가를 받을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업자가 하여야 하므로 관련법령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법 제9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어, 스프링클러설비 배관 관련 보수작업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행위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범위 중 하나로 판단됩니다.

질의 3

 사용하지 않는 건물(일반인 출입불가)의 기존 소방시설을 계속 존치하고, 유지 보수를 해야 하는지? 철거가 가능한지?

🕒 회신 3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법 제9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고,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다만, 소방제도과-2138(2016.04.27.)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폐업·폐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단전·단수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자체점검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여 단전·단수 사항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유예 신청서를 작성 제출(1년 마다 재신청)하여야 하며, 민원인이 유예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 의무는 지속되므로 소방시설을 철거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 소방시설 유지 관리할 때 폐쇄 및 차단 행위

[소방시설법 제9조]

관계법령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 · 관리)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

◎ 점

질의 1

- ➡ 해당 사항이 과태료 및 조치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 수신반 주경종, 지구경종 '정지'상태로 방치되어 있는데, 점검현장에서 '자동'으로 조치가 된 경우
 - 소방펌프가 '잠김'상태로 방치되어 있는데, 점검현장에서 '열림'으로 조치가 된 경우

🕒 회신 1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10 제2호개별기준 가목2)나)에 따라 주경종 및 지구 경종을 정지상태로 방치한 것은 소방시설을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과태료 처분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방 펌프가 잠김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차단 및 폐쇄에 해당하는지,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 해당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같은법 제9조제1항(과태료)과 제9조제3항(벌칙처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 화재안전정보조사 과정에서의 불법 사항을 해소한 것과 소방시설법 위반은 별개의 사항이므로, 벌칙 및 과태료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2

■ 복합건축물의 화재로 화재피해가 발생하였음. 당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오작동으로 오인하여 주경종 및 지구경종을 정지한 후 현장을 확인한 바 화재로 확인되어 방송설비를 통해 전체 건물에 화재상황을 전파하였다고 함. 해당 행위가 과태료 및 입건처분대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회신 2

 해당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기재사항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며, 처벌 관련 결정은 관할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서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해당 사항에서 관계인들이 소방시설의 오작동으로 오인하여 일시적으로 정지하였다고 하나 그 행위자체가 소방시설법 위반에 해당되고, 관련 행위로 인해 화재피해가 명백히 발생하여 위반행위에 해당 될 것으로 해석됩니다. 소방시설은 점검 및 정비의 목적으로 하지 않고는 폐쇄 및 차단을 할 수 없으며, 화재 당시 관계인들의 행위는 정비 목적보다는 오작동 확인을 위한 행위로 해석됩니다.

별표10 과태료 부과기준 제2호 개별기준에서 제9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경우 중 고장상태의 방치 조항이 소방시설의 차단·폐쇄행위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 요소가 있고, 최근 화재현장 관계인 처벌사례에서 수신기 주경종 및 지구경종 정지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서 차단·폐쇄로 해석한 판례가 있습니다.

질의 3

 할론소화설비가 설치된 공간에서 소방설비의 정비작업이 아닌 타작업으로 인한(연기가 발생하는 작업) 오작동을 우려하여, 할론소화설비가 자동으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조작 한 경우 소방시설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 해당 사항의 경우 할론소화설비의 오작동이 우려된다고 하나 소방시설법

제9조제3항에 규정된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단서조항이 없어 법적으로 해석의 여지가 없으며, 자동작동에서 수동작동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있는 폐쇄(잠금)·차단 행위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또는 유지·관리한 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할론설비를 수동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오작동에 대비하여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위치 인근 및 제어반에 작업 감시자를 배치하는 것으로 대처해야 한다고판단됩니다.

3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소방시설법 제9조의 2, 시행령 제15조의2]

□ 소방시설 내진설계 적용대상 및 기준

[소방시설법 제9조의2]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제9조의2】

제9조의2(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 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 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2 】

제15조의2(소방시설의 내진설계)

- ① 법 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 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② 법 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중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말한다.

질의 1

■ 자진으로 설치하는 소화설비(스프링클러 등)에도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 회신 1

□ 내진설계기준에 관한 적용은 소방시설법 부칙〈제11037호,2011.8.4.〉제3조 (내진설계기준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이 법 시행(2012.2.5.) 후 최초로 신축 · 개축 · 증축 · 재축 ·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등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새로 설치되는 소방시설부터 적용합니다. 건축행위와 무관하게 자진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내진설계기준 적용 의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내진설계 기준에 맞게 소방시설 설치를 권고 드립니다.

질의 2

■ 옥내소화전이 설치된 기존 대상물이 있는 상태에서, 건축물 별동 증축 시 옥내소화전 설비가 설치됨. 옥내소화전 펌프 및 수조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 대상물에서 분기하여 설치할 경우 기존 소방시설에 대하여 어디까지 적용해야 하는지?

🕒 회신 2

- 소방시설법 제9조의2와 부칙〈제11037호,2011.8.4.〉제3조(내진설계기준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축, 개축, 증축, 재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등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새로 설치되는 소방시설부터 적용되어, 민원인이 질의하신 증축하는 특정소방 대상물은 소방시설에 내진설계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 기존 건축물의 펌프와 수조를 활용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소방설비에도 내진을 적용하여야 하나, 관할 소방서에서 기존 건축물의 소방설비에 대한 내진설계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별동 부분에 한하여 내진설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소방시설의 내진설계의 기준 제2조】

- ① 제2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2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이하이 조에서 "각 설비"라 한다)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각 설비의 성능시험배관, 지중매설배관 등은 제외한다.
- □ 물분무등 소화설비 대상 중 내진설계의 기준 적용 대상 소방시설의 내진설계의 기준 제2조제1항에는 내진설계 적용 대상에 물분무등 소화설비로만 규정하고 있으나,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해설(2016.1.소방제도과)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에 관련해 가스계소화설비 저장용기의 고정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명시하고있습니다.

0-

4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소방시설법 제10조]

피난방화시설등에 폐쇄. 훼손. 물건적치등 위반행위에 관한 질의

[소방시설법 제10조]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제10조】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 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있다.

질의 1

▼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된 피난계단 방화문의 법적 관리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방화문을 닫고 사용해도 되는지, 수신기 신호를 차단해도 되는지?

🕒 회신 1

□ 민원인 영업장에 설치된 문이 피난계단에 설치된 방화문에 해당될 경우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합니다. ● 닫힌 상태로 사용하는 것은 (약칭)소방시설법 제10조 피난시설,방회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조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수신기 신호를 임의로 차단하거나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를 임의 훼손하는 행위는 소방시설법 제10조 위반행위에 해당됩니다.

질의 2

■ 옥상출입문 관리방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요구함. 종전 지침에 있는 옥상출입문 관리 방안에 따라 관리하면 되는지?

🕒 회신 2

- □ 민원인이 기재하신 사항은 "신고대상에 대한 위반행위별 세부기준 지침 (2010.09.29)"에 기재된 옥상광장등의 출입문 개방에 대한 지침으로 판단 됩니다. 해당 옥상출입문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 권고사항은 건축법시행령 제40조제2항 및 3항에 규정된 옥상광장설치대상 및 헬리포터 대상으로 한정 하여 명시한 지침으로 헬리포터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 옥상출입문은 해당 지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의2(2016.2.29.) 개정 이후 허가 받은 공동주택은 옥상출입문 확보 및 개방하여야 하나 그 이전 허가된 공동 주택은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권고사항입니다. 그리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출입문)에 따라 옥상 출입문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되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합니다.
- 이 경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고시 개정이전에 허가받은 헬리포터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기존 지침을 준용할 수 있으나, 화재등 비상시 자동 개방되는 구조의 경우에는 KFI 인증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질의 3

■ 공용복도에 자전거를 2단으로 설치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지않는 경우, 계속적으로 자전거를 복도에 보관해도 소방시설법 저촉되지 않는지?

🕒 회신 3

- 소방시설법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난시설(복도, 계단 포함)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 다만,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관련 세부기준지침(2010.9.28)에 따라서는 ①복도(통로)에 자전거를 질서있게 일렬로 세워둔 경우 ②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③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 쪽에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등에는 비상구폐쇄 행위등 불법행위 신고대상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제외 지침이 적치물 허용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며, 소방 시설법 제10조에 따라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 물건적치의 예외규정은 없으므로, 해당 적치물에 대한 이동명령을 위반하고 계속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위법사항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전거를 피난통로상에 세워두는 것은 자물쇠로 잠그든 그렇지 않든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현장확인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므로 자물쇠로 잠가놓는 경우 이동조치가 불가하므로 위반행위 정도가 더욱 크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질의 4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이 옥상을 폐쇄하는 경우 소방시설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 회신 4

- 옥상문 의무개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의 옥상 폐쇄 또는 잠금 행위에 대한 소방시설법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 (약칭)소방시설법 제10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에 대한 폐쇄, 훼손, 물건적치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조항 이므로,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5층 이상의 주택이나, 주택과 근린・ 업무등이 한 건축물에 같이 있는 복합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옥상문 개방 및 자동폐쇄장치 설치대상은 건축법상 옥상광장 설치대상과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2016. 2. 29. 이후 허가받은 공동주택의 옥상입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옥상문 개방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계인의 판단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질의 5

■ 공동주택 공용 복도 끝에 붙박이장 설치시 소방시설법에 접촉되는지?

🔍 회신 5

-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관련 세부 기준지침(2010.9.28.)에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된 경우 그 끝 쪽에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비상구 폐쇄 행위등 불법행위 신고대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제외 지침이 적치물 허용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며, 소방시설법 제10조에 따라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는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 특정 개인의 공용부분 무단 사용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관할 건축관련 부서에 위법사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질의 6

- ☑ 질문1): 건축물의 바닥을 임의로 철거하고, 층간방화구획을 훼손 또는 변경 후 직통 계단을 새로 만든 경우, 소방시설법 제10조 제1항 훼손행위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 □ 질문2): 해당 경우에 직통계단을 무단으로 만들면서, 기존에 있던 직통계단 2개소 중 하나를 폐쇄하고, 다른 하나의 계단까지 새로 만든 계단을 통하지 않고는 건물 밖으로 나갈수 없는 경우 피난시설 폐쇄행위로 소방시설법 제10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 □ 질문3): 오래된 건축물로 무단변경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위법사실을 판단을 정황 사실로 판단할 수 없는지, 해당 구청에 위반사실을 꼭 확인받아야 하는지?
- ☑ 질문4) : 직통계단등 불법건축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 소방서에서 소방시설법 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해야 하는것이 아닌지? 건축부서 통보만으로 끝나는 것인지?

🕒 회신 6

- 답변1):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마다 방화구획을 하여야 하며, 매층 (2019.8.6.이전에 허가된 건축물의 경우는 3층이상의 층과 지하층) 마다 구획하여야 합니다. 민원인의 경우가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고,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방화구획을 허가없이 철거하였다면 소방시설법 제10조제1항 위반에 해당 될 것으로 해석됩니다.
- □ 답변2): 해당 경우가 건축법상 직통계단 설치대상 및 직통(피난)계단 2개소 이상 설치대상에 해당한다면, 소방시설법 제10조제1항 폐쇄행위 위반에 해당 될 것으로 해석됩니다.
- □ 답변3): 건축법 관련사항에 해당하고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황상황만으로 판단하여 소방시설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민원인의 기재한 주변 사람들의 진술, 거리뷰 같은

사항으로 정황상 위반여부를 유추할 수는 있으나, 그 사항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피난통로의 폐쇄나 훼손이 명확한 경우는 소방시설법 제10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관련 공무원이 현장에서 판단할 때 관련법 위반여부를 정황 사실만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라면, 관련 부서에 위반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해당 사항이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 답변4): 소방시설법 제10조 제2항을 근거로 훼손 및 폐쇄행위에 대해 정상화 명령을 하여야 하나, 조치명령의 내용이 건축행위를 동반하여야 한다면 소방시설법 제10조를 근거로 건축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령할 수 없다고 해석되며, 해당 사항은 관할 건축부서에서 명령 해야 합니다.

질의 7

- □ 아래의 해당 사항이 소방시설법 제10조 피난시설등 훼손에 해당하는지?
 - 개인세대 아파트 방화문에 디지털 도어락 설치
 - 방화문에 도어클로져 설치
 -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열쇠 구멍이 없는 방화문에 구멍을 뚫어 디저털 도어락 설치

🕒, 회신 7

- 자동카드키 또는 번호키가 부착되어 피난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디지털도어락 설치가 소방시설법 제10조에 규정된 피난시설 등의 훼손(폐쇄포함)이나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다만, 방화문에 설치하는 디지털도어락은 국토교통부고시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제5조제4항에 따라 KSC 9806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 도어클러저를 방화문에 설치하는 행위는 소방시설법 제10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제8조 기준에

적합한 것(방화문 전용)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옥상층이 피난층에 해당하거나,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 옥상에 해당하는 경우 화재 시 개방이 되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해당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피난시설 훼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다만, 자동개폐장치는 KFI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임시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설치기준(소방시설법 제10조2, 시행령 제15조의6)

임시소방시설 유지 관리 책임에 관한 질의

[소방시설법 제10조2]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제10조2】

제10조2(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 (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라 한다)는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 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이 조에서 "임시소방시설"이라 하다)을 설치하 고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질의 1

🦳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비용은 시공자 중 건축 시공업체 모두를 부담해야 하는지? 소방 설비로 보고 소방공사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 회신 1

소방시설법 제10조의 2에 규정된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관련 사항은 안전에 관한 규정이며, 경비에 관한 산정 방법 등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 공사를 하는 자 및 설비 설치자 모두를 포함합니다. 관련 조항의 시공자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 중입니다.

질의 2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비용의 집행주체가 시공사이면 타현장에서 사용한 성능상 이상이 없는 자재를 사용해도 되는지? 자재의 수량과 규격을 발주처와 상의하여 감(삭제)할 수 있는가?

🕒 회신 2

- ▲ 소방관계법령에서는 공사현장의 화재위험작업시 안전을 확보하고자 임시소방 시설 설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설치기준만을 정하고 있을 뿐 이전 사용 시설의 재사용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 임시소방시설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감소하여 설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의2]에 적합하게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는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설치 시기·위치·종류·방법 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포함)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첨부서류를 확인하시어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

■ 냉동고 설치 작업 관련 우레탄폼 시공 때문에 환기시설 및 간이소화용구를 비치해놓을 예정임. 화재감시자도 배치할 예정인데 폼사용과 관련한 강제규정이 있는지?

🖳 회신 3

- 소방시설법 제10조의2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는 공사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하기 전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에 인화성물품의 취급이나 작업에 관련된 사항은 소방시설법상에서는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해당 작업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침중에 '경질폴리우레탄폼 취급시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F-3-2014)'에 따라 작업하여야한다고 판단됩니다

임시소방시설 설치해야하는 작업에 관한 질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5]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제15조5】[별표5의2]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 제15조5(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 1.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 2. 용접 · 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火氣)를 취급하는 작업
-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 4.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질의 1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5 제1항제2호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에 절삭(그라인더작업, 금속컷팅작업등)작업이 해당하는지?

🖳 회신 1

○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작업 항목 중 '불꽃을 발생시키거나'에 절삭 작업이 해당 된다고 해석됩니다. 용접・용단작업은 주변에 인화성 물질의 존재유무와 상관없이 고온의 불꽃, 불티의 비산이나 열로 인해 화재를 일 으킬 수 있으나, 연마나 절단작업은 인화성물질이 존재하는 경우 작업 중 발생하는 높은 마찰열이나 스파크가 점화원으로 작용하여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어, 임시소방시시설을 설치해야하는 작업 항목에 해당한다고 해석 됩니다.

□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작업에 관한 질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5]

관계법령

[별표5의2]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2.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가. 소화기: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 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 사 중 제15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하는 현장(이하 "작업현장"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질의 1

의 임시소방시설 중 소화기는 층별 2개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공사하는 층의 바닥면적이 3500㎡인데 화재안전기준처럼 2개만 설치하면 되는지?

🕒。 회신 1

○ 임시소방시설 중 소화기는 시행령 제15조의5제1항(인화성작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제4조제2호에 따라 층별 2개소만 설치하여야 하나, 바닥면적이 넓은 경우는 화재 시 신속히 대응하도록 추가 설치를 권고합니다.

6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6]

의료시설 소급에 관한 질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6〕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6】

제17조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2.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 재속보설비

부칙 〈제30029호, 2019, 8, 6,〉

- 제4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1호마목1)나) 및 같은 표 제2호마목6)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 1.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혐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 2.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의 개설신고 또는 개설변경(개설 장소의 이전만 해당한다) 신고를 하는 경우
- 제5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2022년 8월 31일까지 별표 5 제1호라목4), 같은 호마목3) 및 같은 표 제2호마목7)의 개정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별표 5 제1호라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하여 간이스 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질의 1

☑ 기존 의료시설의 2~5층 부분을 의료시설로 사용하고 있고, 1층은 일부 부분만 의료시설에 해당함. 이 경우 의료시설에 해당하지 않은 부분도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 회신 1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6제2호에 규정된 의료시설로서 소방시설설치기준의 강화된 기준 적용대상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1호라목4) 및 부칙 〈대통령령 제30029호,2019.8.6〉제5조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에 한정하여 적용하여야 하므로, 특정소방대상물 분류상 의료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소방시설설치기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 2

□ 입원실이 있는 의원이 개설신고 또는 개설변경(개설장소의 이전만 해당)신고를 하는 경우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데, 지상2층 입원실을 같은 건물 지상3층 으로 옮기는 행위도 해당되는지?

🕒 회신 2

● 개설변경신고 중 개설장소의 이전이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소재지 이전으로 한정하고 있어, 해당 특정소방대상물내에서 입원실의 위치만 변경 하는 것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부칙〈30029호,2019.8.6〉에 따라 강화된 소방 시설기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질의 3

☑ 기존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시설의 입원실에 설치된 일반형 헤드를 조기반응형 헤드로 교체되어야 하는지?

🕒 회신 3

- 기존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설비 헤드를 조기반응형 헤드로 교체할 사유가 없다고 해석됩니다. 소방시설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강화된 기준의 적용은 시설 단위의 강화를 말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되는 소방시설이 변경(추가)되는 경우나, 신설하는 소방시설은 설치 당시의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하여야 하나,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재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안전을 위하여 변경된 설치기준에 맞는 시설 설치를 권해드립니다.
- 이 경우가 조기반응형 헤드의 병원 입원실 적용(2007년 12월 28일) 이후에 의료시설로 신축, 용도변경, 증축등의 건축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면, 입원실 부분에 조기반응형 헤드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 노유자시설 소급에 관한 질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6]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6】

제15조의6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1. 노유자(老幼者)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 형 감지기

부칙 〈제23272호, 2011. 10. 28.〉

제6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②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노유자시설로서 이미 건축이 완료된 노유자시설은 이 영시행 후 2년 이내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0-

질의 1

■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연면적 5,500m²인데, 소급대상이라는 감사결과를 받았음. 소방 시설법상 적법한지?

회신 1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6 제1호에 규정된 노유자시설은 부칙조항에 당시 별표4에 추가된 노유자생활시설에 한정되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석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6】

일선서 또는 사회복지관련부서에서 제15조6 제1호 규정의 노유자시설을 전체 노유자 시설로 잘못 해석하여, 전체 노유자시설이 현행 소방시설설치기준에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음.

관련 조항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부칙조항에 따라 추가되는 노유자시설에 한정하여 적용 해야함

-0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노유자시설의 범위 해석

■ 질의요지

- ▲ (약칭)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6 제1호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모든 노유자시설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소방시설법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제1항제3호에 강화된 소방시설설치 기준 및 화재안전기준 적용대상으로 노유자시설을 명시하고 있고,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을 같은법 시행령 15조의6 제1호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롤 명시하고 있어, 모든 노유자시설이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됨

■ 답 변

▲ 해당 관련 규정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부칙 조항 중 소방시설설치에 관한 <u>경과조치</u> <u>조항에 따라 노유자생활시설</u> 및 <u>적용례에 따라 병설유치원 및 사립유치원</u>으로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 이유

- ▲ 경과조치는 구법에서 신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어, 유예기간이 포함된 시행시기를 명시하여야 하고, 적용례는 해당 법령의 시행 대상 및 시행시기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노유자시설 중 노유자생활시설만 강화된 시설기준이 적용되는 이유
 - 15조의6 제1호의 노유자시설은 당시 소방시설법 시행령[시행 2012.2.5.] 제15조의 2(강화된 소방시설기준 적용대상)에서 "소방시설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라는 규정을 신설하고, 부칙〈제23272호,2011.10.28.〉제6조제2항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등을 설치해야하는 노유자 시설과 경과조치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당시 개정법률부칙조항에 규정된 새로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노유자시설이란 노유자생활시설을 의미합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제1호나목 중 "아파트"를 "아파트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전층"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란 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노유자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노유자 생활시설(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자동식소화기, 자동화재속보설비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노유자시설은 제외한다)로서 이미 건축이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은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자동식소화기, 자동화재속보설비 및 공기호흡기를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u>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노유자시설로서</u>이미 건축이 완료된 노유자시설은 이 영시행 후 <u>2년 이내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별</u> 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적용례에 따라 노유자시설 중 유치원에 강화된 시설기준이 적용되는 이유

-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 조정을 통해 시행령 별표2제3호라목에 교육연구시설에 포함되어 있던 <u>병설유치원을 노유자시설로 분류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u>탐지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 15조의6 제1호의 노유자시설은 당시 소방시설법 시행령[시행 2018.6.26.] 제15 조의6(강화된 소방시설기준 적용대상)에서 "소방시설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시설에 단독경보형감기"라는 규정을 추가하고, 부칙〈제28996호,2018.6.26.〉제2조제4항에 별표5의 개정규정에따라 400㎡ 미만의 유치원을 설치대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 <u>병설유치원의 경우 개정 적용례에 따라 노유자시설로의 소방시설을 기한안에 모두</u> 설치하여야 하나, 400㎡ 미만의 유치원에 한하여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만 강화 됩니다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통시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함으로써 전통시장 화재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되, 전통시장의 현황 및 행정역량 등을 고려하여 추가되는 전통시장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303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 되는 전통시장의 범위를 지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를 조정하고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바.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 조정(별표 2 제3호라목 및 같은 표 제5호다목 등) 특정소방대상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의 전시장에 견본주택을, 판매시설에 전통시장을 추가하여 각 시설의 특성에 맞게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교육연구시설에 포함되어 있던 병설유치원을 노유자(老幼者)시설로 분류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함.
- 사.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별표 5 제2호라목, 마목 및 바목) 화재신고 시간을 단축하고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에 자동화재탐지설 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의 유치원에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 ⊙대통령령 제28996호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 제15조의6제1호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한다.
- 별표 2 제8호가목1) 중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포함한다)"를 "초등학교"로, "시설물을 말한다"를 "시설물을 말하되,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9호나목 중 "(병설유치원은 제외한다)"를 "[제8호가목1)에 따른 학교의 교사 중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표 제16호라목 중 "「유통산

업발전법」제2조제14호"를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5호"로 하고, 같은 표 제17호 나목2)나)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목 3)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로 하고, 같은 표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제2호바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사목2) 및 같은 호 아목2) 중 "장례식장"을 각각 "장례시설"로 하며, 같은 표 제3호의 제목 "피난설비"를 "피난구조설비"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 중 "방화복"을 각각 "방화복(안전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목 3)마)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제외한다)"로 한다.

6) 연면적 400㎡ 미만의 유치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변경에 관한 적용례) ① 대통령령 제28518호 고등학교 이 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이하 "학교규정 시행일"이라 한다) 당시 운영 중이던 병설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교규정시행일 이후 3년 이 경과한 날부터 별표 2 제8호가목1) 및 같은 표 제9호나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그 운영 개시일 이후 3년 이 경과한 날부터 별표 2 제8호가목1) 및 같은 표 제9호나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1. 학교규정시행일 전에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학교규정시행일 당시 아직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한 사립 병설유치원
 - 2. 학교규정시행일 전에 설립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학교규정시행일 당시 아직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한 국립·공립 병설유치원
 - ③ 학교규정시행일 당시 운영 중이던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의 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교규정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별표 5 제2호바목6)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④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의 유치원에 대해서</u> 는 그 운영 개시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별표 5 제2호바목6)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1. 학교규정시행일 전에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학교규정시행일 당시 아직 운영을 개시 하지 아니한 사립유치원
 - 2. 학교규정시행일 전에 설립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학교규정시행일 당시 아직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한 국립·공립유치원

소방시설법 시행령 15조의6 조문 변경 정리

- 1. 15조의3(강화된 소방시설기준 적용대상)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말한다.
- 2. 15조의3(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말한다.
- 3. 제15조의4(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말한다.
- 4. 제15조의5(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 1. 노유자(老幼者)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 2.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 5. 제15조의6(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 1. 노유자(老幼者)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 2.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 6. 제15조의6(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8. 6. 26.〉
 - 1. 노유자(老幼者)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 보형 감지기
 - 2.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7

중 또 용면경의 생사설 준 적의 튀 [생사설법 사행령 제17조]



용도변경시 소방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질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7조]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7조】

제17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용도변경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 1.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설비가 화재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 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
-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 류터미널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근무자가 이용하는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 3.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천장·바닥·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 드는 경우
-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장례식장이 각각 이 호에 규정된 시설 외의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질의 1

■ 문화집회시설에서 전체를 근린생활시설(지상1층 건축물, 연면적1,195.39m²)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기존 스프링클러설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간이스프링클러로 변경해야되는지?

🕒。 회신 1

○ (약칭)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되는 부분에만 용도 변경 당시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및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합니다. 용도변경 특례조항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하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약칭)소방시설법 [별표6] 소방시설 설치 면제기준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로 대체 가능합니다.

질의 2

1,500㎡가 넘는 근린상가에 현재 구법에 따라 옥내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500㎡를 용도변경하는 경우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 회신 2

● 용도변경하는 부분이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를 근거로 하여 옥내소화전설치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한 연면적을 근거로 설치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별표5제1호다목3)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에서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시설 또는 복합 건축물로 용도변경하는 부분이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인층 중 바닥면적 300㎡를 넘는 층이 있는 경우는 옥내소화전 설치대상에해당하여,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의 3

기존 노유자생활시설 건축물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됨(기준개수 10개적용), 지상1층 바닥 면적 300㎡ 중 150㎡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함. 이 경우 스프링클러기준개수 적용이 10개에서 20개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 회신 3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변경 시 전체 또는 해당부분의 소방시설 기준이 변경될 정도의 규모, 용도, 수용인원의 변경사항이 없다면, 현행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용도변경은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시행령 별표5)과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합니다.
- 노유자시설이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는 경우는 (약칭)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제4호에 따라 용도변경 전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시행령 별표5)과 화재안전기준 적용대상에 해당됩니다.

질의 4

지하1층 지상10층 건축물로서 지하층 주차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지상층 부분에 용도변경을 하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지?

🕒 회신 4

- □ 민원인이 기재하신 지하층 주차장에만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상층 일부를 용도변경 시에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하는 부분에만 현행 소방 시설설치기준 및 화재안전기준을 적용 할 경우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별표5] 제1호마목에 따라 해당 층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없는 경우는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5

■ 해당 건축물의 지상1층 64㎡을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시소방시설 적용기준은?

- 거축물현황: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1.174.2m²,주용도는 공동주택, 허가일자 1981.12.18.
- 용도변경신청사항 : 지상1층 점포, 주택 256㎡에서 64㎡를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 , 회신 5

■ 해당 민원사항의 경우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상1층 64㎡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근린생활시설을 기준으로 소방시설설치 기준 및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 대상물이 허가당시 소방시설설치기준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면, 추가로 소방시설(소화기 및 피난구유도등은 제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됩니다.

□ 증축시 소방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질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7조]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7조】

제17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耐火構造)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 2.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 3.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 4.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캐노피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질의 1

■ 병설유치원을 포함하고 있는 초등학교에 장애인용 승강기 증축이 건축허가 동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로 전체 대상이 복합건축물 소방시설 기준이 적용되는지? 완전구획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방화구획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 회신 1

-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기준과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약칭)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7조]
 - 증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전체를 건축허가 동의대상에 포함하므로 해당 학교는 해당됩니다.
- ◎ 전체 대상에 대해 복합건축물로 소방시설 기준이 적용됩니다.
 - 비상용승강기 설치된 부분의 승강장 등 증축부분이 방화구획이 된다면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설치기준 및 화재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라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耐火構造)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 또는 갑종방화문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증축부분에만 소방시설 적용이 가능합니다.

질의 2

▲ 스프링클러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을 증축할 예정임. 펌프가 주펌프, 예비펌프 모두 엔진펌프인데 소방시설법 증축 특례에 따라 주펌프를 전동기펌프로 교체하여야 하는지?

🕮 회신 2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7조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나, 기존 부분과 증축부분이 방화구획되는

- 경우는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설치기준 및 화재안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 민원인의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증설과 관련하여 기존의 엔진펌프의 용량변동 (펌프 및 수조교체)이 없는 경우라면 전동기 펌프로 교체하지 않고 기존에 설치된 엔진펌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8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5조]

특정소방대상물 중 "아파트 등"의 정의에 관한 질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2

1. 공동주택

가. 아파트등: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질의 1

아파트가 아파트 등으로 바뀐 이유는, 도시형생활주택 및 단지형 세대등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소방대상물 분류를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 회신 1

- 특정소방대상물 분류에서 아파트에서 '아파트 등'으로 개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2014.7.7) 제정 및 개정 이유에 해당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의 정의에 5개층 이상의 공동주택, 4층 이하의 연립주택・다세대주택하고 구분 하고 있으나, 건축심의결과에 따라 5층까지 주택으로 건축할 수 있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에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 모두 포함될 수 있어 아파트 등으로 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됩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 시행령에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 주택, 원룸형 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공동 주택의 정의에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은 '아파트 등'으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합니다.

질의 2

■ 공동주택의 정의에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에 지하층이 포함되는지?

🕒, 회신 1

●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기준을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법시행령에서 용도별 건축물의 정의에서 지하층을 포함하지 않고 있고,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상에서도 지하층을 포함한다고 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 중 근린생활시설에서 하나의 대지에 두 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소방시설 적용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2

- 2. 근린생활시설
 - 가.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 질의 1

하나의 대지에 2개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고, 소매점 용도가 1동 500㎡, 2동 500㎡ 이라면, 판매시설에 해당하는지?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근린생활시설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판매시설를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 회신 1

● 하나의 대지에 2개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고, 소매점의 용도가 1동 500㎡ 이상, 2동 500㎡ 이상 이라면, 판매시설에 해당됩니다.(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합계가 1,000㎡ 이상일 경우에 한함)

○ 다만, 소방시설설치 관련 산출기준 면적은 (약칭)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비고'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 기준을 근거로 하여, 2개동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경우 동별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 특정소방대상물 중 "견본주택"에 관한 질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8호]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3. 문화집회시설

라.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견본주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질의 1

2014년 허가받은 견본주택(가설건축물) 인데, 당시 법정설비는 아니나 자진으로 옥내소화전 설비를 설치하였다면 현재 그 대상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관리하는 것이 맞나요? 또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존치기한 연장이 2018년 법시행 이후까지 이루어졌다면 새로운 가설건축물의 축조로 보아 소방서의 동의를 새롭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회신 1

- 2018.1.18.이전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고 옥내소화전설비를 자진으로 설치 한 후 연장 등을 통해 현재까지 유지된 견본주택이라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 2018.1.18.이후 가설건축물 신고를 한 견본주택은 (약칭)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되어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에 해당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정소방대상물 중 "교육연구시설 중 대학교"에 관한 질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8호]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2

8. 교육연구시설

가. 학교

- 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2조제1호나목의 교사(校舍)(교실·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하되,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체육관, 「학교급식법」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 합숙소(학교의 운동부, 기능선수 등이 집단으로 숙식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 2)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교사 및 합숙소

질의 1

□ 대학 내 건축물 지하1층 지상4층 건축물 중 지상3층과 4층을 체육관 용도로 사용할 경우.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하는지?

🕒 회신 1

- 해당 건축물이 학교의 해당 부지안에 있으며, 관리주체가 학교이고, 그 시설 자체가 체육수업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시설이라면 교육연구시설 중 교사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교육연구시설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그 밖의 학교)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8호가목1)에 학교사업촉진법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해당하는 경우만 교사를 제외한 체육관, 급식시설, 합숙소등 부대시설을 학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 다만, 같은법 시행령 별표2 제8호가목2)에 따라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는 교사 및 합숙소만 특정소방대상물 분류상 교육연구 시설의 학교에 해당합니다.

□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유자시설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9호]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2

9. 노유자시설

가. 노인 관련 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 여가복지시설, 주·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질의 1

■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이 노유자시설에 해당하는지 ?

🕒 회신 1

- [약칭]소방시설법 [별표2] 9호(노유자시설)가목에 규정된 노인 관련 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 시설, 주・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개정(2020.9.15.)에 따라 노유자시설에 포함되었습니다..

■ 특정소방대상물 중 "지역아동센터 노유자시설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9호]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 9. 노유자시설
 - 나. 아동 관련 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 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제8호가목1)에 따른 학교의 교사 중 병설유치원 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질의 1

■ 지역아동센터가 노유자시설에 해당하는지 ?

🕒 회신 1

- 지역아동센터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 분류상 노유자 시설에 해당합니다. 별표2 제9호나목 아동관련시설 항목 중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있고, 아동복지법 제52조제8호 아동복지 시설의 종류에 지역아동센터를 명시하고 있어,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 분류에서 노유자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 노유자시설에"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9호]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2

9. 노유자시설

0-

다. 장애인 관련 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 시설(장애인 심부름센터, 한국수어통역센터,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등 장애인이 직접 그 시설 자체를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질의 1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등에 소방 시설을 노유자시설에 준하여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노유자시설로 판단해야 하는지?

🕒 회신 1

- 민원인이 기재하신 사항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분류된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그 밖에 이와비슷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법에 따라 지원되는 사회복지시설이 노유자시설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있습니다.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의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관련시설은 장애인복지법을 근거로 하고 있어, 법령 개정시까지는 노유자시설로 판단 또는 분류할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다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있으나, 해당 사항은 법적인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구분	근거법	노유자시설(별표 2 제9호)		기타
		생활시설(12조1항6호)	이용시설	
노인 관련	노인 복지법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시설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 주야간보호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주택에 설치된 것 포함	노인여가복지지설 ▷ 노인복지관 ▷ 경로당 ▷ 노인교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 장기 보험법	재가장기요양기관 → 주이간보호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 주택에 설치된 것 포함		
아동 관련	아동 복지법	아동복지시설 ▷ 이동양육시설 ▷ 아동일시보호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 아동직업훈련시설 ▷ 자립지원시설 ▷ 아동단기보호시설 ▷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시설 ▷ 아동상담소 ▷ 아동전용시설 ▷ 지역아동센터 ▷ 아동복지관	
	영유아 보육법		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법인단체등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 기정어린이집 > 부모협동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갼	근거법	노유자시설(별표 2 제9호)		기타
		생활시설(12조1항6호)	이용시설	
	유아 교육법		유치원 > 국립유치원 > 공립유치원 > 사립유치원 > 사립유치원 > 병설유치원	
장애인 관련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시설	장애인지역사회시설
정신 질환자 관련	정신 보건법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D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주간재활시설, 심신수련시설 D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D 정신질환자 직업대활시설 D 정신질환자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않는 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 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 (근린 또는 판매) 정신보건의료기관 (⇒ 의료기관)
노숙인 관련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복지시설 ▷ 노숙인자활시설 ▷ 노숙인재활시설 ▷ 노숙인재활시설 ▷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복지시설 ▷ 쪽방상담소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복지시설 ▷ 노숙인급식시설 (⇒ 근린) ▷ 노숙인진료시설 (⇒ 의료시설)
기타시설	사회복지 사업법	기타 24시간 생활시설 ▷ 결핵환자 ▷ 한센인	기타 미분류 용도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특정소방대상물 중 "군사시설"에 관한 질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21호]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2

21. 교정 및 군사시설

사. 국방·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질의 1

☑ 군부대마트를 교정 및 군사시설로 판단해야 할지,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로 판단해야 하는지?

🕒。 회신 1

- 군부대 마트(PX)는 교정 및 군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소방 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21호사목에 국방·군사시설은 국방·국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군부대마트는 같은법 제2조제1호사목에 규정된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 해당 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 분류상 근린생활시설 소매점(면적 1,000㎡ 미만) 또는 판매시설(면적 1,000㎡ 이상)로 해석됩니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국방·군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 나. 국방 · 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 시설
 - 다. 군용 유류(油類) 및 폭발물의 저장ㆍ처리 시설
 - 라. 진지(陣地) 구축시설
 - 마. 군사 목적을 위한 장애물 또는 폭발물에 관한 시설
 - 바.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部隊施設)과 그 구성원·군무원·가족 의 거주를 위한 주택시설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사.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특정소방대상물 중 "철골조립식 주차시설 및 주차장"에 관한 질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18호]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2

- 18.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 나. 차고, 주차용 건축물,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 및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 자. 다음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내부(「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다목 에 따른 필로티와 건축물 지하를 포함한다)에 설치된 주차장

질의 1

출골조립식주차장은 연면적에 대한 개념이 아닌 면적만 나와 있고 건폐율 및 용적율도 없다해서 건축물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건축사사무소에서는 말하고있습니다. 철골 조립식주차장 공작물 축조신고필증에는 연면적이 아닌 면적으로만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공작물 축조신고필증을 받은 철골조립식주차장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판단하고 물분무등 소화설비 및 비상경보설비를 적용을 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 회신 1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 범위에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철골조립식 주차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이 되어 같은법 별표5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해석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18호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중 제2호에 포함되어 있으나,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을 공작물인 관계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건축허가 신청과정 상 미통보 되거나 단순 구조물로 오인하여 비동의 통보 처리될 수 있음.

■ 특정소방대상물 중 "복합건축물"에 관한 질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21호]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2

- 21. 복합건축물
 - 가. 하나의 건축물이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 3)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또는 위생을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또는 주차를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 다) 구내식당, 구내세탁소,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기숙사는 제외한다) 또는 구내소각시설의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질의 1

☑ 공장부지 내에 직원들 복지를 위해 기존 공장동과 연결통로로 연결하여 별동으로 증축한 기숙사건물을 공장시설의 부대시설로 보아 공장시설로 판단해야 되나요?

🕒 회신 1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30호 다목에 기숙사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별표2제1호 나목에 따라 공동주택의 기숙사에 해당하여 복합건축물에 해당됩니다.

□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 해당여부 [내화구조의 벽과 바닥으로 구획]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비고 제1호]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2

1.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이나 출입구를 말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질의 1

■ 지상에 설치된 상가와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을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로 구획하고, 관통부 배관 및 트레이를 내화충전구조로 구획할 경우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 하는지 여부?

그 회신 1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비고 제1호 규정된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 인정 여부는 배관, 배선을 통한 관통부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경우는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특정소방대상물 연결통로 질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비고 제3호]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2

-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와 소방대상물의 양쪽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 가. 화재 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셔 터 또는 갑종 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 나. 화재 시 자동으로 방수되는 방식의 드렌처설비 또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설 치된 경우

질의 1

② 연결통로가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지, 해당 한다면 소방시설적용기준은, 별개의 특정 소방대상물 요건 충족시 소방시설 미적용이 가능한지?

🔍 회신 1

● 연결통로도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됩니다. 연결통로가 증축되는 특정소방 대상물의 연면적 및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소방시설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비고 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을 설치하여도 연결통로는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화재안전 기준에 근거로 한 일부 시설의 설치제외는 관할 소방서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 연결통로가 가설건축물로 설치된 경우에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판단해야 하는지? 가설건축물 계속 사용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 회신 2

○ 가설건축물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에 규정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아, 가설건축물인 연결통로로 연결된 두 건축물은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특정소방대상물 A와 B를 연결통로로 연결할 경우, 연결통로는 A와 B중 하나의 증축에 해당됩니다. 연결통로가 가설건축물이라면 A또는 B의 증축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 □ 다만, 가설건축물이 존치기한을 경과하였다면 불법건축물에 해당되어 철거를 해야 합니다. 존치기한 연장은 관할 구청 건축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

A, B 동간 거리를 약 30cm의 간격을 두고 건축물을 증축하였음. 방화문이 아닌 개구부가 설치되어 있어 왕래가 가능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 회신 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에 따라 연결통로로 연결되는 경우 내화구조로 연결된 통로는 벽이 없는 구조는 6m이하, 벽이 있는 구조는 10m이하인 경우 또는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거리에 상관없이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나, 연결통로가 설치되지 않고 두 건축물 이격되어 있다면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판단해야 된다고 해석됩니다.

9. 특정소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

□ 주거용 자동소화장치 설치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1호 나목]

관계법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 나.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아파트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

◎ 질의 1

공동주택 주방이 주방용자동소화장치 대상에 해당하는지? 설치대상에 해당한다면 보조 주방에도 설치해야 하는지?

🕒 회신 1

● 아파트의 경우 모든층에 주방용자동소화장치 설치 대상에 해당됩니다. 주방 혹은 보조주방의 구분없이 가정용 열발생 조리장치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 되는 가연성가스누출 및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경보를 발하고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차단하면서 화재를 진압하는 장치를 설치 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2

2005년에 허가된 공동주택에 기존 가스렌지를 철거하고 인덕션을 설치하려고합니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공동주택에 주방용자동소화장치 설치 대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고 싶으며, 인덕션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설치해야 하는지?

🕒 회신 2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소방청고시 제2017-14호, 시행 '17.6.12.)부터 전기식 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이 마련되었으며,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에 의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소급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방 조리기구를 가스에서 전기로 교체시 반드시 전기식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할 의무는 없으나, 입주민의 화재안전을 위해 변경된 조리기구에 적합한 전기식 주거용 주방자동소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옥내소화전설비 설치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1호 다목]

관계법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

- 다. 옥내소화전설비
 - 3) 1)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 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시설 또는 복 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5백㎡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 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질의 1

□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복합 건축물의 지하1층, 지하2층 바닥 면적이 각각 200㎡인 경우,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대상 중 "지하층, 무창층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에 해당하는지?

🕒 회신 1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1호다목3)에 규정된 옥내소화전 설치대상인 "지하층, 무창층인 것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이란 전단에 열거한 대상물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층, 무창층인 것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에 옥내소화전을 설치하여야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하층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의 2

"옥내소화전 설치대상 중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충 중"에서 4층 이상인 층의 해석이 4층 이상인 건물을 의미하는지 4층 이상의 층만 의미하는지?

🕒 회신 2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1호다목3)에 규정된 4층 이상인 층이란, 4층 이상인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4층 이상의 층만 의미합니다.

■ 문동시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1호 라목]

관계법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

-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 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질 질의 1

- 골프장의 경우, 옥외 운동시설로서 그 외 모든 시설(클럽하우스, 티하우스 등)은 옥외 운동을 위한 부대 공간으로 사용됩니다.
 - 1. 클러하우스, 로비(접수 및 고객 대기장소) 2. 락커룸(남녀 환복 장소)
 - 3. 사우나(운동 후 샤워장) 4. 부대 공간(직원 사무실, 휴게실 등)
 - 5. 식당(다중이용업소로서 방염 대상 해당)
 - 6. 관리창고동(잔디관리용 농기계, 골프카트 정비 등)
 - 질의1: 상기 나열한 1번에서 4번의 경우는 운동의 부대시설로서 기능하므로, 법정 용도가 골프장(운동시설)이긴 하지만, 옥외 운동을 위한 준비공간이므로 소방 시설법에서 지칭하는 방염시설의 대상 해당여부
 - 질의2: 관리창고동이 운동시설에 해당되어 스프링클러설비를 해야 하는지

🥄 회신 1

- □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가 운동시설에 해당할 경우,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11호 다목에 따라 골프장 등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은 운동시설에 해당하여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 대상물에 해당 될 것으로 해석됩니다.
-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가 운동시설에 해당할 경우 운동시설에 해당 되며, 수용인원 산정 시 정비고, 기계실, 창고 등의 부분에 대한 면적 제외는 별도 규정하지 않아 면적에 산입되어야 하며, 수용인원 100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판매시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1호 라목]

관계법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

-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 2)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질의 1

지상3층에 연면적 3,000㎡ 판매시설로서 각층 바닥면적 1,000㎡이나 수용인원 계산 방법에 따라 복도, 화장실 및 계단을 제외하면 층별 매장 면적이 900㎡입니다. 이경우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인지?

🕒, 회신 1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1호라목에 판매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모든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시설로의 바닥면적의 합계란 해당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산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해당 민원경우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으로 해석됩니다.

□ 랙식창고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1호 라목]

관계법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 6)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식 창고(rack warehouse)(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 와 비슷한 것을 갖춘 것을 말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이상인 것

◎ 질의 1

■ 주 용도가 공장 일 경우 3개층에서 1개층이 천장 또는 반자의 10m를 넘고 바닥면적이 1천6백㎡이고 랙식 창고 경우 주 용도 창고가 아닌 공장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이상인 것) 에서 "것" 이라함은 특정소방대상물전체 즉 전층에 해당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1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1호라목6)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랙식창고는 용도의 의미가 아니라 형태의 의미로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랙식창고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이상인 것은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라는 의미로, 질의처럼 랙식창고부분이 층으로 구분되어 있는 해당 층에 설치하며,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대상물 전체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2

기존 창고에 랙식 선반이 설치한 창고입니다. 창고의 최고 높이는 10m를 넘지만, 평균 높이는 8m 미만입니다. 이 경우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요?

🕒 회신 2

○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식 창고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이상인 것에서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으로 표현함으로서 이를 통해 해석시 바닥면에서부터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까지를 높이 기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해당부분에서의 높이는 평균 높이가 아닌 최고 높이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3

2007년 준공된 물류창고를 랙크식 창고로 변경할 예정임. 이 경우 승강기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를 갖추지 않은 선반을 설치할 예정인데, 현재 소방시설설치기준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 대상 중 랙식창고에 해당하는지?

🕒 회신 3

◎ 민원인의 기재사항에 물류창고의 건축물 현황, 허가일 등을 기재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현재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1호라목6)에 스프링클러설치대상으로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m를 넘는 랙식창고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 이상인 것"을 포함하고 있어, 높이와바닥면적 합계 두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는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에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다만, 법령 개정 당시(승강기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를 갖춘 것에서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으로 개정) 같은령 부칙〈대통령령 제24304호, 2013.1.9.〉제6조제2항에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건축허가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해당 창고가 용도변경이나 증축등 추가적인 건축행위가 없었다면 최초 건축허가당시의 소방시설설치 기준을 적용받게 되므로, 당시 소방시설설치기준에 따라 스프링클러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설비를 설치할 법적 사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공장 또는 창고시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1호 라목」

관계법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 9)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회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 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 중 2)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 의 합계가 2천5백㎡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명 이상인 것
 - 나)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 중 5)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 의 합계가 2천5백㎡ 이상인 것
 - 다) 랙식 창고시설 중 6)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 이상인 것
 - 라)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7)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것
 - 마)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8)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질의 1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의 기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무조건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지?

🕒 회신 1

● 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5]의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 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에 대한 해석은 지붕 및 외벽이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로 해석 해야 합니다. 입법취지는 지붕 또는 외벽을 샌드위치 패널 등의 가연성 재료로 시공한 공장・창고의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질의 2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9호라목9)라)의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7)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 ·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 500㎡ 이상인것의 의미가 4층 규모의 건물중 어느 하나의 층 (1~4층) 이라도 500㎡ 바닥면적 이상이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요?

🔍 회신 2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9호라목9)라)에 따라 층수가 4층 이상인 것(전체 4층 이상의 건축물) 중 바닥면적이 500㎡ 이상의 것(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해당하여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으로 해석됩니다.
 - "이상인 것"은 해당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층을 의미합니다.

□ 교정시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1호 라목]

관계법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

-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2)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 가)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 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 나) 「출입국관리법」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외국인보호소의 경우에는 보호 대상자의 생활공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하는 부분. 다만, 보호시 설이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에 따른 유치장
 - 13) 1)부터 12)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질의 1

☑ 교도소의 수용거실 부분만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면 되는지, 연결통로 및 각 건축물에도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 회신 1

- 스프링클러설치기준에 따라 교정시설의 경우에는 수용거실에만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면 됩니다. 다만, 지하층 ·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층에 해당하면 해당층 전체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교정시설의 수용거실 및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층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스프링클러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스프링클러설치대상의 연결통로는 스프링클러설치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석례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에서 수용거실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 거실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감호소등을 포함합니다.

□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1호 마목]

관계법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 마.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나)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 질의 1

지하1층 지상4층 건축물에 연면적은 1,030.14㎡. 지하1층 주차장 바닥 면적은 348.09㎡이며 지상1층에서 4층까지 근린생활시설로만 사용하고 있고 그 사용 바닥면적 합계는 682.05㎡임.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에 해당하는지?

🔍 회신 1

- 민원인이 기재하신 근린생활시설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에 기재된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연면적 및 바닥면적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맞으나, 제1호마목1)에 규정된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과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30호 복합건축물 제외요건에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사무,주차 등)는 복합

건축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연면적으로 규정한 것은 부속시설의 전체면적을 합산하여 소방시설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나, 해당 조항에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해석은 부속시설인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고 적용합니다.

질의 2

□ 입원실이 있는 의원, 한의원으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입니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에는 상수도직결형 및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설치공간이 부족하여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 밖에 설치를 못하는데 가능할까요?

🕒 회신 2

- 상수도직결형과 캐비닛형으로 설치와 관련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 안전기준」 제14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에 따라 제5조제7항을 적용하지 않고 상수도직결형과 캐비닛형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시달하였 습니다.
 - 2019년 하반기 시도본부 소방시설법 담당자 회의 결과알림(2019.09.06.)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1호 바목]

관계법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 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 5)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발전실·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는 면압기·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않은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발전실 및 변전실은 제외한다)·축전지실·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것[하나의 방화구획 내에 둘 이상의 실(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

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 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곳은 제외한다.

질의 1

■ 전기실, 발전실의 바닥면적이 300㎡ 미만으로 법적으로는 물분무등소화설비(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가 해당되지 않으므로 설치하지 않고 시공해도 되는지?

🕒。 회신 1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호마목5)에 따라 건축물 내에 설치된 전기실과 발전기실이 하나의 방화구획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합산된 면적에 따라 해당되는 소방시설을 설치합니다. 다만 각각 용도의 실이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해당용도의 면적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개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하나의방화구획에 전기실과 발전기실 면적이 각각 150㎡ 라면 합계가 300㎡ 이상인 경우로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나, 별도로 방화구획되어 있다면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의 2

물분무소화설비 설치대상 중 전기실·발전실·변전실에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외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해당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을 의미하는지? 가연성 피복이 아닌 전선이란 난연성능 이상의 전선을 의미하는지?

🕒 회신 2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1호마목5)에 규정된 전기실・발전실・변전실의 물분무등소화설비 제외요건은 해당실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설비에 사용되는 전선으로 해석되며, 가연성 피복으로 된 전선 및 케이블을 사용하면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제외할 수 없습니다. ○ 가연성 피복이 아닌 전선에 대해 소방시설법상에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난연의 성능(불연, 준불연 포함)을 가진 피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질의 3

관제실(통합관제센터)이 별표5의 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것에 해당되는지, 방재실이 별표5의 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에 해당되는지, 상기 질문 사항이 설치대상에 해당할 경우 중앙에 위치한 통신실을 방화구획 하여 300㎡ 이하로 하면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법적설치 대상에서 제외 되는지 질의 합니다.

🕒, 회신 3

- 관재실 또는 방재실에 통신기기 및 전산기기가 일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 습니다.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마목5)에 따라 건축물 내에 설치된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이 300㎡이상인 것(하나의 방화구획 내에 둘 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은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통신실을 방화구획하는 경우 통신실과 나머지시설의 면적을 각각 적용하므로 면적이 300㎡ 미만으로 물분무등소화설비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필로티 주차장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대상 해당 여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1호 바목]

관계법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

- 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 3)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층

0-

필로티 부분을 건축물의 내부로 봐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는 필로티나 이와 비슷한 구조는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바, 필로티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필로티 부분을 건축물의 내부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필로티 부분은 외기에 개방되어 있고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안으므로 건축물의 외부로 봐야 하는지 에 대해 질의 합니다. 해당 부분이 200㎡ 이상인 경우물분무등 소화설비대상에 해당하는지?

🕒 회신 1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18호자목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에 "건축물의 내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와 건축물 지하를 포함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 같은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 | 철골조립식 주차장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대상 해당 여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1호 바목]

관계법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 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 2)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이 경우 연면적 800㎡ 이상 인 것만 해당한다.

질의 1

■ 철골조립식 주차장이 지상1층 건물에 면적이 481㎡인 경우 물분무등 소화설비 설치를 적용해야 하는지?

🕒。 회신 1

 철골조립식 주차장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제18호 특정소방대상물에는 해당하나, 건축법시행령상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해당되지 않아 연면적이 기재되지 있지 않을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바닥면적과 층을 기준으로 연면 적을 계산을 건축허가시 요구하여 설치대상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철골조립식 주차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설 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대상에 철골조립식 주차 시설로서 연면적 800㎡ 이상인 것이 해당됩니다.

■ 축사시설 비상경보설비 제외 요건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2호 가목]

관계법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 2. 경보설비
 - 가.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 모래·석재 등 불연재료 창고 및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연면적 400㎡(지하가 중 터널 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은 제외한다) 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공연장의 경우 100㎡) 이상인 것

◎ 질의 1

✓ 사람이 거주하지 않으나 벽이 없는 축사에 대해서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다"의 의미는 ?

🕒 회신 1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라 축사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벽이 없는 축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경보설비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항은 두가지 조항을 다 충족해야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조건(사람이 거주하지 않는)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외대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다만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것은 설치대상에 해당됩니다.

○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다의 의미는 내부에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 출입의 경우를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제외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2호 바목]

관계법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 마.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1천5백㎡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질의 1

1급소방대상물로서 2019년 3월 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 준공 당시 자동화재속보 설비가 설치되었으나, 관계인(시설직직원)이 24시간 방재실에 상주하여 근무할경우 자동화재속보 설비를 소방서와 연동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 민원인의 질의사항에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와 건축허가일을 기재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호마목1), 3), 4),
 5)에 따라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사람이 24시간 상주하고 있고, 근무장소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반이 설치되어 항시 화재상황의 감시 및 대처가 가능한 경우 제외할 수 있습니다.
- ◎ 해당 조항에 따라 24시간 상시 근무조건으로 설치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할 법적 사유가 없으므로, 연동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인명구조기구 설치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3호 나목]

관계법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 나.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 2)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병원

질의 1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5층 이상인 병원에 의료로만 사용하는 층이 4개층인 경우, 인명구조기구 설치대상에 해당하는지?

🕒 🔊 회신 1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3호나목에 따라 병원시설 중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병원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2 ~ 5층, 총 4개층만을 병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인명구조기구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 2

■ 지하2층, 지상9층 건물에 7층에만 의료시설이 입주한 경우 인명구조기구 설치대상에 해당되는지?

🔍 회신 2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3호나목에 따라 7층에만 의료 또는 관광호텔 시설이 있다면 피난구조설비 중 인명구조기구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명구조기구 설치대상 중 층수가 지하층을 포함한 5층 이상인 병원, 지하층을 포함한 7층 이상인 관광호텔의 의미는 사용하는 규모로 해석합니다.

□ 제연설비 설치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5호 가목]

관계법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 5. 소화활동설비
 - 가.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 또 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 2)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용 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층

질의 1

지하1층에 근린생활시설 면적이 1,500㎡, 운동시설이 1,100㎡, 주차장이 900㎡일 경우,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주차장 모두 제연설비 설치를 적용해야하는지?

[일》 회신 1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5호가목2)에 따라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로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층에는 제연 설비 설치대상에 해당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지하1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은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제13조(설치제외)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중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출구·공기유입구의 설치 및 배출량 산정에서 이를 제외하므로, 주차장에는 제연설비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지하1층에 근린생활시설 면적이 400㎡, 판매시설 면적이 800㎡일 경우,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면적이 각각 1천㎡ 미만인데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 회신 2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5호가목2)에 따라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로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층에는 제연설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각각의 시설이 1,000㎡ 이상일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 제연설비를 설치합니다.

질의 3

지하1층에 근린생활시설 전용면적이 450㎡, 판매시설 전용면적이 500㎡일 경우, 해당층 공용 면적(복도,화장실등)이 350㎡인데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 회신 3

- 해당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이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산정하며, 해당 용도로 쓰는 실(實)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경우는 근린생활시설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중 근린생활 시설과 판매시설의 비례배분면적을 합산하여 1,000㎡ 이상인 경우 소방 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5호가목2)에 따라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0. [별표6] 소방시설설치의 면제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6조]

□ 스프링클러설비 면제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관계법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6

1. 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해당 소방시설이 화재를 감지 ·소화 또는 경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질의 1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장입니다. 공장 내 전기실이 50㎡입니다. 헤드 오동작 시 수손피해 우려로 헤드를 철거하고 이산화탄소팩키지 설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

🕒 🔊 회신 1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6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면제 기준에 물분무등소화 설비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시 면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산화탄소팩키지는 소화기구에 해당되어 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수손피해 방지를 위해 설치시에는 팩키지방식이 아닌 모듈러방식으로 설치하여야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 주차장 이외의 부분에 물분무등소화설비 면제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6 제2호]

관계법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6

2. 물부무등 소화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차고·주차장에 스프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 기준 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300m²이상인 전산실에 물분무등소화설비 대체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가능한지?

🕒。 회신 1

● 소방시설법상 300m² 이상의 전산실은 물분무등소화설비설치대상입니다. 물 분무등 소화설비를 스프링클러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6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해야하는 주차장 등의 대상에만 스프링클러 설비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면제 관련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6 제3호]

관계법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6

3.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되다.

질의 1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인 근린생활시설에 상위설비인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 대신 토출량을 기준개수 10개로 잡아 800lpm으로 선정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회신 1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6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 제3호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스프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면제됩니다.

외부와 통하는 배출구가 설치된 경우 제연설비 설치 면제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6 제9호]

관계법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6

- 9. 제연설비
 - 2) 직접 외부 공기와 통하는 배출구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제연구역[제연경계(제연설비의 일부인 천장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구획된 건축물 내의 공간을 말한다]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고, 배출구부터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가 30m 이내이며, 공기유입구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외부 공기를 직접 자연 유입할 경우에유입구의 크기는 배출구의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설치되어 있는 경우



질의 1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6 특정소방대상물의 면제기준 중 제연설비 제외조건에 '직접 외부 공기와 통하는 배출구'가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셔터가 배출구에 해당하는지? 공기 유입구는 상부 배연창으로 되어 있음.?

🖳 회신 1

- 민원인이 기재하신 '직접 외부공기와 통하는 배출구와 외부공기를 직접 자연 유입할 경우'에 감지기 연동 셔터와 상부 배연창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 됩니다. 이 경우는 화재시 연동하는 창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호나 문이 없이 직접 외기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스프링클러화재 안전기준 제15조 헤드의 설치제외에서 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를 해석할 때 창호가 설치된 창(배연창포함)을 의미하지 않고,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 화재안전기준 제7조 감지기 설치제외에서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를 해석할 때는 창호가 설치된 창을 포함해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 민원인이 기재하신 감지기와 연동하는 셔터와 배연창이 평상시 폐쇄되어 있다가 화재시 개방된다고 하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에서 규정한 직접 외부공기와 통하는 배출구는 상시 개방되어 있는 개구부를 의미한다고 해석

되며, 특별피난계단 부속실등에 설치하는 제연설비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노대와 연결된 특별피난계단에 창호가 설치되 있는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 신상에서 제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답변되었습니다.

□ 노대가 설치된 경우 제연설비 설치 면제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6 제9호]

관계법령

【소방시설법시행령】별표6

- 9. 제연설비
 - 나. 별표 5 제5호가목6)에 따라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대 (露臺)와 연결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노대가 설치된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질의 1

🔍 회신 1

- □ 노대에 문과 창으로 연결된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부분은 제연설비 면제대상 으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자치부 제연설비 면제 불가 관련 지침 및 2013년 외기에 개방(창호미설치)된 노대에 관한 질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부 소방시설 설치관련 지침 시달(2000년 9월)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가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수 있는 창문(창문의 면적에 무관)이 설치된 경우에도 소방법령상 제연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특별피난 제연설비 설치 면제 등 질의(소방제도과-2683, 2013.06.12.)
 - 질 의 : 첨부된 건축 평면도와 같이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부분에 노대를

설치한 경우 제연설비 설치 면제가 가능한지?

- 답 변 : 도면과 같이 외기에 개방된 노대가 설치된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겸용)인 경우 (약칭)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6 제9호 나목기준에 따라 제연설비 설치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단열 등을 위하여 나중에 창호를 설치하거나, 구조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제연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오니, 공동주택 분양자에게 사전에 고지/승인등의 절차를 통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면제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6 제16호]

관계법령

【소방시설법시행령】별표6

16.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감지·수신·경보기능을 말한다)과 성능을 가진 스프링클 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 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질의 1

□ 습식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면제가 가능한지?

🕒 회신 1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6 제16호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가 감지부로 설치되는 물분무등소화설비로 대체하는 경우에만 면제됩니다. 습식스프링클러설비 설치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를 면제되지 않습니다.

상수도소화설비 설치 면제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6 제13호]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6

16. 상수도소화용수설비

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 거리 140m 이내에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 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질의 1

☑ 서울소방본부에서는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면제조건을 수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검토의견?

🕒 회신 1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6 제16호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40m 이내에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되는 경우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면제가 가능하나, 서울시에 확인 결과 '서울특별시 소방기술심의회' 결정에 따라 신축의 경우에 한정하여 설치 면제를 일부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증축, 용도변경 등의 경우는 해당요건에 적합한 경우 제외가 가능합니다. 이는 지역 특성에 따라 해당 소방기술심의회의 심의 및 의결에 따른 조치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무창층의 정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

무창층에 해당하지 않는 창호의 정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호]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 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內接)할 수 있는 크기일 것
 -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 치되지 아니할 것
 -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질의 1

☑ 오버헤드도어가 개구부로 인정 가능한지, 오버헤드 도어가 외부에서도 쉽게 열수 있어야 하는지, 쉽게 부술수 있는 요건도 만족해야 하는지?

🔍 회신 1

○ 오버헤드도어에 대해 기존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무창층의 정의 중에서 개 구부'로 인정하는 것으로 답변되었으며, 무창층 제외 요건중 크기와 높이, 도로 또는 빈터의 규정을 충족하고, 자동(소방설비 연동을 의미하지 않음) 으로 개방되는 구조이며 정전시에도 수동으로 열수 있다면 출입구에 해당합니다. ○ 소방시설법 시행령 무창층 제외요건 중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에 대한 해석은 파괴 또는 개방 두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 하여야 된다는 의미로 내부에서 자동 또는 수동 개방이 가능하다면 쉽게 열수 있는 구조에 해당한다고 해석됩니다.

질의 2

■ 체육관 내부 관람석을 설치하여 체육관 바닥보다 450mm 높게 설치된 경우 개구부의 하단은 1.050mm가 됨. 무창층 제외 요건 중 개구부 요건에 해당하는지?

🕒 회신 2

● 해당 민원사항의 도면과 기재 사항을 검토한 바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무창층 개구부 요건 중 '바닥면으로부터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조항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석됩니다.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에서의 바닥면은 건축법 및 소방시설법상 용어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 해당층의 바닥마감면을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해당 창호하단 관람석은 바닥면이 아니라 피난기구의 발판개념으로 해석됩니다.

질의 3

■ 무창층 기준해석과 관련 일반 유리로 된 삼중유리도 쉽게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는지?

🕒 회신 3

□ 무창층 기준해석과 관련한 지침에 따라 일반유리, 강화유리, 복층유리는 각 각 기준지침이 정해져 있으나 삼중유리에 대한 기준해석은 없습니다.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술 수 있는 조건에 일반적인 삼중유리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무창층 기준해석에 의한 업무처리지침 중 "기타 소방서장이 쉽게 파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라는 항목이 있으니 관할 소방서와 쉽게 파괴 가능 여부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로이유리로 시공된 이중창은 일반유리와 강화유리중 어디에 속하는지?

🕒 회신 4

□ 귀하께서 문의하시는 사항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무창층 해당 여부와 무창층 기준해석에 의한 업무처리 지침에 대한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사항은 법과 지침에 규정된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로이유 리는 유리의 종류 중 냉・난방에 도움을 주고자 유리 표면에 금속 막을 코팅하는 유리로서 부수는 것의 쉽고 어려움을 구분 짓는 유리의 종류는 아닙니다. 해당 유리가 일반유리인지, 강화유리인지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12.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보고서제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자체점검대상 해당 여부 및 유예에 대한 질문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1]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대상·점검자의 자격·점검 방법 및 점검횟수는 별표 1과 같고,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방법·횟수 및 시기

- 2. 작동기능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 가. 작동기능점검은 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 1) 위험물 제조소등과 영 별표 5에 따라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2)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3. 종합정밀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 가. 종합정밀점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 1)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2)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 2호(비디오물소극장업은 제외한다)·제6호·제7호·제7호의2 및 제7호의5의 다 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 4)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 5)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 · 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이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다만, 「소방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 기존 720.93m² 교회건물이 증축하여 831.65m²가 되어 증축부분에 스프링클러 설치되었습니다. 이 경우 종합정밀점검대상에 해당하는지?

🕒 회신 1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가목1)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가 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은 종합정밀점검대상에 해당됩니다. 기존에 해당하지 않았어도 건축행위로 인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었다면 종합정밀점검을 실시 해야 합니다.

질의 2

■ 공동주택에 지하주차장이 연결통로 및 개구부가 없는 별동으로 설치된 경우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을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 아파트와 주차장을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을 같이 받아도 되는지?

🔍 회신 2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가목1)에 따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 부분은 작동기능점검대상, 주차장은 종합정밀점검대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용승인일에 해당하는 달에 아파트는 작동기능점검, 주차장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달로부터 6개월 되는 달에 주차장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면 됩니다.
- 종합정밀점검은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의 구조기준 및 화재안전 기준, 건축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며, 작동기능점검대상과 종합정밀점검대상을 소방시설법상 분리하고 있어 작동 기능점검대상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할 사유가 없습니다. 다만, 특정소방대 상물의 관계인이 작동기능점검만 하면 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진하여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는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해석 됩니다.

■ 종합정밀점검대상 중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이상인 것과 관련하여 콜라텍이 폐업을 했는데, 폐업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어떤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는지?

🕒 회신 3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가목3)에 따라 콜라텍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 사유인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아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습니다. 다만, 콜라텍의 경우 자유등록업에 해당하여 폐업 사실을 증명하려면 국세청 홈텍스에서 폐업사실을 확인받거나, 정부24시에서 폐업사실증명을 신청하면 받을수 있습니다.
- 종합정밀점검대상 중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000㎡이상인 것"에서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단란・유흥주점, 영화상영관・비디오실감상실업,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원, 고시원, 안마시술소가 해당합니다.

질의 4

● 연면적 1,802[㎡]의 건축물에 지하 주차장 400[㎡]임. 지하주차장에 물분무소화 설비를 대체하여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음. 종합정밀점검대상에 해당하는지?

🕒 회신 4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6 제2호에 따라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주차장 부분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물분무등 소화설비 설치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대체하여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자진설비에 해당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해석함으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가목1)에 규정된 종합정밀점검대상에 해당합니다.

질의 5

소방시설설치기준 강화로 인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의료시설에 부칙조항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작동기능점검만 하면되는지?

🕒 회신 5

○ 소방시설설치기준 강화로 인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하는 의료시설이 완화 기준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경우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가목1)과 제2호가목에 따라 작동기능점검 대상에 해당합니다.

질의 6

지하1층 지상5층 건축물에 체력단련장 및 목욕탕을 폐업하면 자체점검을 안해도 되는지?

🕒 회신 6

-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가목1)에 따라 종합정밀점검대상에 해당하는 목욕탕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일부층을 폐업 및 폐쇄하여도 점검유예 및 제외가 되지 않습니다.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의 의무가 있고, 소방시설을 법에 따라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제출해야 하여 특정소방 대상물을 일부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점검자체를 유예 또는 제외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소방제도과 -2138(2016.4.17)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전체를 폐쇄 또는 폐업 (단전,단수포함)된 상태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그 건축을 사용을 다시할 때까지 자체점검을 유예할 수는 있으며, 일부층을 폐쇄한 경우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유예할 수 있습니다.

■ 1984년(연면적 1,300㎡, 사무실 및 창고용도) 건물로 당시 연혁법에 따라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 현재 소방시설법을 적용하여 소방안전관리자선임 및 자체점검대상에 해당하는지?

🕒 회신 7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허가일, 당시 소방시설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소방시설등 관련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습니다.
- 당시 소방법 시행령(1984년) 제5조에 방화관리자(현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상시근무 또는 거주하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거나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거나 상시근무 또는 거주하는 자의 수(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가 200인이상인 장소와 연면적 3,000㎡ 이상인 소방대상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민원인의 기재 사항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시 소방시설설치 기준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대상(연면적 1,000㎡)으로 판단됩니다.
- 당시 상시근무인원 기준에 따라 방화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하지 않아도 하여도,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에 해당되었다면, 1992.7.28.에 개정된 소방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당시 자동화재탐지설비대상은 1992.12.31.까지 2급 방화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부칙 조항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은 기존 및 현재 소방시설설치기준에 따라 자동화재 탐지설비대상에 해당한다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점검결과 제출대상에도 해당합니다.

질의 8

▲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폐쇄할 경우 법적점검을 받아야하는지? 미사용 건축물도 소방시설을 정상 운용해야 하는지?

🕒 회신 8

◎ 해당 민원사항의 경우가 건축물 전체가 폐쇄 또는 폐업(단전,단수)된 상태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소방제도과 -2138(2016.4.17)호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자체점검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동안 건축물을 단전 및 단수상태로 유지하므로 소방시설의 작동은 정지할 수 있습니다. 관할 소방서에 유예신청서 및 유예대상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다만, 자체점검실시기간 전에 유예신청을 하여야 하며, 유예기관이 종료되고 건축물의 사용을 재개하는 경우 사용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통보하고 사용개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사용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선임하고 14일이내 선임신고 하여야 합니다.

자체점검시기에 대한 해석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1]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대상·점검자의 자격·점검 방법 및 점검횟수는 별표 1과 같고,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방법·횟수 및 시기

- 2. 작동기능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 라. 작동기능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 마. 작동기능점검의 점검시기는 다음과 같다.
 - 1) 제3호가목에 따른 종합정밀점검대상: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 2) 제19조제1항에 따라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생략)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 나)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그 다음 해(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을 이용 또는 사용하기 시작한 해의 다음 해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부터 실시하되,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그 해부터실시한다. 다만, 그 해의 작동기능점검은 가)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 3) 그 밖의 점검대상: 연중 실시한다.
- 3. 종합정밀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 라. 종합정밀점검의 점검횟수는 다음과 같다.
 - 1) 연 1회 이상(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 2) 1)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 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고시하 거나 정한 기간 동안 종합정밀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기간 중 화재 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 질의 1

☑ 공동주택의 완공검사일이 2018년 4월 23일이고, 사용승인일이 2018년 12월 27일임. 2019년에서 2020년까지 종합정밀점검을 4월에 실시하고 6개월 이후인 10월 작동기 능점검을 실시하였음. 관할 소방서에 문의결과 종합정밀점검은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실시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는지?

🔍 회신 1

□ 민원인의 경우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마목1)과 2)에 따라 2020년 12월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2021년 6월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했으나, 2019년에 자진해서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을 각 1회씩 실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용승인일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그 이후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법 제25조 위반에 해당하나, 해당 민원의 경우처럼 사용승인일이 속한달 이전에 실시하는 경우는 제25조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소방시설법시행규칙 별표1 제3호마목에 '하나의 대지경계선안에 2개 이상의 점검검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에서 가장 빠른 건축물의 기준이 가장 년도가 오래된 건축물의 의미하는지 아니면 사용승인일의 월이 가장 빠른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 회신 2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마목4)에 규정된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점검 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각각의 대상물은 고유의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에 점검하는 것이 원칙이나, 하나의 관리권원이 관리하는 대상물이 여럿 있는 경우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도모(하나의 점검계약)하여 이를 함께 점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각각의 대상물의 점검기한이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이기 때문에 가장 빠른 달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위법하지 않으나, 다른 경우에는 일부 대상물의 사용승인월을 지나 점검하게 되어 위법하므로 가장 빠른 달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 대상물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된다면 각각의 대상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한 월에 개별적으로 점검하여도 무방합니다.

질의 3

▼ 작동기능점검대상이 종합정밀점검을 받은경우 6개월 뒤 작동기능점검을 받아야 하는지?

🕒 회신 3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가목과 제3호가목에 따라 민원인의 경우가 종합정밀점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작동기능점검대신 종합정밀 점검을 자진해서 실시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종합정밀점검을 받고 달로부터 6개월뒤 작동기능점검을 받아야하는 의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나목에 따라 종합정밀점검은 작동기능 점검을 포함하고 있어, 사용승인일이 속한달에 자진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추가로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해야할 법적 사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95년에 허가된 공동주택으로 8개의 동이 있고, 이 중 2동만 11층이상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음. 이 경우 자체점검을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
 - 종합정밀점검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동만 점검하면 되는지, 아님 전체동을 기준으로 실시하는지?
 - 지하주차장이 별동으로 구획된 경우 별도의 동으로 점검해야 하는지?
 - 스프링클러설치동만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다면, 자체점검은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

🕒 회신 4

-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비고 제1호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 조항에 따라 내화구조의 벽과 바닥으로 구획되어 있고 승강기나 계단으로 연결되지 않은 지하주차장, 별동으로 건축된 아파트 동은 별개의 점검대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동 및 지하주차장은 종합정밀점검 대상, 나머지 동은 작동기능점검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공동주택의 자체점검은, 사용승인일이 속한달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동과 지하주차장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동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동은 종합정밀점검을 받은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체점검의 점검결과보고서 제출시한 및 제출방법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9조]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제19조

제1항 법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 전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할수 있다.

0-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방법으로 이메일 제출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만약 불가능하다면 안되는 근거를 알고싶습니다.)

🕒 회신 1

- 자체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에 관계인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계인이 원본과 같다는 확인 서명 또는 날인 이 있는 경우 사본 및 이메일, 팩스 제출도 가능합니다.
- 자체점검 처리 담당부서인 관할 소방서에 사전에 문의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2

■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일이 7일 이내로 단축 적용되어 점검 후 제출까지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관계인 서명 또는 날인이 생략 가능합니까?

🕒 🔊 회신 2

● 소방시설법 제25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자체점검 실시와 제출의 의무는 관계인에게 있습니다. 이 경우 관계인은 소방시설관리업체가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을 한 내용 및 결과에 대해 확인하고, 관계인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의 3

▲ 소방시설 자체첨검 후 익일부터 7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됨에 따라, 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이라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어 보고서 제출기한을 토요일과 공휴일 산입을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보아 개선요청 제안합니다.

🕒 회신 3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2020.8.14.)에 규정된 소방시설 자체점 검결과보고서 제출기간이 30일에서 7일로 단축·시행되어, 「민법」제157조에 따라 "토요일 및 공휴일"이 제출기간에 포함되어 추석연휴 등 공휴일이 긴 경우에는 관계인 및 점검업체 등이 점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이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를 참고하여 제출기간에는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제19조를 개정할 예정이니, 다음과 같이 제출기간을 계산하여 업무처리 하시기바랍니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일 : 2020.10. ~ 2021.6.)

〈자체점검결과보고서 처리기간 계산 방법〉

- 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한 날은 보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나. 보고기간 7일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다. 보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익일로 만료한다.

□ 조치명령 연기 신청 가능 날짜 문의

[소방시설법 제47조의2]

관계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제9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 등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치명령 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 등을 명령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명령 등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조치명령 이행 완료일이 9월 22일 이라면 조치명령 연기 신청 가능은 언제까지 입니까?

🕒 회신 1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44조2에 따라 조치명령 연기 신청은 이행기간 5일 전까지 입니다. 문의하신 사례의 경우 9월 17일까지 조치명령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 (참고사항) 9월 22일(이행 완료일), 21일(1일 전), 20일(2일 전), 19일(3일 전), 18일(4일 전), 17일(5일 전)

지체점검대상 조치명령 사항 중 처벌, 과태료 관련 사항에 질문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1]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제48조(벌칙)

① 제9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9조제1항 전단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자
-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 의 행위를 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6.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질의 1

방화문 및 방화셔터 관련 자체점검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에 해당하는지?

소방시설유지관리 위반사항의 경우도 과태료처분대상에 해당하는지? 과태료 처분 후 조치명령 받는지?

🕒。 회신 1

- 민원인의 기재사항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습니다. 다만, 방화문 및 방화셔터의 경우는 건축법 관련사항으로 관할 소방서에서 해당 사항에 따라 소방시설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필여한 조치를 명할 수는 있으나, 건축 관련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점검결과를 근거로 관할 구청 건축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 자체점검결과보고서에 과태료를 처분해야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하여도, 소방시설법 제25조제1항에서의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한 목적은 동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실시하는 소방특별조사와 별도로 소방시설등의 정상 작동 여부 및 화재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스스로 시정하도록함으로써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는 데 있습니다.
- 자체점검의 실시 및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자체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의무사항인 소방안전관리업무 일환으로 판단할 수 있어,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 해석례[06-0388. 2007.2.2.]

【질의요지】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 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자체점검에서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견되어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동법 제9조제1항, 제20조제6항제5호 위반을 이유로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에 대하여 동법 제53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 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자체점검에서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견되어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동법 제9조제1항, 제20조제6항제5호 위반을 이유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에 대하여 동법 제53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

- 화재의 예방과 화재진압 대책의 마련을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제출을 명령하고(동항제1호),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을 검사하며(동항제2호),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질문(동항제3호)을 하는 행위(이하 "소방검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동법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하고, 그 점검결과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또한,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동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에 처하며, 동법 제9조제1항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행하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위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8조제1호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또한 동법 제20조제6항제5호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방화관리대상물을 제외한다)의관계인과 방화관리자는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등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동법 제53조제1항제6호에 따라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동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실시·점검하는 자체점검은 작동기능점검(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것), 종합정밀점검(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동법 제2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 그런데, 동법 제25조제1항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관련하여서는 특정소방대 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결과 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만 형사처벌(동법 제 49조제2호) 또는 과태료(동법 제53조제10호)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체점 검에서 소방시설등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 특 정소방대상물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경우에도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에 대 하여 동법 제9조제1항, 동법 제20조제6항제5호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동법 제53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으나, 동법 제25조제1항에서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한 목적은 동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실시하는 소방검사와 별도로 소방시 설등에 대하여 정상작동 여부 및 화재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 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스스로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시설 등의 유지 · 관리 의 효율성을 기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자체점검 실시 및 자체점검 결과의 보고의무를 이행하는 것 자체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또는 방화관리 자)에게 부여되는 동법 제20조제6항의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ㆍ 관리 등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하나의 과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동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시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도과하여 방치하고 있는 등 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만으로 동법 제9조제1항의 소방시설등의 화 재안전기준에 따른 설치 또는 유지·관리의무 또는 동법 제20조제6항제5호의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 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까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방 화관리자에 대하여 동법 제53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0-

13.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소방시설법 제20조]

□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대상 관련 질의

[소방시설법 제21조]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제21조】

제21조(공동소방안전관리자)

제21조(공동 소방안전관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질의 1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면,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권원이 분리된 각자의 권원에 관해서만 관리를 하는 것인가요?

🕒 회신 1

● 소방시설법 제21조에 따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그 권리 관원이 분리 된 것 가운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 인은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공동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다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전체를 관리해야 합니다.

질의 2

■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대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

🔍 회신 2

▲ 소방시설법 제21조에 따라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소방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동소방안전 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된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는 ① 고층 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이상인 건축물만 해당한다) ②지하가 ③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④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소매시장 ⑤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와공동소방안전관리자는 별개의 사항이므로 소방안전관리자와 공동소방안전관리자라 각각 선임하여야 합니다.

질의 3

■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경우 별도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지?

🕒 회신 3

▲ 소방시설법 제20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는 최소 1명의 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법 제21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는 1명 이상의 소방안전관리자와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합니다.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관한 질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제22조제2항】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되, 그 특정소방대상물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급수가 높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기존에 주상복합건축물로서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입니다. 관리권원이 달라 공동 주택과 상가에 각각 특급소방안전관리자를 1명(총2명) 선임해서 관리해왔는데, 특급소방 안전관리자로 1명만 선임해도 되는지?

🔍 회신 1

● 소방시설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 소방안전 관리자는 1명 이상 선임하면 됩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에는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방관련법규상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관리 권원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관리 권원별 합의가 있다면, 소방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질의 2

○ 인접한 대지의 건물 A, B 중 A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이며 건물주 가족입니다.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또한, 인접한 대지의 건물 A, B 중 B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중,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 회신 2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명시된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에 대한 소방시설법상 명확한 해석은 없습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권원이란 일정한 법률상 사실상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상의 원인을 의미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라는 이유만으로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경우는 관계인 중 점유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 전체를 임대하고 있다고 하여도 건물소유주에게 건물 관리에 대한 전체 권한을 법률적으로 위임받지 않는 한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자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4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2개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한 명으로 할 수 있는지?

🕒 회신 3

■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경우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관리권원이 같은 두 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서 한 명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를 각각 선임 하여야 합니다.

질의 4

지하 2층 지상 31층인 복합건축물의 상가와 아파트를 분리하여 관리하는 경우를 상가 2개 층이 빠지면 아파트는 지하층 제외 29층이 되어 특급 소방대상물에서 2급 소방 대상물로 변경된다고 생각되는데 해당 대상물에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하는가?

🕒 회신 4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각각 선임하더라도 각각 특급 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해당 대상물의 경우 복합 건축물로서 특급 소방안전 관리대상물에 해당함 따라서 상가와 아파트를 분리하더라도 해당 대상물은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기 때문입니다.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기준 관련 질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

관계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

제22조의2(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22 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한다)로 한다. 다 만,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 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질의 1

○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노유자시설이 이용되지 않는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은지? 그리고 야간 및 휴일의 의미에 관하여 질의

🕒 회신 1

○ 소방관련법규상 휴일 또는 야간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야간은 22시에서 06시까지를 의미합니다. 또한 휴일이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야간과 휴일을 준용 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2조의2제1항에 따라 야간 및 휴일에 1회라도 운영되지 않아야 소방안전 관리 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보 조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관할 소방서장이 판단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해당 대상물을 담당하는 관할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인원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 🔊 회신 2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 제2항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 또는 기숙사의 경우 300세대마다 추가로 1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 ex) ①750세대 -〉 300~599(1명), 600~899(2명) -〉 2명 선임 ②연면적 37,000㎡ -〉 15,000㎡~29,999㎡, 30,000㎡~44,999㎡ -〉 2명 선임 ③노유자시설 1명 선임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인원의 경우 최소 선임 인원이기 때문에 최소인원 외에 추가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가능함]

질의 3

☑ 건축물대장에 있는 모든 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15,000㎡가 넘을 경우 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한다면, 건축물대상장 대상물 연면적 합산 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은 그 합산 연면적에서 제외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회신 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인접한 대지에 여러 동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고 관리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이여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는 경우 각각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자동화재탐지설비 이상의 소방시설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의 면적의 합이 15.000㎡ 이상일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질의 4

■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준은?

🕒 회신 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주상복합건축물로서 주거시설(아파트)과 비 주거시설(상가 등)이 함께 있는 경우 해당용도 및 면적별로 각각 구분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합니다.
 - 1) 주거시설(아파트) :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면적에 관계없이 세대수를 기준으로산정
 - 2) 비주거시설(상가 등) : 건축물대장의 공부상(상가부분+상가주차장부분) 합산된 바닥면적으로 산정하되 상가등 공부상 면적이 15,000㎡미만인 경우 선임제외가 의료시설,노유자지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함.

1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질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관계법령

제5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① 관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질의 1

■ 공공기관에 비상경보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같은 조항의 단서조항(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이는 임의규정으로 관할 소방서장이 판단하여 적용하는 바 예외사항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대상물을 담당하는 관할 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 공공기관 시설 관리 용업업체 직원 중 관리소장이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지?

🔍 회신 2

● 용역업체는 공공기관의 직제상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및 공공기관 소속 직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의2에 따라 용역업체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 또는 책임자를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시설유지관리 부서 또는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질의 3

🕒 회신 3

○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이란 해당 공공기관의 사무분장에 따라 소방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 또는 책임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부서의 장 또는 책임자'는 직책으로 해석됩니다.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9조] 다만, 해당 공공기관의 직제에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또는 책임자가 없는 경우(담당 직책이 없는 경우)에는 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경우 '직위'란 직급(과장 또는 담당관 직위)으로 해석됩니다.

□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소방 훈련 및 교육 관련 질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①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

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 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질의 1

☑ 상시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인 공공기관은 소방훈련을 미실시할 수 있는지?

🕒 회신 1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은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무자가 10명 이하이거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합동 소방훈련의 의무만 제외됩니다.

질의 2

집 6개월 이상 남은 시점에서 신설된 공공기관의 자체 훈련 및 합동훈련 우선순위 여부

🖳 회신 2

○ 6개월 이상 남은 시점에서 신설된 공공기관의 합동 소방훈련 및 자체 소방훈련하여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에는 우선순위에 관한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동 소방훈련 및 자체 소방훈련 중우선순위에 관련하여서는 관할소방서와 해당 공공기관의 연간 계획에 따라일정을 조율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15. 실내장식물의 방염대상물품 관련

□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9조]

관계법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질의 1

■ 모델하우스에 실내장식물을 설치할 경우 방염대상물을 사용하여야 하는가?

🕒 🔊 회신 1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제3호 라목에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전시장'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2호가목에 따라 견본주택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의 경우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의 2

■ 한의원도 방염성능기준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나요?

🔍 회신 2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물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및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0조]

관계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u>질의 1</u>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이란 11층 이상의 건축물에 11층 이상 층에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11층 이상의 건축물에 해당하면 건축물의 전 층이 해당하는가?

🕒, 회신 1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0호에 따라 11층 이상의 건축물의 모든 층은 실내장식물을 사용할 경우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질의 2

내부마감재료에 벽지를 부착(설치)하는 경우 벽지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방염벽지를 사용 해야 하는가?

🔍 회신 2

● 내부마감재료는 방염벽지를 부착하는 면에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시공된 건축재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방염벽지는 내부마감재료가 아닌 실내 장식물입니다. 따라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1항에 따라 벽지를 사용하는 경우 2밀리미터 미만의 종이벽지가 아닌 벽지를 사용하는 경우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벽지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질의 3

■ 문화 및 집회 시설에 속하는 공연장에 설치되는 무대바닥을 목재로 시공하였을 경우 무대바닥도 방염처리를 해야 하는가?

🖳 회신 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는 경우방염대상 물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바닥에 카펫을 설치하는 때 외에는 바닥은 방염 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중이용업소법

1. 영업장 내 안전시설등 설치 관련 질의 등

■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9조 관련]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2

- 가)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중 하나 이상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나)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와 지구음향장치는 영업장의 구획 된 실마다 설치할 것. 다만, 영업장의 구획된 실에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가 설치된 경우 해당 실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다) 영상음향차단장치가 설치된 영업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로 설치 할 것

◎ 질의 1

■ 다중이용업소 입점 시 영업장 내에 별도의 수신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 회신 1

□ 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시 영업장 내에 별도의 수신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영상음향차단장치를 설치할 경우 영업장 내에 별도의 수신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영업장 비상구 및 주된 출입구 관련 질의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9조 관련]

<u>관계법</u>령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2

가. 공통 기준

- 1) 설치 위치: 비상구는 영업장(2개 이상의 층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층별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건물구조로 인하여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 3) 비상구 구조
 - 가) 비상구는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할 것. 다만, 영업장 바닥에서 천장까지 불연재료(不燃材料)로 구획된 부속실(전실)은 그러하 지 아니하다.
 - 나) 비상구는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을 경유하는 구조가 아닌 것이어야 하고, 층별 영업장은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불연재료·준불연재료로 된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분리되도록 할 것. 다만, 둘 이상의 영업소가 주방 외에 객실부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의 구조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5)다)에 따라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복충구조(複層構造) 영업장(각각 다른 2개 이상의 충을 내부계단 또는 통로가 설치되어 하나의 충의 내부에서 다른 충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의 영업장을 말한다)의 기준
 - 4) 영업장의 위치 및 구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그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어느 하나의 층에 비상구를 설치할 것
 - 가) 건축물 주요 구조부를 훼손하는 경우
 - 나) 옹벽 또는 외벽이 유리로 설치된 경우 등

질의 1

대형마트 일반음식점 입점 시 다른 영업장과 칸막이 등으로 구획을 하여야 하는지? 또한 영업장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가?

🕒 회신 1

■ 법 시행규칙 별표2 비상구 규정에 의해 층별 영업장은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불연재료·준불연재료로 된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분리 되도록 하였으나, 둘 이상의 영업소가 주방 외에 객실부분을 공동으로 사용 하는 구조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5)다)에 따라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부서에서 식품접객업으로 신고 수리 되는 면적과 다중이용업소법 상 영업장 면적 산정기준이 동일합니다.

질의 2

복층구조 영업장(1,2층) 1층도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으로 보아 비상구 면제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2

- 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나목1)에 따라 복층구조의 영업장인 경우 각 층별로 비상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 * 가. 주된 출입구 외에 해당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로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별도로 설치된 경우
 - 나.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실(室)이 없고, 영업장 전체가 개방된 구조의 영업장을 말한다]으로서 그 영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0미터 이하인 경우

질의 3

■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안에 타영업장 입점이 가능한지?

🕒 회신 3

○ 다중이용업소법에서 영업장 내에 타 영업장(타 시설) 입점에 관하여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영업장이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불연재료·준불연재료로 된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 내부에 소방시설이 설치되어있지 않고 화재 발생 시 다중이용업소 부분을 통해서만 피난이 가능한 경우 다중이용업소 입점에 관하여 관할소방서와 협의해아여 합니다. 또한, 다른 영업장(타 시설)의 허가 관련 사항에 관하여 다른 영업장(타 시설)에 해당하는 법률상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담당 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질의 4

□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외기에 면하는 부분에 창문 대신 폴딩도어 설치 가능 여부

🕒 회신 4

○ 창문 대신 폴딩도어 설치와 관련해서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안전상 지장이 없다면 외기에 면하는 부분에 창문 대신 폴딩도어도 설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질의 5

■ 비상구에 연결된 직통계단, 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의 유효너비는 건축법 기준을 적용해야하는지. 다중이용업소법에 규정된 비상구 기준을 적용해야하는지

🕒, 회신 5

■ 법 시행령 별표1의2 비고에 의하면 비상구란 '주된 출입구와 주된 출입구외에 화재 발생 시 등 비상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지상, 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 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 또는 발코니(이하 직통계단 등)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통계단 등*은 「건축법」 및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하고, 비상구는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의 규격을 확보하면됩니다.

* 직통계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간이스프링클러 소급적용 대상 관련 질의 등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소급적용 관련질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9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법률 제933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으로서 2009년 7월 8일 전에 영업을 개시한 후 영업장의 내부구조·실내장식물·안전시설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한 사실이 없는 영업장을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주가 제1항 후단에 따라 해당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질의 1

☑ 고시원 용도가 아닌 장소(공동주택, 교육 연구시설 등)에서 고시원 형태의 업을 운영하는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여부 및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하는지?

🕒 회신 1

● 해당 영업장의 용도를 확인하고, 용도가 고시원인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법 적용대상으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만약, 용도는 고시원 임에도 부동산임대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방관서에서는 관할 시·군·구청으로 불법용도변경*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로 완비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라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예시) 고시원 : 주차대수 없음, 각 실마다 화장실, 부엌 등을 갖출 필요 없음 주 택 : 주차대수 있음, 각 실마다 화장실, 부엌 등을 갖추어야 함.

3 영업장 내부구획 및 구획된 실 관련 등

□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내부구획 관련 질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0조의2]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9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소법 제10조의2】

제10조의2 영업장의 내부구획

제10조의2(영업장의 내부구획) 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구획하고자 할 때에는 불 연재료로 구획하여야 한다.

질의 1

□ 다중이용업소 목욕장 욕탕이 있는 실(샤워기 등이 있는 부분)에 대한 안전시설등 설치 기준은 다중이용업소에 적용되는 모든 안전시설등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안전시설등에서 제외 혹은 면제되는 부분이 있나요?

🕒 회신 1

● 안전시설등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전체 범위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욕탕, 샤워기 등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부분은 소방시설법 또는 화재 안전기준 상 소방시설 면제기준이 있는 경우 설치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4 영업장 바닥면적 산정 및 방염 면적 산정 등

□ 실내장식물 설치 가능한 면적 산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

제10조 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 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 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은 불연재료(不燃材料) 또는 준불 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부분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질의 1

 → 분상가로 된 집합건물에서 여러 영업장이 연결되어 있는 영업장 중 일부분의 영업장에 다중이용업소를 할 때 매장과 매장 사이 경계벽(유리)으로 되어있는 경우 방염 면적 산정 기준은 어떻게 하는지?

🕒 회신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영업장 방염처리면적은 영업장을 둘러싸고 있는 벽과 천장을 합한 면적을 의미합니다. 즉, 영업장의 내부구획 된 벽면과 건물 외벽 창의 면적은 포함하지 않습니다.(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의 "벽"의 정의를 준용하여 유리창을 벽으로 보기 어려움)

질의 2

■ 내화구조의 벽이 아닌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하기 위한 불연재료 · 준불연재료로 된 차단벽과 영업장 외벽 창을 불연재료 준불연재료로 막은 벽은 방염 처리면적 산정을 위한 벽으로 볼 수 없는지?

🔍 회신 2

●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목재 또는 합판에 대해서만 방염을 허용하고 있고, 방염할 수 있는 최대면적도 "영업 장의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벽"은 바닥에서 천장 까지 구획된 내화구조의 벽을 의미합니다.

□ │ 실내장식물 사용 시 방염 관련 질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

제10조 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 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은 불연재료(不燃材料)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부분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다.

질의 1

내부마감재료에 벽지를 부착(설치)하는 경우 벽지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방염벽지를 사용 해야 하는가?

🕒 🔊 회신 1

●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종이류를 부착하는 경우 실내장식물에 해당합니다. 다만, 종이류 벽지의 경우 2밀리미터 미만은 실내장식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2밀리미터 이상의 종이류 벽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벽지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된 것을 사용하여야합니다.

질의 2

□ 다중이용업소 구획된 실의 출입문은 방염 물품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 회신 2

○ 다중이용업소의 구획된 실 출입문은 실내장식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다중 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의 문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판 또는 목재의 출입문을 설치 하는 경우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 가능합니다.

질의 3

■ 다중이용업소의 커텐류(블라인드) 방염제품 사용 가능 여부

🔍 회신 3

●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은 준불연재료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는 방염성능 제품을 사용할 수 없지만, 합판이나 목재의 경우 면적규정을통해 방염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염에 관해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커텐류는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제16조에 따라 창문의 채광용 커텐류(브라인드 포함)에 대해서 다중이용

업소법에 따른 방염면적 산정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방염대상 물품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채광용 커텐류는 실내장식물로 보지 않음. 다만, 소방시설법에 따라 방염물품대상에 해당됨.

질의 4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ABS도어 방염처리 가능여부

🔍 회신 4

○ 다중이용업소에 사용하는 문의 경우는 실내장식물로 판단하기 때문에 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합니다. 또한,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BS도어의경우는 합판 또는목재의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없고,불연재료 또는 준연재료로 인정된 ABS도어를 사용하여야합니다.

□ 다중이용업소 바닥면적 산정 기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2조 다중이용업

- 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질의 1

□ 영업장 내부 창고가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산정면적에서 제외 가능한지?

🕒。 회신 1

●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수평투영면적)입니다. 자재 보관 등으로 사용하는 창고가 영업장 내부에 있거나 허가관청에 신고시 영업장 면적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영업장 산정면적에 포함됩니다.

질의 2

□ 다중이용업을 등록하려고 할 때 영업장의 면적을 산정 및 판단 주체는 관할 시·군· 구청인지, 소방서 완비 담당자인지?

🕒 회신 2

○ 허가관청의 영업장 바닥면적 산정기준과 다중이용소법 상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의 바닥면적 산정기준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허가관청에서 식품접객업으로 신고 수리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관서에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영업장의 바닥면적을 실측할 수도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 등



학원관련 질의 사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제2조 다중이용업

-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 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것
 -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 상인 학원
 -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 까지 및 제8호의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질의 1

같은 운영권자가 다중이용업소인 학원(수용인원 300명 이상)을 같은 건축물 다른 층에 새로운 학원을 영업신고 하는 경우, 영업신고 부분이 다중이용업소인지?

🕒。 회신 1

● 법 시행령 제2조제3호나목(2)에 따라 같은 건축물에 100명 미만의 학원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으며, 100명 이상인 경우에도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에도 다중이용 업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 2

□ 다른 운영권자가 다중이용업소인 학원(수용인원 300명 이상)이 있는 건물의 다른 층에 학원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 부분이 다중이용업소인지?

🕒 회신 2

● 추가로 설립하는 학원의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경우에 법시행령 제2조제3호나목(2)에 따라 학원에 해당되며, 방화구획 된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설립되는 수용인원이 300명이상인 경우 방화구획과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합니다.

질의 3

3~5층 각 층의 면적이 400㎡이고 3~4층을 학원으로 운영하면서 완비증명서를 발급 받았는데, 5층은 같은 운영권자이지만 별도의 사업자로 영업허가를 받고 다른 용도의 학원으로 하려고 하는 경우 5층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3

● 법 시행령 제2조제3호나목에서 단서조항으로 "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음. 운영권자와 상관없이 추가로 영업 허가를 받는 학원의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함. 다만,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음.

질의 4

 소방시설법 상 수용인원 산정을 위하여 바닥면적을 정할 때 복도,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바, 학원 전유부 내 임의구획을 통하여 형성된 통로가 수용인원 산정 시 제외하는 복도에 해당하는지, 또한 학원 내 임의구획을 통하여 형성된 통로를 휴게공간 등의 용도와 공용하는 경우, 수용인원 산정 시 제외하는 복도에 해당하는지?

🕒 회신 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수용인원을 산정하기 위하여 바닥면적을 정할 때 복도(통행목적),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은 포함하지 않으며, 학원 내 임의구획을 통하여 형성된 통로는 복도에 해당하므로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도의 주 용도인 통행 외 휴게공간 등을 겸하는 복도는 수용을 산정하는 취지상 바닥면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5

■ 여러개의 동 수용인원 합이 300인 이상일 경우 다중이용업소(학원) 해당하는지?

🔍 회신 5

● 여러 동을 기준으로 수용인원을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설립 된 학원의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선박(유선사업) 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조 다중이용업

-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 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 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 1) 지상 1층
 -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질의 1

■ 선박(유선사업장)이 다중이용업소 해당 하는지?

ري ا

회신 1

○ 「선박법」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움직일 수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소방대상물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선박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일반음식점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합니다.

영업장 출입문이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제5호】

제2조 다중이용업

제2조제1호·5호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 1) 지상 1층
-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일의 1

해당 영업장 위치가 지상 3층 건물에서 3층에 해당하며 사방이 개방된 위치로 계단을 20계단 정도 내려가면 지면과 맞닿는 위치에 있는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지?

🖳 회신 1

◎ 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영업장이 지상 1층 또는 피난층에 접해 있는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영업장과 같이 계단을 통하여 지면과 연결되는 경우는 피난 상 장애 여부 등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최대 수평거리 10M 이내인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협의 후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콜라텍업 위락시설 해당 관련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2조]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

제2조 다중이용업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 1.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 구획된 실(室) 안에 전화기·텔레비전·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 2. 수면방업: 구획된 실(室) 안에 침대·간이침대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 3. 콜라텍업 :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질의 1

골 콜라텍업이 위락시설에 해당하는지?

🕒。 회신 1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14호에서 위락시설에 관하여 ①단란주점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② 유흥주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③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④ 무도장, 무도학원 ⑤ 카지노영업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무도장업(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업),무도학원업(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 과정을 교습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시도 지침 및 매뉴얼에 따라 콜라텍을 "② 유흥주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해당하여 위락시설로 보는 경우가 있으니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질의사항 등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교육 및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기록 관련 질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3조]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8조 소방안전교육

제8조(소방안전교육) ① 다중이용업주와 그 종업원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

제13조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제13조(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안전시설등이 건축물의 다른 시설·장비와 연계되어 작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등 관련 시설·장비를 관리하는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은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질의 1

■ 소방안전교육은 매장의 관리자 1명만 이수하면 되나요?

🕒 회신 1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그 종업원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영업주와 종업원 1명이상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질의 2

하나의 건물에 여러개의 영업장이 있는 경우 어떻게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를 작성 및 보관해야 하는지?

🕒 회신 2

○ 각 각의 영업장마다 법 제13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점검결과서 보관의 방법에 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관할소방서 점검 시 점검결과서 확인의 편의를 위하여 영업장 내에 보관하는 것을 권장하고, 각각의 영업장 별로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를 작성 하여야 합니다.

□ 고시원 관련 질의 사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2

제9조 안전시설등의 설치 · 유지 기준

가) 내부 피난통로의 폭은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으로서 구획된 실의 출입문 열리는 방향이 피난통로 방향인 경우에는 15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질의 1

■ 법 시행규칙 별표2 영업장 내부의 피난통로 규정 중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고시원 영업장의 출입문 열림 방향이 구획된 실 내부로 열리는 경우 피난통로의 폭을 120cm 이상으로 적용 가능한가요?

○ 고시원의 각 실의 출입문 열림 방향이 실 내부로 열리는 경우 법 시행규칙

별표2 3호가목에 따라 복도 폭은 120cm 이상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관련 질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5항]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5항

제11조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 ④ 다중이용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이전에 발급받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첨부(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
- 2.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가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
- 3. 안전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 등이 없이 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4. 안전시설등을 추가하지 아니하는 업종으로 업종 변경을 한 경우. 다만, 내부구조 변경 등이 있거나 업종 변경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질의 1

- 폐업신고를 한 후에 내부구조 및 안전시설등의 변경 없이 다시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를 신청하였을 경우 ① 기존에 설치된 소방시설(간이스프링클러설비)을 인정해도 되는지? ② 완비증명서 신청 당시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다시 설치해야 하는지?
- 영업장의 폐업 또는 타 법령에 따른 등록 취소 시 유사 업종으로 바꾼 후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을 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회신 1

○ 다중이용업소를 폐업한 후 다시 다중이용업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신청 당시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폐업한 다중이용업소의 내부구조 및 안전시설등의 변경이 없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에도 기존의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되 '다만,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에 설치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인정 가능하고, 기타 안전시설등은 신청 당시의 화재안전기준(안전시설등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의 2

● 영업장 내부의 실이 감소하였을 경우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신규로 발급받아야 하는지? 재발급 가능한지?

🕒 회신 2

■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내부구조변경(영업장 면적증가, 구획된 실 증가, 내부통로 구조변경) 등이 없는 경우 그리고 안전시설등을 추가하지 아니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구조 변경 없이 영업장 실 감소만 있다면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내부구조 변경이 있거나 안전시설등이 변경되었다면 완비증명서를 재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1. 소방시설업의 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소방시설업의 등록 및 기술인력 겸임 · 겸직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관계법령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영업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등록수첩의 발급·재발급 신청, 그 밖에 소방시설업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 관 및「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체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설계·감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 1. 주택의 건설·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 2. 설계·감리 업무를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을 것

질의 1

▼ 동일회사에 근무하면서 동현장에 상주 통신책임감리와 소방 보조감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지요(소방, 통신 감리원 자격증 보유).

회신 1

- 소방감리원과 통신감리원은 겸임 할 수 없습니다.(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습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2조 별표1 제3호 비고 3, 4에서 "기술인력의

완화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제27조 제1항에 의거 "소방관계법령에 의한 소방관련업과 타법령에서 정하는 업종에 두는 기술인력은 각 업종별로 각각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또한 제2항에서 "기술인력의 겸임·겸직의 허용여부는 각각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2

■ 제가 소방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하여 현재소속된 회사 소방감리 현장에서 상주감리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를 취득하여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전력설계업 면허를 낼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주인력으로 소방감리와 전력설계업을 같이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회신 2

- ▲ 소방공사감리업과 전력시설물설계업은 각각의 관련 법령에 의거 별도로 기술 인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비고 제4호에 따라, "소방공사 감리업을 하려는 자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건축사법」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운영,「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전력시설물공사감리업,「기술사법」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운영 또는 화재위험평가 대행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등"이라한다) 중 어느 하나를 함께 하려는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등의 보유 기술 인력으로 신고나 등록된 소방기술사는 전문 소방공사감리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으로 볼 수 있고, 특급 감리원은 일반 소방공사 감리업의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으로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 등 에 한하여 완화 된 기술인력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 또한「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제27조에 의하면 ① 소방관계법령에 따른

소방관련업과 타 법령에서 정하는 업종에 두는 기술인력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와「소방 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각 업종별로 각각 두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② 소방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업종의 등록기준 중 소방 관계법령에 의한 업종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겸업하는 때의 기술 능력의 겪임·겪직의 허용여부는 각각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질의 3

전기설계 전문1종 및 소방, 통신 설계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건축전기설비기술사로서 향후 소방시설관리사를 취득시 전기설계전문1종과 소방시설관리업 및 소방전문공사업 겸직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 회신 3

- 건축전기설비기술사와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으로는 전기설계전문1종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 및 소방시설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겸직이 불가합니다.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제27조에 따라, 소방관계법령에 따른 소방관련업과 타 법령에서 정하는 업종에 두는 기술인력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9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각 업종별로 각각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고 있고, 소방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업종의 등록기준 중 소방관계법령에 의한 업종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겸업하는 때의 기술능력의 겸임· 겸직의 허용 여부는 각각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그리고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 겸직여부는 「소방 시설공사업법시행령」 별표1 1. 비고 제3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 4

 현재 소방공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방관리업을 등록하려 하는데 소방공사업의 보조 인력을 소방관리업의 보조인력으로 중복 선임 가능하나요?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별표1 제2호 소방시설공사업 비고 제5호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하는 경우에 마목부터 사목에 따른 자격을 갖춘 소방기술자는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겪임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7조제2항에 따라 소방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업종의 등록기준 중 소방관계법령에 의한 업종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겸업하는 때의 기술능력의 겸임·겸직의 허용여부는 각각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소방시설업의 운영 [소방시설공사업법 제8조]

소방시설업 운영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제8조]

관계법령

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

- ③ 소방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맡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1. 제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 2.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3.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 ④ 소방시설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기가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질의 1

소방공사감리업체로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관계인 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지?

- 「소방시설공사업법」제8조제3항제2호에 의거 소방시설업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소방시설공사 등을 맡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하나.
- 같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 된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고지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과징금이란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법 위반행위로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금의 성격 외에 부당이득 환수적 요소도 부가함으로써 법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상의 조치(수원

지방법원 2013. 10. 11 선고 2013구단10377 판결 내용 중 일부 발췌) 이고,

- 각종 법률이 규정하는 과징금 제도의 유형을 보면 "첫째, 행정상 의무이행의 확보를 위하여 그 의무위반 행위로 얻은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고 나아가 그 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이 있고 둘째, 다수국민이 이용하는 사업이나 국가 및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행정법규에 위반하였을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하여 허가취소나 영업정지처분을 하면 오히려 국민에게 생활의 불편과 어려움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처분과 선택적으로 또는 이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이 있으며 셋째, 배출부과금 등과 같이 법령에서 과징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그 제도의 취지·성격 등에 비추어 과징금과유사한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것 등이 있다"(현재 2001. 5. 31. 99헌가 18등, 판례집 13-1, 1017, 1096-1098 참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 즉, 영업정지처분과 과징금은 성질상 서로 다른 처분이고, 지위승계·영업 정지·등록 취소 등은 소방시설업자의 업무 특성상 관계인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영업정지 등)만 관계인에게 고지를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질의 2

소방시설공사 도급 후 회사 사정으로 공사업 면허를 반납하여야 하는데, 기존 계약 건에 대하여 계속 공사를 할 수 있는지?

- ▲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증을 자진 반납한 경우(자진 폐업)에는 반납 전에 체결한 도급계약을 이행할 수 없습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제1항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한편, 「소방시설공사업법」제8조제2항에 따르면, 소방시설업자의 등록취소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단서 조항에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소방시설업자의 경우는 착공신고가 수리되어 공사를 하고 있는 자로서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그 공사를 하는 동안이나 제4조제1항에 따라 방염처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방염처리업자"라 한다)가 도급을 받아 방염 중인 것으로서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방염을 하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소방시설업자가 등록증을 '자진 반납'한 경우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런데, 「소방시설공사업법」제8조제2항에서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아 소방시설업을 할 수 없는 자에게 계속하여 이미 체결된 도급계약의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소방시설공사등을 위한 도급계약을 맺은 후 제3자인 행정청에 의해 도급계약의 당사자인 소방시설업자의 등록이 취소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처분을 받아 공사를 계속하지 못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등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제3자인 행정청에 의한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은 소방시설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행해지는 침익적처분으로서 원칙적으로 소방시설업자는 그 처분이 집행되기 전에는 처분의시기와 수준 및 이로 인한 피해 등을 예측할 수 없으나, 소방시설업자의 등록증 자진반납은 소방시설업자가 스스로 등록증 자진반납의 시기를 결정함으로써 공사의 계속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어 「소방시설공사업법」제8조제2항을 등록증에 대하여 반납한 경우까지 적용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 따라서, 소방시설업자가 등록증을 자진반납한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업

- 법」 제8조제2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미 체결한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은 유사 사례는 법제처의 법령해석례 [07-0277, 2007. 11. 16. 환경부], [09-0418, 2010. 2. 1.]가 있습니다.
- 참고로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제8조제3항에 따라 폐업한 경우 소방시설공사등을 맡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3 설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

성능위주설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

관계법령

제11조(설계)

-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이하 "설계업자"라 한다)는 이 법이 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경우는 화재안전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3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可燃物)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이하 "성능위주설계"라 한다)하여야 한다.
- ③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질의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서 전문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자는 성능위주 설계대상물을 포함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계를 영업하고 도급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성능위주설계대상물의 설계를 영업하고 도급받기 위해서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이외 별도의 기준이 필요한지요?

🕒 회신 1

□ 「소방시설공사업법」제11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법시행령」제2조의3 별표 1의2에 의하여 전문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하고 소방기술사 2명 이상의 기술 인력을 확보하면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3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可燃物)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이하 "성능위주설계"라 한다)하여야 하며,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질의 2

 성능위주설계 특정소방대상물(공동주택)인 경우에 설계도면과 다르게 소방시설을 시공 해도 무방한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 공사업자와 감리업자는 성능위주설계대로 시공 및 감리업무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소방시설공사업법」제12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제27조제1항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제2항에 의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9조의3에 따른 특정 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可燃物)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이하 "성능 위주설계"라 한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성능위주설계는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에 의거 「소방시설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화재안전기준 등에 따라 제도화된설계를 대체하여 설계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성능위주설계 대상이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화재안전기준 등 법규에 따라 설계된 화재안전성능 보다 동등 이상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도록 설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제5항에

의거 제4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심의 결정을 통보한 경우, 심의 결정된 사항대로 「소방시설법」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갈음 합니다. 따라서 공사업자와 감리업자는 성능위주설계 도면대로 시공 및 감리업무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 3

기존 공장(연면적 10,000㎡) 내부에 상주인원 시설 및 장비수납창고등 몇개의 부속동을 건축예정 중입니다. 공장연면적은 1층이지만 일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며 증축부속 동은 수평이나 수직증축이 아닌 내부 콘테이너 형태의 건축물입니다. 증축예정 건축물 : 7개동 이며 증축부분의 연면적은 2,000㎡ 정도 이며 몇개의 동은 2층부분도 있습니다. 증축부분 일반소방설계업으로 용역이 가능한지요? 참고로 제연설비는 없으며 전기실의 면적이 300㎡ 이상이어서 가스계 소화설비는 해야 합니다

- 공장에 대한 증축부분이 「소방시설법시행령」제1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고, 증축면적이 2,000㎡인 경우에는 일반소방시설 설계업에서도 설계가 가능합니다.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4조에 의하여 증축되는 부분의 면적의 합을 기준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별표 1의 영업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축인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제17조(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 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耐火構造)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 된 경우
- 2.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질의 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3에 따라 성능위주 설계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 공동주택과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개구부가 없는 내화 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하고, 기계·전기실 및 설비배관을 내화구조 벽체로 구획된 경우 별개의 특정 소방대상물에 해당되어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해당하는지?

🔍 회신 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비고1에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이나 출입구를 말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 될 것이며, 각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같은법 시행령」제15조의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 5

당 현장은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가 되어 있는 주상복합공사 현장으로써 아파트 및 오피스텔 세대 내에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가 시공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본체는 건축공사부문에 포함되어 있고, 배관 및 배선공사는 통신공사 도면에 표기되어서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일부로 시공되고

있습니다. (배관 및 배선공사, 세대내 홈네트워크 월패드 및 경비실내 경비기에 표시 및 경보포함)

- 질문 1.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건축과 소방 중 어느 분야의 공사에 해당되나요
- 질문 2.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시공에 대한 소방시설 착공신고가 필요한 가요?
- 질문 3.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에 따른 배관 및 배선, 감시제어 반의 표시 및 경보를 통신공사업체에서 시공할 경우, 통신공사 업체는 소방시설 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가요?
- 질문 4. 건축법 시행령 제 46조 제 5항 제 3호 기준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 소방법에 의한 완강기설치는 면제되는 가요?

- 답변 1)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제4조제3항제10호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 피난구조설비의 피난기구에 해당되나,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5항제2호에 따라 설치되는 하향식피난구의 경우소방시설의 피난기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답변 2) 「건축법 시행령」제 46조제5항에 따라 설치되는 하향식피난구의 경우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집 답변 3)「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5항에 따라 설치되는 하향식피난구의 경우 피난구조설비의 피난기구에 해당되지 않아 소방시설공사업체의 시공 의무가 없습니다.
- □ 답변 4) 건축법령에 적합하게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는 경우「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제5조(설치제외)제4호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의 규정에 따라 "하향식 피난구"를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간주하여 피난구조설비(완강기)의 설치를 아니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6

■ 문의드리는 사항은 성능위주설계 심의 1, 2차 모두 완료 후 후속조치사항으로 심의 의원이 제시한 화재위험성평가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수행주체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주요사항은 성능위주설계를 진행하였던 업체가 화재 위험성평가까지 모두 진행하여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다른업체에서 진행을 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6

□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에 화재위험성평가와 관련하여 규정사항이 없습니다. 귀하의 질의와 같이 성능위주설계 심의 시 심의위원이 제시한 사항으로 성능위주설계 심의를 실시한 시도 소방본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7

● 연면적은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나 지하층 포함하여 30층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에 해당되어 소방성능위주설계 1차(사전심의)를 받았으나, 건축심의 진행 중에 층수가 낮아져지하층 포함 30층 미만으로 건축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소방성능위주설계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데 소방성능위주설계 2차(신고심의)를 진행해야 하는지요? 또한, 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아 2차(신고심의)를 받지 않을 경우 기존에 받았던 1차 내용을 상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회신 7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 3제2호나목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어 성능위주설계심의를 진행하였으나 층수를 30층 미만으로 설계변경하는 경우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존에 실시한 성능위주설계심의 사항은 무효가 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 동의 대상에 해당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8

당 현장은 성능위주설계 대상으로 건축허가는 2019년 3월 허가를 득하여 시공 중인 현장입니다. 지하층은 프리액션밸브 2차측에 송수구와 연결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도 성능위주설계 심의 공통의견 내용 중 지하층은 프리액션밸브 2차측 송수구와 연결 설치 내용이 있었으나 2018, 5, 23삭제되어 당 현장에 설계된 지하층 프리액션밸브 2차측 송수구와 연결배관을 삭제하려 합니다. 가능한지요?

🔍 회신 8

● 귀하의 질의 건축물의 경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3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 대상물의 범위에 해당되어 성능위주의 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심의사항으로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나 소방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9

소방시설 성능위주설계,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 완료 후 시공사 선정 및 발주처 요청에 따라 소방시설과 무관한 외부 색채 디자인을 변경하게 되어, 경관(색채)관련 소위원회를 받아야 하는 경우「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 설계 방법 및 기준」제6조 ①항5호 및 ⑤항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가 아닌 경관(색채)관련 소위원회 심의 또한 소방 성능위주설계를 다시 받아야하는지 여부 질의 드립니다.

[¹ 회신 9

□ 귀하의 질의와 같이 건축물의 외부 색채 디자인 변경으로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제6조제1항 제5호에 해당될것으로 판단되나, 심의내용에 따라 종전의 성능위주설계 심의 내용과 달라지지 않는 경우에는 성능위주설계의 변경신고 등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할 소방서 및 소방본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10

☑ 성능위주설계 심의 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증을 받지 아니한 FM인증이나 UL인증 소방용품을 사용하도록 의견을 제시할 수 있나요?

또한 그 의견이 심의에 반영되면 해당 건축물에 그 제품으로 설계 및 시공을 하여도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 회신 10

○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제2조에 법 및 화재안전기준 등에 따라 제도화된 설계를 대체하는 경우 화재안전성능 보다 동등 이상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제39조에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국내 형식 승인 또는 성능인증 기준이 있는 수입제품은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기준이 없는 제품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4

시공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소방기술자 배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관계법령

제12조(시공)

-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이 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의 구 조와 원리 등에서 그 공법이 특수한 시공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 ②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질의 1

● 연면적 6,066.89㎡인 공동주택(37세대 21동 주택) 중 일부분인 지하1~지상2층 커뮤니티 센터(바닥면적 330㎡-시공 현황 : 소화전+일부 연결살수설비+소화기)에 대한 소방공사를 할 경우 소방기술자 배치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 회신 1

- 소방시설공사가 이루어지는 커뮤니티센터 연면적(또는 소방시설 종류)으로 소방기술자를 배치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4조제1항에서 "증축·용도변경 및 대수선 등을 하고자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증축·용도변경 및 대수선 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면적의 합을 기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별표2의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대상 여부를 정한다"를 준용하면 될 것입니다.

질의 2

■ 지방의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공사를 수주 하게 되어있어 현지 업체와 공동

으로 소방시설공사를 수주 했습니다. 비율은 40%와 60% 입니다. 이 경우 대표사의 기술자 1인만 배치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공동수급사 각 각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지요?

-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소방시설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함)는 소방시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설계도서 · 시방서 등에 따라 성실하게 소방시설공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공사업자는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을 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소방서장에게 착공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방시설 공사의 착공일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 소방기술자 배치 기준에 적합하게 공사업자 소속의 소방기술자(책임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즉 공사업자 또는 책임시공기술자는 소방시설 시공 부분에 대하여 법령 등에 맞게 시공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조제1호 및 제7호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국가계약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계약

예규) 공동계약은용」제4조(공동수급체의 대표자 선임)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목적으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소방시설공사와 관련 된 착공신고 및 소방기술자 배치 부분까지 계약에 관한 사항을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을 겁니다.

- 결론적으로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착공신고와 소방기술자 배치는 계약관련 법령 등과는 별개로 해석 적용하여야 하고, 공동이행방식이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미리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자금, 인원, 자재 등을 출연하여 전체 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하고, 이익배분 및 손실부담도 일정 비율로 정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구성원이 일체가 되어 시공하고 도급인에 대하여 시공 책임도 연대하여 부담함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를 공동으로 수급 받은 각 업체마다 착공신고 및 책임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실제적인 시공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 추가적으로 소방시설 시공에 대한 책임 부분에 대하여도 복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방기술자를 배치할 경우, 처벌의 형평성 및 공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하자보수 책임 당사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에는 소방기술자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음
 ① 소방기술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과「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면 책임기술자의 의무는 구체적으로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 ▲ 소방기술자(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는 소방시설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소방시설공사업법」제27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 화재안전기준 등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여기서 시공이란, 소방기술자가 직접 시공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작업자들이 법령에 적합하게 소방시설을 공사하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합니다.

질의 4

☑ 공사현장의 소방 현장대리인(하도급업체)이 현장내 소방공사 작업이 없을시에도 상주해야 하는지요? (현재 타공정의 공사는 진행중이나. 소방 관련 작업은 없는 상태임)

그 회신 4

● 소방시설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소방기술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야 하며, 소방시설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에는 현장 이탈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 중 공사 현장을 이탈할 경우 아래의 소방기술자 현장 이탈 지침을 참고하여, 발주자 등의 서면승낙 후 감리원에게 알린 후 이탈하되, 1일 이상은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배치하여야 됩니다.

※ 참고: 소방기술자 현장이탈 지침사항

- (1일 미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발주자등의 서면 승낙이 있는 경우 감리원에게 알린 후 현장을 이탈할 수 있음
 - (승낙내용) 이탈시간, 장소, 목적, 비상연락처, 부재중 공사내용 등
 - (발주자등) 발주자 또는 공사현장 내 책임자
- (1일 이상) 법정교육이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휴가로 현장이탈할 경우 업무대행자 지정 및 발주자등 서면승낙
 - (법정교육) 민방위 또는 예비군,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등
 - (업무대행자) 소방기술자 자격(등급 무관)이 있는 자
 - (승낙내용) 대행자, 이탈기간, 장소, 목적, 비상연락처, 부재중 공사내용 등
 - (승낙방법) 소방기술자 현장이탈 승낙서에 의한 서면 승낙
-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 소방기술자는 소방감리자에게 통보, 사유발생일부터 해당 공사현장 **사용승인일까지 증빙자료 보관**
 - (소방기술자) 현장이탈 서면승낙서 보관
 - (소방감리자) 감리일지에 기록 유지

질의 5

▲ 소방기술자 공사현장 배치기준 등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소방공사 착공 후 소방기술자 배치시기를 소방시설을 실제 시공하는 기간(시기)부터 현장상주 배치 하고, 공사 중 일시적 현장이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현장책임자 승낙 후, 1일 이상은 대체인력 배치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방시설 미 설치 기간에는 현장이탈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으며, 소방시설 전선관공사 설치 후 콘크리트 양생기간 동안에도 현장이탈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착공 후 본공사 전 배관을 시공하기 위한 관통슬리브 설치 및 인서트 설치 공사 기간도 소방시설공사 기간에 포함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와 그 기간 동안 소방기술자 배치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 회신 5

- 소방시설용 전선관 및 배관을 설치 또는 매립하기 전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전선관 등을 설치하는 기간에는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선관 설치 후 콘크리트 양생기간 동안 다른 소방시설 공사 등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자 등의 승낙 없이 현장 이탈이 가능합니다.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1조 제1항에 의거 착공신고는 해당 소방시설 공사를 착공하기 전(소방시설용 전선관을 포함한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 하거나 매립하는 시기를 말한다)에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슬리브 및 인서트도 전선관 및 배관 등 시공과 연계(내진 슬리브 및 인서트 제품) 된 경우 소방기술자 배치 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질의 6

■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공사 하도급시 소방기술자 배치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u>교</u>, 회신 6

- ◎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가 도급 및 하도급받아 시공하려는 소방시설공사에 대하여 각각 착공신고하고 소속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한 번만 제3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제12조제2항에서 "제4조제1호 (착공신고 대상)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설비 중 하나 이상의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는 소방시설공사업자는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착공신고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소속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질의 7

● 종합건설회사 ○○현장 소방기술자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관할소방서에 하도급업체에서 소방시설공사를 신고하고, 본인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시 상수도 소화용수설비공사 소방기술자로 신고하였습니다. ○○현장 소방기술자로 관할소방서에 신고되었으며, 업무특성 으로 기계담당자로 근무중에 있습니다.(소방기술자외 별도에 신고하지 않음) 이 경우 본인이 기계공사 업무와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공사 업무를 하여도 소방기술자 배치기준에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배치기준에 문제가 된다면,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기간외 배치의무는 없는지요?

🕰 회신 7

- 소방기술자는 소방시설을 실제 시공하는 기간(시기)부터 현장에 배치되어야 함에 따라,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시공 기간에는 실제로 현장에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 □ 귀하의 경우 공사 현장에서 상수도소화용수설비에 대한 책임시공기술자로 만 배치 되었으나, 시공 기간 동안에는 타업무 등의 겸직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방기술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별표2에 따라 소방공사 현장에 배치되어야 하고, 같은법 제27조에 따라 소방기술자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종합건설사가 타업종의 영업과 소방시설공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및「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제27조에 따라 각 업종 별로 기술인력을 각각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겸업하는 때의 기술능력의 겸임·겸직의 허용여부는 각각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 8

■ 발주자의 고의적인 서면 거부 시 발주자 서면 없이 소방기술자 본인이 해당 근무처의 서면을 받아 확인서를 제출하고 철수 할 수 있는지요? 다른 해결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발주자가 고의적으로 서면거부를 하고 있다는 내용과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사업시행 인가 폐지 안건 통과) 등 불가항력으로 소방공사가 중단 되었다는 구체적인 자료(내용증명 등)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소방기술자에 대한 배치 철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2020. 3. 11.부터 시행 된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별표2 제2호(소방 기술자의 배치기간) 나목에 의하면, "공사업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시공 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소방 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 1)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 2) 예산의 부족 등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 3)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로 발주자와 공사업자간의 신의 성실과 발주자의 의무(책임성)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위 규정에서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귀 사업장 처럼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발주자가 고의적으로 승낙을 회피하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5 착공신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관계법령

제13조(착공신고)

-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이 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그 공법이 특수한 시공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 ②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질의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착공신고)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의 착공신고 대상) 제1호 가목 내지 나목에 비상조명등이 착공신고 대상으로 구분되지 않아 소방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전기 공사업자가 시공하는경우 소방공사업법 제4조 (소방시설업의등록)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인지 여부.

🕒 🔊 회신 1

- 비상조명등만 시공시에는 착공신고 의무가 없으며, 비상조명등에 대한 시공은 「소방시설공사업법」과 「전기공사업법」에 적법하게 등록 된 업체에서 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비상조명등을 시공한 경우「소방시설공사업법」제3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비상조명등은 「소방시설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라목에 의한 소방시설에 해당되며,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별표1에 의하여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의 범위가 정하여져 있고, 또한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별표1에 의하여 전기공사의 종류가 규정되어 있어,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비상조명등의 착공신고 의무사항에 대하여 법령 개정 중에 있습니다.

질의 2

전통시장 내 무선 자동화재탐지설비 시설에 대하여 소방공사 착공 및 감리대상인지 궁금합니다

🔍 회신 2

- □ 무선 자동화재탐지설비란,「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 기준」제3조의2 및「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4조에 따라 화재신호 등을 전파에 의해 송·수신하는 방식의 감지기를 사용하는 것이며,
- 전통시장은 2018. 6. 2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제5호다목에 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됨에 따라,
 - 2018. 6. 27. 이후 신설 된 전통시장에 대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및 감리자 지정대상에 해당되며
 - 2018. 6. 27. 이전의 기존 전통시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할 경우,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의무는 있으나「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제14조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소방공사갂리자를 지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의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착공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소방공사를 소방관서에 착공신고를 한다면 이건 분리발주를 해야하는지?

🔍 회신 3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제4조에서 착공신고의 제외 규정은 타업종에 등록

되어 있는 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 전기공사업자 등)가 소방시설과 겸용되는 일부 소방시설(비상방송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등)을 공사하는 경우 착공신고만 제외해 주는 것일 뿐, 분리 도급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소방시설(비상조명등, 유도등, 피난기구 등)을 도급할 경우에만 분리 도급의 예외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조명등만 시공할 경우, 임의로 소방서에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소방시설공사의 분리 도급 의무는 없습니다.

질의 4

소방공사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 되었을 경우 착공변경신고 기한이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라고 되어 있는바 그 변경된 날을 건축허가서의 변경처리 승인일 부터 인지 아니면 소방공사의 변경계약이 이루어진 날부터인지 궁금합니다.

- ▲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도급 변경계약일로 기산하는게 합리적이라고 판단 됩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제2항에 의거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착공변경 신고의 주체는 공사업자로서, 공사업자가 중요한 사항을 변경 하였을 경우 착공변경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공사업자가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인지한 날(객관적 자료)인 도급 변경계약일로 보는게 타당합니다.

질의 5

■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 설치시 자진설비 부분에 해당되는 소방시설물을 소방서 준공 서류제출시 자진설비에 대해서 소방시설물을 준공도면제출 및 완공검사신청서 및 소방 공사 감리결과보고서에 시공한 소방시설 목록에 의무적으로 기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자진설비 부분에 해당되는 소방시설물 설치시 소방시공사가 반드시 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 5

- 자진설비도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제4조에 의하여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고, 소방시설 공사를 완공하면 완공검사신청서 및 감리결과보고서에 자진 설비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 소방시설(법적설비, 자진설비 등)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소방 시설공사업을 등록한 공사업자가 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6

완공검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완공검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관계법령

제12조(시공)

-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 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공사업자가 소방대상물 일부분의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 시설이 준공되기 전에 부분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분에 대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완공검사(이하 "부분완공검사"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 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그 일부분의 공사가 완공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완공검사나 제2항에 따른 부분완공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완공검사증명서나 부분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 및 부분완공검사의 신청과 검사증명서의 발급, 그 밖에 완공검사 및 부분완공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5조(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질의 1

- 1. 소방청의 내부 시행지침으로 현재(20년 10월 20일) 전국 소방서에서 완공검사신청서 제출시 사용승인신청서 사본등 관련서류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청 공문 개선방안 중 "관련법령 개정전까지는 관계인(발주자)의 선택에 따라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이라 표기 되어있는데 관련법령이 개정전인데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시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 사본 첨부가 필수인지.
 - 2. 또한 감리원 철수의 시점이 완공검사증명서(필증)가 발부되면 철수가 가능한지 아니면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감리기간이 연장되어 배치하여야 하는지

3. 종합하여 질문1항과 2항에 대한 답변중 향후 10월,11월 준공예정인 소방감리현장에 대하여 소방시설완공검사신청 및 소방감리원의 철수시점을 어떻게 판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회신 1

- 「소방시설공사업법」제20조에 따라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시,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의 사용승인 신청 접수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완공검사증명서 교부 이후 건축물 사용승인 기간 동안 발생되는 부실시공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향후 법령 개정 전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
- 감리원 배치기간을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연장하여, 소방시설 등에 대한 훼손 및 변경행위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관련법령 개정 전까지는 관계인(발주자)과 감리업자가 협의하여 선택(완공검사일, 사용승인일) 할 수 있습니다.
- 위의 답변과 같이 사용승인 신청 접수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감리원 배치기간은 관계인(발주자)과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 신축중인 양수장은 소방대상물인 건축물은 완공단계이나, 양수장 목적상 관로작업 및 토목공사등의 이유로 준공기한이 2023년까지로 건축 사용승인 신청시기와 소방시설공사 완료시기의 차이가 심해서 해당공사는 완료가 되었지만, 완공신청을 못할 상황에 있습니다. 발주처에서는 감리계약기간 연장은 안된다고 하면서, 당초의 계약완료일(2020년 12월)까지 완료계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관련법 개정전까지는 관계인(건축주)의 선택에 따라 시행될 수 있다고 한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예외

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 관련 2020. 8. 17. 소방시설 완공검사 제도 개선 지침이 시행되어,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사용승인 신청 접수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감리결과보고서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 본 지침의 시행목적은 건축공사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소방시설완공검사를 신청하게 되어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이후부터 건축물 사용승인 일까지 소방시설 훼손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 귀 건축물과 같이 신축중인 양수장의 토목공사가 미완료되고, 건축공사는 완공단계일 경우에는 건축공사가 완료단계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해당기관 공문 등)를 첨부하거나 또는 관할소방서에서 현장 확인하여 건축공사를 추가로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될 경우 해당 증빙자료 첨부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소방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7 감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제18조]

□ | 감리 및 감리원 배치기준, 감리자 지정 대상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18조]

관계법령

제16조(감리)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

질의 1

◇기 현장은 책임감리원(소방기술사) 1인, 보조감리원 2인(특급1인, 중급1인)이 근무하는 현장입니다. 질의 내용은 현장 근무 감리원들로 서로 업무 대행 가능 여부입니다. 배치기준에 의하면 보조감리원은 초급감리원 이상입니다. 실제 근무하는 보조감리원은 감리등급이 특급, 중급이고 1일 이상 현장 이탈 업무 대행 시 배치기준에 따라 초급감리원이업무 대행 가능한지 아니면 배치기준 관계없이 실제 근무하는 감리원 동급 이상 자격자로 배치 해야 되는지입니다.

🕒 🔊 회신 1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책임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의 업무대행자는 책임감리원과 동급 이상의 자격자 또는 동일현장의 보조감리원(보조감리원이 2인 이상일 경우 최상위 등급자를 말한다)으로 감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기술사는 특급 또는 고급 자격의 업무대행자를 감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보조감리원 중 특급감리원을 업무대행자로 지정하면 됩니다.

질의 2

△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제9조 관련)에서 상주공사감리의 감리원은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상주공사감리의 감리업자는 감리원이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감리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이경우 상기의 감리원은 보조감리원 포함인지요? 그리고 감리원이 1일 이상의 병가로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업무를 대행할 사람이 최대 몇일 까지 업무를 대행할 수있는지요?

🔍 회신 2

- ◎ 보조감리원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 배치 기간 동안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 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하에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배치하도록 하고,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책임감리원 부재 시에는 책임감리원과 동급 이상의 자격자 또는 동일 현장 내 상위등급 보조감리원이 업무대행자로 지정하고, 보조감리원 부재시 책임감리원이 부재자의 업무대행자로 지정하면 됩니다.
- 감리원 부재시 업무대행기간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소방시설 공사업법시행령」 별표3 상주공사감리 방법에서 교육을 받는 기간, 유급휴가 기간, 일반 공사감리 기간 중 제3호 14일 이내에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고하여 감리원 부재 기간을 정하면 되고, 그 일정기간(14일 이내)을 초과한 경우에는 감리업무를 수행할 감리원을 배치(감리원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 소방 감리원 배치 기준에 대한 질의입니다.
 연면적 65,000㎡이고 층수는 지하4층 지상41층인 주상복합 건축물로,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입니다.

2015년 11월에 건축허가를 접수 하였고, 2015년 12월 성능위주설계 심의를 받았으나 반려 처리 되었고, 2016년 2월 다시 성능위주설계심의를 받아 2016년 3월 성능위주 설계 심의 적합 통보를 받아 2016년 07월 건축허가를 득 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 기준은 2016년 1월 21일 개정 되어 2016년 1월 21일 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의 개정전 배치 기준에 따라 특급감리원중 소방기술사 1인만 배치 하면 되는지 아니면 개정 후 배치 기준에 따라 특급감리원중 소방기술사 1인 + 초급감리원 이상의 보조 감리원을 배치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 회신 3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부칙〈제26915호,2016.1.19.〉 제2조(공사감리자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영 시행(2016.1.21.시행일) 전에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0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 소방시설공사등은 설계, 시공, 감리, 방염을 통칭하는 용어로서, 상기 규정에 따라 2016. 1. 21. 시행 이전에 소방공사감리용역 또는 소방시설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 규정을 따라 감리자 지정 및 감리원 배치를 적용할 수 있음에 따라, 소방공사 감리용역 또는 소방시설 설계용역 도급계약일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4

- 1명의 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감리현장은 5개 이하(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 소화전 설비 중 어느 하나만 설치하는 2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이 최단 차량주행거리로 30킬로미 터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으로 본다)의 세부기준은?
 - 1) A건물 소방시설 종류
 - ⇒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유도등, 연결송수관설비(자진설치), 연결살수 설비
 - 2) B건물 소방시설 종류
 - ⇒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유도등, 연결송수관설비(자진설치), 연결살수 설비

🔍 회신 4

- A, B는 1개의 소방공사 감리현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제16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 설비 중 어느 하나만 설치하는 2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이 최단 차량주행거리로 30킬로미 터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1개의소방공사감리현장으로 본다"라는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A현장(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 + B현장(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
 - ② A현장(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 + B현장(옥내소화전설비만 설치)
 - ③ A현장(옥내소화전설비만 설치) + B현장(옥내소화전설비만 설치)
 - 따라서 귀하의 질의 대상은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제10조제2항에 의거, 비상방송설비, 연결살수설비가 감리자 지정 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위의 적용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질의 5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감리원의 세부 배치 기준 등) 제1항제2호 일반공사 감리대상인 경우
 - 나. 별표 3에 따른 기간 동안 감리원을 배치할 것
 - 다. 감리원은 주 1회 이상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되어 감리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경우 일반감리 배치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 회신 5

-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 제18조제1항에 의거 소속 감리원을 법시행령 제11조 별표4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에 맞게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고,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의 일반 공사감리인 경우에는 별표3에 따른 기간동안 배치가 되면서 주1회 이상 현장에 배치되어, 법시행령 제9조 별표3으로 정하는 감리의 방법대로 감리업무를 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2021. 1. 10.부터 1. 15.까지 스프링클러설비 가지배관을 설치

하는 경우, 감리원은 그 기간 동안(1. 10.~1. 15.) 현장에 배치되어 법제16조 제1항의 업무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스프링클러 배관 설치가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상주하라는 의미는 아니며, 그 현장의 상황에 따라적법하게 감리업무를하고, 감리일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질의 6

▲방감리원 휴일근무에 관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소방감리원 상주현장에서 소방 감리가 시공사에게 휴일에 소방작업을 할때에는 반드시 소방감리에게 휴일근무요청을 하라고 하였는데도, 시공사 임의로 토,일요일 등에 소방작업을 하였다면 시공사나 소방 감리원이 위반한 법조항이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시공사의 휴일 소방작업등으로 소 방감리원이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요

🖳 회신 6

- 토, 일요일 등 휴무일에 소방공사를 실시한 소방시설공사업체에 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규제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이루어 지는 동안에는 감리업자는 소속 감리원을 배치시켜 감리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공사가 이루어 지는 동안 감리원이 배치가 되지 않은 경우, 감리업자는 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 하게 됩니다.
- 부득이하게 휴일에 소방시설공사 시공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단 되므로 소방시설공사업자와 일정을 조율하여 상호간의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협의하여 업무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방공사가 이루어 지는 동안에는 소방공사 감리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 휴일에 소방시설공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도 상주현장에 맞게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이 배치되어야 하고
 - 다만, 배치 기간 동안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 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하에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배치하도록 하고, 「예방소방 업무처리규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책임감리원 부재 시에는 책임

감리원과 동급 이상의 자격자 또는 동일 현장 내 상위등급 보조감리원이 업무대행자로 지정하고, 보조감리원 부재시 책임감리원이 부재자의 업무대행자로 지정하면 됩니다.

질의 7

고방시설공사 감리자 변경신고 관련 질의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공사중인 감리대상인데 A라는 업체가 전문소방시설감리업→〉일반소방시설감리업으로 업종을 변경 하였을 경우(법인, 대표자 등은 동일함.)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여 감리자 변경신고 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감리자 변경신고 건에 해당된다면 감리원이 변경도 같이 수반되어 7일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하는지요?

🕒 회신 7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감리업의 업종 변경사항인 경우에는 감리자 변경신고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회사의 단순한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변경은 감리자 주체가 변경 되지 않는 것으로 감리자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거나, 합병 등으로 인한 법인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감리자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감리 업자는 관계인에게 통보를 하여 감리자가 변경되었음을 알려야 합니다.)
 - 그리고 감리자지정(변경) 신고의 주체는 관계인이고, 감리자지정(변경) 신고 시 관계인과 체결한 소방설계계약서 및 감리계약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에 따라, 감리자의 변경은 관계인의 인식에 의하여 발생되는 행위로서 감리 업자의 내부적인 사항(업종변경 등)까지 인지를 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의 8

☑ 건축주와 소방공사 업체간의 공사계약 지연으로 인해 소방공사 감리원을 공사 현장에

배치했는데도, 소방서에 배치통보를 사전에 하지 않은 것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이 적법한지 질의 드립니다.

- 1. 소방공사 감리계약 및 감리지정:2020년 3월
- 2. 소방공사 현장 시작 및 소방공사 감리원 현장 배치 : 2020년 9월 초순
 - 현장 건축 공정에 따라 지하1층 전선관 및 옥내소화전함 매설.
 - 사전 착공으로 불이익 발생됨을 건축주 및 소방시공사에 누차 통보하고 조기 계약을 지시.
- 3. 소방공사 공사계약:2020년 9월 중순
- 4. 관할소방서에 소방공사 착공신고서, 감리자지정신고서 및 감리원배치통보서 접수 : 2020년 10월
 - 담당 소방관에게 당 현장의 사전 착공사실을 설명.
- 5. 관할 소방서 감리업체에 과태료(60만원) 부과 공문 배송됨.(2020년 10월)

🕒 회신 8

-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시 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소방공사업법시행규칙」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소방공사감리업자는 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을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배치한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제25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감리원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으로 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요건 외에 고의·과실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함께 요구됨을 명시하고 있고, "과실"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인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참고로 소방관서에서 부과 된 과태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 9

소방감리업무중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범위에 대한 문의입니다. 방화구획 대상(연면적 1000제미터 이상) 건축물의 방화구획이 건축법적으로 적합한지 검토하는 것도 소방감리업무 범위에 속한지요?

🔍 회신 9

- 건축법령 관련 건축물에 대한 방화구획 적합여부 검토사항은 소방공사감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소방공사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및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이란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서식 4의34에 의한 방화문 및 방화셔터를 말합니다.

8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22조]

□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22조]

관계법령

제21조(공사의 도급)

-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 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 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관계법령

제22조(하도급의 제한)

①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질의 1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법안 적용 시점은?

🕒。 회신 1

○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규정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2항은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적용례에서는 "시행후 최초로 도급하는 소방시설공사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급방식은 발주(입찰)공고 시 결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 법 시행일 (2020년 9월 10일)부터 도급(계약)이 아닌 발주(입찰)공고하는 소방시설공사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분리발주 시 종합건설업체도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 회신 2

● 종합건설업체라 하여도「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라면 해당 공사 입찰공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에 적합할 경우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질의 3

■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 하는 경우 소방기계공사와 소방전기공사를 각각 분리발주 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 회신 3

○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과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방시설공사를 전기분야와 기계분야를 분할하여 도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 4

■ 소방공사를 도급 받은 원도급사는 이제 하도급 하지 못하는지?

🔍 회신 4

● 타공종(예: 건축공사, 전기공사 등)과 소방시설공사를 포함하여 도급 받는 경우 즉,「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11조의2 분리도급의 예외에 해당되어 발주 된 공사는「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시설공사가 분리발주 되어 도급 된 경우에 도급 받은 전문소방업체는 직접시공 하여야 하며, 하 도급을 할 수 없습니다.

☑ 건축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공동계약 유형 중'분담이행'방식에 따라 건축공사는 건설 업체가 소방시설공사는 전문소방업체가 분담하여 계약하는 경우 해당 사항도 분리발주로 인정이 되는지?

🔍 회신 5

○ 계약법령에 따른 공동계약 중 분담이행방식은 소방시설공사와 다른 업종의 공사를 함께 발주하고, 도급받을 공사의 업종을 다 갖추지 못할 경우에 업종을 보완하여 분담이행 협정을 맺어 입찰하는 방식입니다. 즉, 분담이행방식으로 도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분리도급 예외 사항이 아닌 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함께 발주 및 공동도급한 것이라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2항 위반에 해당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분리발주 된 공사에 대하여 공동계약 중 공동도급방식으로 둘 이상의 전문소방업체가 계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질의 6

■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제철소의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호"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에 따라 분리 도급 예외 현장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 회신 6

○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도급으로 인하여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기밀 유지가 불가하다는 타당한 자료와 사례등이 있다면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예외 현장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7

1. 건설업, 전문소방면허 등을 보유한 업체에서 1개의 현장을 일괄수주하여 계약서에 소방시설공사와 소방 외의 공사금액을 별도로 명기하여 도급받는 경우 분리도급에 해당되는지?

- 2. 건설업, 전문소방면허를 보유한 업체에서 1개의 현장의 소방시설공사와 소방 외의 공사를 각각 도급 받는 경우 분리도급에 해당되는지?
- 3. 질의 2의 경우와 같이 도급 받은 경우「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하도급이 가능한지?

🔍 회신 7

- ① 건설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보유한 건설사에서 1개의 현장을 일괄수주하여 계약서에 소방시설공사와 소방외의 공사금액을 별도로 명기 하여 도급받은 경우를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공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② 1개의 공사를 소방시설공사와 다른 공종의 공사를 분리하여 발주 공고 되고 건설업과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가진 건설사가 소방시설공사와 다른 공종의 공사를 각각 낙찰·도급받아 각각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소방시설공사업법」제21조제2항에 적합하게 도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 니다.
 - ③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12조는 다른공사와 함께 소방시설공사를 포함하여 일괄발주 받은 경우만 하도급이 가능하다는 사항으로, 소방시설 공사를 분리도급 받고 별도로 소방 외의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질의 8

1백만원 이하의 소방공사라 하더라도 반드시 분리도급을 해야하는지? 또한, 타 공종처럼 소액일 경우 면허없는 업체가 도급이 가능한지?

🕒 회신 8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11조의2 분리도급의 예외사항에 해당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방시설공사는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분리도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분리도급 예외 사항에 해당되는 소액의 소방시설공사라 하여도 「소방시설 공사업법」제4조 및 제21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소방 공사를 도급 및 시공할 수 없습니다.

질의 9

 소방분리발주 관련하여 2020년 1월 사업약정서를 체결한 경우 소방분리발주 예외에 해당되나요?

🕒 회신 9

- 「소방시설공사업법」 부칙 〈법률 제17378호, 2020. 6. 9.〉 제5조 관련 2020. 9. 10. 이전에 발주(입찰) 공고 된 소방시설공사는 분리도급 의무가 없으며, 도급계약서에 준하고 법률적인 구속력 등이 있는 사업약정서가 2020. 9. 10. 이전에 작성되었다면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분리도급을 적용받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약정서, 양해각서 등은 통상적으로 본계약 체결이전에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법률의 구속력 정도나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전주지방법원 2013. 7. 17 선고 2012구합4002 판결을 참조하면, 사업의향서의 약정에 기초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를 발생시키거나 의무를 부담시키고, 각 약정 내용의 미이행에 대비한 제제조항이나, 법률적인 부분으로 구속력 등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양해각서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으며,
 - 울산지방법원 2014. 1. 8. 선고 2013 가합 16011 판결에서도 양해각서 내용 여하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 질의 10

🕒 회신 10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를 분리 도급 받은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법 시행령 제11조의2(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령에 적법하게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제12조제1항에 의거 제1호부터 제4호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께 하는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와 해당 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에만 하도급이 가능하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도급하였기 때문에 하도급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며,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2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질의 11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 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 22조 (하도급의제한) 관련 질의입니다.

제21조1항에 및 2항에 따르면 소방시설 공사 등을 발주할 경우 발주처와 소방시설 업체와의 직접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이때에 소방시설 공사의 범위에 '소방시설설계'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포함되지 않는다면, 건축허가(협의)에 건축주(발주처)가 아닌 건축설계업체와 소방설계업체의 계약서가 제출되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 회신 11

○ 「소방시설공사업법」제21조제1항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한다."라고 되어 있고,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설계업자와 직접 도급하여야합니다. 따라서 건축설계업체와 소방설계업체의 도급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은 법 제21조제1항 위반에 해당됩니다.(소방시설설계업을 보유하지

않은 건축설계업체는 소방설계를 도급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발주자"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등"이라 한다)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질의 12

- 1. 건설회사(소방공사업 면허 없음)와 소방공사업체의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 가능여부?
 - 2. 건설회사(소방공사업 면허 있음)와 소방공사업체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 가능여부?

🕒 회신 12

○ 공동도급이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떤 일을 도급받아 공동 계산하에 계약을 이행하는 특수한 도급형태이며, 공동도급의 유형은 크게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2조의2 및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제3조]

-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 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 분담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 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 도급계약을 말한다. 다만,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 받은 경우에는 일반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된다
- o (답변 1) 소방시설공사를 도급받기 위하여는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에 따라, 소방공사업 면허가 없는 건설회사와 소방 공사업체의 분담 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
- o (답변 2)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급인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을 하기 위하여는 공동 수급사 전체가 소방시설공사업체이어야 하고, 구성원이 일체가 되어 시공하고 도급인에 대하여 시공책임도 연대하여 부담합 니다.(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 따라서 공동수급사가 소방시설시공에 직접 참여하여야 합니다.

질의 13

현재 설계진행 현황 입니다. 2020년 9월 ~ 12월 3개동 소방설계 인허가 완료가 되었고 (성능위주설계 등), 대규모 공장에 해당하여 설계~시공 기간이 약 2년 이상 소요됩니다. 설계 중에 설계 변경(일부 면적 또는 건축 일부 변경 등) 발생 예상(2년 이상, 설계/시공이 Fast Track 공사로 진행되어 설계변경 예상)됨에 따라 2021년 9월 이후 전문 소방설계업체에게 하도급이 가능한지요?

회신 13

-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제22조가 2020. 6. 9. 개정 되어,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한 2021. 6. 10. 부터 소방시설 설계에 대한 하도급이 금지됩니다. 그러나 2021. 6. 10. 이전에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발주자)으로부터 법 제21조제1항에 적합하게 도급받은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계에 대한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 부칙 (법률 제17378호, 2020. 6. 9.) 제6조(하도급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방시설의 설계, 감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질의 14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3 제4항에 의하면 소방시설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해당 소방 시설공사를 하도급할 때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 규칙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해당 하도급통지서에는 하도급계약서, 예정공정표, 하도급 내역서, 하수급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사본 각 1부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통지서에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이상 하수급인과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하도급통지를 할 수 밖에 없는데, '미리'의 시간적 범위는 언제인지요? 요컨대. 수급인은 하도급 통지를 언제까지 하면 되는지요?

- 1)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하도급 공사 착공 전
- 2)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건설산업기본법 등 준용)

🕒 회신 14

- 하도급 통지의 입법 취지에 맞게 발주자의 소방시설공사 도급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와 원사업자의 불법 하도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전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 따라서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첨부되는 서류(하도급 계약서)가 하도급의 통지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리"의 국어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또는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 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를 참조하면,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제27조(소방기술자의 의무)

- ① 소방기술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 전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소방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을 말한다]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③ 소방기술자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질의 1

- 지는 현재 A업체의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으며, A업체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XXX 82 -XXXXX) 법인으로 보는 단체 (비영리 법인) 공동주택(오피스텔) 자치위원회의 무보수 봉사직의 대표자(자치위원회 회장)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b업체의 자치위원회의 회장(대표자)는 공동주택(오피스텔)자치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한달에 한번 출석하여 관리사무소 집행 업무를 의결하고 감사하는 무보수 봉사직으로 4대보험 또한 가입되어 있는 않은 사업자의 대표자입니다.
 - 1. A업체 소속 직원이면서 b업체(법인으로 보는 단체 : 무보수 봉사직)의 대표자일 경우 이중취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 회신 1

○ 귀하의 질의대로 공동주택의 비영리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자치 위원회 회장)로서 무보수 봉사직인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제27조제3

항의 이중취업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법 단서조항과 같이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취업"이란 일정한 직업을 잡아 직장에 나감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 정의에 따라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하며,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질의 2

소방기술자로 근무하며 개인사업자 대표(직원 없음)로 주말 또는 일과시간 외에 소방시설과 무관한 기계장비의 설계 및 외주 제작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소방기술자의 의무) 제3항"의 소방기술자 이중 취업에 해당 되는지 여부의 질의 입니다

🔍 회신 2

- 전문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소방기술자로 근무하면서, 별도의 개인사업자 (대표자)를 운영하는 것은 「소방시설공사업법」제27조제3항에 따라 이중 취업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같은법 제27조제3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취업을 한 소방기술자를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 즉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함에 따라 통상적인 근로시간(「근로기준법」제50조에 따른 1일의 8시간, 09:00~18:00) 이외에 개인사업자 업무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질의 3

■ 특급소방감리자로 상주감리현장에서 근무중입니다. 현장에서 가까운 전문대학 소방학과에 주중 주간 2시간정도 시간강사를 하려 합니다. 상주감리현장에 상주하면서 대학 시간 강사를 겸직하여도 관련법령에 위반 되지 않은지요?

🕒 회신 3

- 상주감리원이 주중 주간 2시간 정도 전문대학의 시간 강사로 출강하는 것은 「소방시설공사업법」제27조제3항에 위배됩니다.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시사항에 의하면 전문대학의 시간강사는 근로자에 해당되며,
 - 소방기술자는 법 제27조제3항에 의거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는 있으나, 위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화재안전기준

1. 화재안전기준(기계)

□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할 소화기구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관계법령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별표4

해당용도의 바닥면적 25㎡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하고, 그 외에 자동확산소화기를 바닥면적 10㎡ 이하는 1개, 10㎡ 과는 2개를 설치할 것.

질의 1

- NFSC 101 별표4.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할 소화기구에서 주방에 설치하는 소화기를 '해당용도의 바닥면적 25㎡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닥면적 25㎡마다 소화기가 1개씩 있어야 하고 그 소화기의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되어야 하는지, 바닥면적 25㎡마다 능력단위를 산정하여 능력단위를 만족하는 소화기가 있으면 되는지요?
 - 예) 주방의 바닥면적이 100m² 일 때,
 - 해석1) 100㎡ ÷ 25㎡ = 4, 소화기 4개를 설치하고 그 소화기가 모두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3.3Kg 소화기를 기준으로 4개 필요하다.
 - 해석2) 100㎡ ÷ 25㎡ = 4, 능력단위 4단위를 만족하도록 설치하기 때문에 3.3Kg 분말소화기 2개면 충분하다.

🕒 🔊 회신 1

■ 별표4.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표제목은 '용도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용도의 바닥면적 25㎡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이 기준이 되고, 소화기구(소화기, 간이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기)중 소화기를 설치하라는 의미로 판단됩니다. 만약. 주방의 바닥면적이 100㎡ 라면, 100㎡/25㎡ = 4 이므로 능력단위 4

단위의 소화기가 비치되어야 합니다. 3단위의 소화기를 설치한다면 2개의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조 흡입배관 위치에 관한 질의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4조]

관계법령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제4조(수원)

제6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옥내소 화전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질의 1

☑ 공동주택 지하 저수조를 소화용수와 생활용수가 겸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적정한 소방 시설의 수원 확보를 위한 소화용수 흡입배관과 생활용수 흡입배관 의 위치는

🕒 회신 1

● 소방시설의 흡수구와 다른 설비의 흡수구 사이의 기준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소방시설의 흡수구 상단과 다른 설비의 흡수구 하단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다른 설비의 경우 정압으로 하단까지 급수가 이루어지고 소방시설의 흡수구 상단이하에서는 공기가 흡입되어 공동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 설치기준에 관한 질의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7조]

관계법령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제7조(함 및 방수구 등)제2항 옥내소화전 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 에만 설치할 수 있다.

【피트공간 등 소방시설 설치 기준 적용 변경 지침】

- □ 적용제외(헤드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0.5m×1m이하 크기의 방화문(1개소에 한함)을 설치하여 4곳 이상 볼트 조임하는 경우

질의 1

□ 피트층의 점검구가 1㎡ 이하의 크기로서 두께 1.5mm이상의 철판으로 4곳 볼트 조임하는 경우에 피트층의 각 부분은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를 초과하여도 되는지요. 또한 피트층에 점검구(1㎡ 이하의 크기로서 두께 1.5mm이상의 철판으로 4곳 볼트조임한 것)나 출입문이 없는 경우에 피트층의 각 부분은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를 초과하여도 되는지요

🕒 🔊 회신 1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제7조제2항제1호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 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을 의미합니다. 질의하신 피트층에 소방시설의 설치의무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 옥내소화전 수평거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 설치기준에 관한 질의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7조]

관계법령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제7조(함 및 방수구 등)제3항 표시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록내소화전 펌프 기동 시 기동 확인램프가 점등되어야 하는데 예비펌프가 기동 시에도 기동램프가 점등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회신 1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옥내 소화전함에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예비펌프는 옥상수조를 대체하여 설치되는 장치이므로 예비펌프가 가동됨에 따라 기동표시등이 점등되도록 구성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기동표시등을 점등하여야 한다고 보기 힘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규 대상인 경우 주펌프 및 예비펌프에 적용하도록 지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상발전기실 내 배수펌프 설치 여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8조]

관계법령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8조(전원)】

제3항제4호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질의 1

- 발전기실내에 결로 및 침수 대비용으로 기존에는 발전기실 트렌치를 전기실 트렌치와 연결 하였으나 방화구획에 문제가 있어 발전기실 전용 집수정과 배수펌프 및 제어반을 설치 하였습니다. 발전기실내에 결로 및 침수 대비용으로 집수정을 설치하여 발전기의 원할한 전력공급이 가능하게 하므로 "~ 비상전원 공급에 필요한 기구~"로 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질문) 1. 발전기실내에 발전기실 전용 집수정과 배수펌프 및 제어반 설치가 가능한가요?
 - 2. 1번이 불가할 경우 전기실 트렌치에 연결해도 되나요?

🕒。 회신 1

●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을 하고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을 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비상전원실외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되고 비상발전기의 침수나 결로 대비를 위한 비상 전원실 전용의 집수정과 배수펌프라면 "비상전원 공급에 필요한 기구"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옥내소화전 감시제어반 기능에 관한 질의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9조]

관계법령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제9조제2항 감시제어반의 기능

질의 1

제9조제1항에 단서조항에 해당되어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을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하는 대상에도 감시제어반에서 각 펌프를 중단시켜야 하는지

교 회신 1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감시제어반의 기능을 규정하고있습니다. 이는 비상전원의 설치여부와 관계 없이 옥내소화전설비의 감시제어반이라면 갖추어야하는 기능에 해당됩니다.

관계법령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제9조제3항제3호 감시제어반 전용실

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불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같시제어반을 전용실에 설치하는 경우 기계실, 전기실이 아니고 숙직실이나 관리사무실에서 전용실을 감시하기 위하여 감시창을 설치할 수가 있는지

🕒 회신 1

○ 감시창은 감시제어반실에서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한 것입니다. 전용실에 설치되어있는 감시제어반이 화재로 소실되는 경우 소방시설 전체가 작동불량 으로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방화구획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숙직실 등과는 방화구획이 되어야 합니다. 감시창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 령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인정이 가능한 구조인 경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스프링클러설비의 교차회로 감지기 설치시 회로별 감지면적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9조]

관계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9조(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제3항제4호 화재감지기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203)」제7조 및 제11조를 준용할 것. 이 경우 교차회로방식에 있어서의 화재감지기의 설치는 각 화재감지기 회로별로 설치하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3항제5호·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한다.

질의 1

화재감지기 교차회로 감지기 수량에 대한 질의입니다. 연기감지기 A, 열감지기 B로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가로 26M ,세로 15M, 높이 4M 미만입니다. 총 면적은 390㎡, 연기감지기A 150㎡ x3개 = 450㎡, 열감지기 B 70㎡ x 6개 =420㎡ 연기감지기 3개, 열감지기 6개 를 설치를 할려고 하는데 교차 배열이 안맞습니다.

🕒。 회신 1

○ 「스프링클러의 화재안전기준(NFSC103)」제9조제3항제4호에 의거 화재 감지기의 설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203)」제7조 및 제11조를 준용토록 되어 있고, 화재감지기의 설치는 각 화재감지기 회로별로 설치하되, 각 화재 감지기회로별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3항제5호·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두 회로의 감지기수의 합이 짝수로 끝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에 따른 기준개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4조]

관계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4조제1항제1호 표

질의 1

☑ 공동주택에 근린생활시설이 부대시설로 설치되는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시 기준개수를 공동주택 10개로 적용해도 되는지요

○ 「주택법」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택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은 공동주택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공동주택의 근린생활 시설이 부대시설이라면 공동주택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 개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용도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헤드를 설치하는 장소의 당해 용도에 따라 적용되므로 근린생활시설의 기준개수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 지상4층 연면적 900㎡ 건축물에 노유자시설이 3개층 600㎡. 나머지 1개층이 근린생활 시설인 경우 스프링클러헤드 기준개수는

🖳 회신 2

■ 질의 건축물이「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5 제1호라목의 4)에 따라 노유자 시설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m²이상으로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스프링클러설비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의미이지 반드시 기준개수를 노유자시설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4조제1항제1호 표에 따라 헤드 기준개수 적용시 헤드를 설치하는 당해용도에 따라 기준개수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유자시설 10개, 근린생활시설에는 기준개수 20개로 하나의 거축이 경우 기준개수가 큰 20개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수검지장치의 설치 위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6조

관계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6조(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

- 역·유수검지장치)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유수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질의 1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으로 기존 1층에 유수검지장치의 설치가 곤란하여 2층 보일러실에 2개(1층용, 2층용)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 예정 화재안전기준 위반여부

🕒。 회신 1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103)」제6조제2호에는 '하나의 방호 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층을 달리하는 2개의 방호구역의 유수검지장치를 2층의 보일러실에 일괄적으로 설치하여 관리하는 것에 대하여 화재안전기준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반드시 유수검지장치를 반드시 방호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긴급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층의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층을 달리하여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유수검지장치의 설치 위치에 대하여는 대상물의 위치 및 구조 등 현장상황을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6조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스 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와 복층형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

질의 1

하나의 알람밸브에 설치된 헤드의 총 개수가 30개 이내라면 층당 헤드수가 10개를 초과하더라도 가능한지 여부(1층 12개, 2층 12개, 3층 5개)

🕒 , 회신 1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103)」제6조제3호에 따라 1개 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복흥형구조의 공동 주택이 아니라면 유수검지장치의 방호구역을 3개층으로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사용 여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8조

관계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8조 제2항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 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 치하는 경우

질의 1

▼ 콘크리트 천장에 불연재가 아닌 가연성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1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8조제2항제3호에는 "천장 (상층이 있는 경우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단열재는 상층바닥의 하단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천장의 재질이 콘크리트구조의 스라브라면 불연재료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반자가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이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의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질의 2

물연재 반자를 설치시 반자 고정을 위한 목재 지지대를 포함하여 반자의 재질을 보아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을 사용할 수 없는지 여부

🔍 회신 2

● 반자를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를 시공하기 위한 목재 지지대 등은 가연재로 보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소방용 합성수지배관 설치에 따른 반자의 재질의 경우에 한함)

🕒 회신 3

● 화장실의 천장 마감재(반자로 추측)가 합성수지(PVC)라면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로 보기 어려워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의 적용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4

■ 소방용 합성수지배관(CPVC)을 유수검지장치실 또는 피트 내부에 사용이 가능한 지 여부

🕒 회신 4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수검지장치실이 내화구조에 적합하다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

관계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배관)]

제3항 급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 배관의 구경은 제5조제1항제10호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수리계산에 따르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 스프링클러설비의 급수배관 구경을 산정할 때 수원에서 알람밸브까지의 급수관 구경을 건축물 전체의 헤드 수를 합산하여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제3항제3호 및 별표1을 따르는지 아니면 건축물에서 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 된 층(방호구역)의 헤드 개수를 기준으로 급수관 구경을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 회신 1

● "single risk" 원칙에 따라 수원에서 알람밸브에 이르는 주배관의 경우 건축물에서 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헤드 개수를 기준으로 급수관의 구경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배관)]

제9항 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기존의 방호구역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헤드를 증설하는 경우

질의 1

● 스프링클러 가지배관의 헤드 개수는 8개 이하로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반자가 있는 경우는 상하향식으로 16개까지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트의 살수장애로 2개의 헤드를 추가로 설치한다면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반자 없이 노출로 설치됨)

🖭 회신 1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8조제9항제2호에는 "교차 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 (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서조항에서는 기존의 방호구역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헤드를 증설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개의 증설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기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0조]

관계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0조(헤드)]

제1항 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이 9m 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질의 1

▼ 창고용 보 부분이 있는데 보 너비가 800mm입니다. 그런데 보온으로 보와 천장부분을 단열을 실시하는데 단열부분이 250mm 정도 들어가게 되어서 기존 보너비가 양쪽합해서 1300mm 정도 되어 1200mm 기준초과됩니다 그러면 보 아래에 헤드를 추가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단순 보의 너비로만 판단해서 헤드를 추가 안해도 되는지요

🔍 회신 1

◎ 일반적으로 보의 넓이를 측정시 단열재 부분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헤드의 살수장애 부분에 대하여는 실제 장애가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추가로 헤드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철거가 가능 하더라도 장애물을 설치하는 경우 추가로 헤드를 설치하거나 헤드를 이전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계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0조(헤드)] 제3항 수평거리

질의 1

☑ 오피스텔의 거실 및 안방에 붙박이장(바닥부터 천정까지 제작됨)이 설치되어 있을경우 헤드살수 반경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요?

🖳 회신 1

● 일반적으로 가구는 방호대상물로 보아 가구가 설치되어 있는 벽체(조적 및 골조면)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0조제3항에 따른 수평거리를 충족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0조(헤드)]

제5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 1. 공동주택 · 노유자시설의 거실
- 2.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

질의 1

오피스텔의 복도에도 조기반응형 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회신 1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0조제5항제2호에 따라 오피스텔의 침실은 조기반응형헤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 외의 장소인 오피스텔의 복도는 조기반응형헤드를 설치할 의무는 없습니다.

관계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0조(헤드)] 제7항 헤드 설치기준

■ 헤드로부터 반경60cm에는 살수장애물이 없고, 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는 30cm이하인 경우 헤드 하단부에 설치된 케이블 트레이의 폭은 1.1m이므로 케이블 트레이 하단에는 헤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회신 1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10조제1항과 제7항제1호에 따라, 스프링클러헤드와 덕트와의 이격거리가 60cm 이상이고 덕트의 폭이 1.2m 이하인 경우 살수장애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헤드를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2

에드로부터 반경60cm에는 살수장애물이 없고, 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는 30cm이하인 경우 헤드 하단부에 설치된 케이블 트레이의 폭은 1.1m이므로 케이블 트레이 하단에는 헤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회신 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10조제1항과 제7항제1호에 따라, 스프링클러헤드와 덕트와의 이격거리가 60cm 이상이고 덕트의 폭이 1.2m 이하인 경우 살수장애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헤드를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3

대형 신축상가를 보면 하향식을 대비해(반자에 고정하도록) 자바라 타입(신축배관)의 스프링 클러를 설치한 경우가 많은데요, 반자 없이 노출 천장으로 할 경우, 상향식으로 교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헤드를 호스밴드 등의 단단한 고정물로 하향식으로 고정 시켜도 문제가 없을지 질의합니다.(살수 반경 준수)

🕒 회신 3

● 스프링클러헤드를 보온된 배관에 밴드 등으로 고정할 경우 고정 여부가 불 분명합니다. 헤드가 고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적정한 살수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살수반경도 변경될 것입니다. 브라켓 등 확실히 고정될 수 있는 부재의 사용을 권고드립니다. 붙임의 경우 고정여부는 현장상황을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관할소방서의 확인을 받아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4

■ 발코니 면적(1.5m×0.9m), 전열교환기끝과 헤드와의 거리 25cm, 높이 차 15cm, 공동 주택(아파트)의 건설현장입니다. 현재 실외기실이 실내 발코니에 설치되고 상부에는 전열 교환기가 설치되는데 SP헤드의 측벽형으로 설치할경우 전열교환기로 인한 살수 장애가 발생할듯합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전열교환기를 살수장애로 봐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회신 4

● 살수장애는 스프링클러헤드에서 방사되는 물이 살수패턴 형성이 되지 않게 가까운 위치에 장애물이 있거나 헤드 주위에 장애물이 있어 장애물 너머로 살수가 되지 아니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질의 대상 아파트 발코니실 등 소규모 실의 경우 해당 공간의 여건상 60cm 반경(제10조제7항제1호)을 확 보하지 못하거나 장애물의 폭의 3배(제10조제7항제3호)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공간규모 등을 감안하여 살수장애의 영향이 가급적 적은 위치에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발코니실 등은 현장 여건상 소규모실로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살수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헤드의 살수(살수 패턴 테스트)로 전체구역(발코니실)에 살수가 가능한 경우 살수장 애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관계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0조(헤드)] 제8항 보와 가까운 스프링클러헤드설치기준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준 적용 지침 수정알림(2019.10.22.)]

🕙 질의 1

○ 업무처리 지침에서 단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천장 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에 관계 없이 보의 중심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 면과의 거리를 30cm 이하'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 거리'의 의미는?

🕒 회신 1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적용 지침 수정알림(2019.10.22.)」에서 "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의 거리"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수평거리를 만족 하도록 장방형 또는 정방형, 기타 헤드 배치 설계 형태에 따른 헤드간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 소화펌프의 비상전원 부하산정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2조]

관계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2조(전원)] 제2항 비상전원

질의 1

▲ 소방시설 중 소화설비에는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있으며 설계도면에서는 옥상수조 대체용으로 예비펌프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예비펌프도 소화설비의 하나이고 소방시설에 포함하여 "소방부하" 로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자가발전 설비 설치 시 옥상수조 대체용 예비펌프를 소방부하에 포함하여 정격출력용량을 산정 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 회신 1

▲ 소방시설의 비상전원 설치시 주펌프와 예비펌프의 부하를 더하여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주펌프와 예비펌프가 동시에 동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비펌프의 부하가 크다면 예비펌프의 부하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제외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관계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제1항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질의 1

● 주차장내 단차가 있어 1.5m 경사로가 생기는데 이 경사로 부분에 시공상 헤드설치가 어려우며, 해설서에도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도 효율성이 적은 장소"로 경사로가 포함되어 있고, 화재안전기준 상에도 헤드의 설치제외 장소에 경사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헤드 설치제외가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 회신 1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사로인 경우 주차장 경사로도 이에 해당하여 헤드제외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차장 내부의 같은 층에서 단차에 의한 경사로의 경우 통로개념으로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현장 상황을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 가로 1.5미터 세로 2미터의 세척실에 걸레를 세척할 수 있도록 물을 받는 가로 0.5미터 세로 0.5미터 높이 0.5미터의 물통과 수도시설이 설치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 제외가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 회신 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5조제1항에 따라 헤드 설치

제외 대상에 세척실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화재발생요인이 없고 소화약제인 물을 취급하는 장소로 화장실, 이와 유사한 장소로 보아 관할소방서와 헤드 설치제외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3

체육시설(1층 수영장, 2층 다목적체육관) 계획시 스프링클러 설비 적용 대상일 경우, 위 제15조1항1호에 따라 수영장은 스프링클러 헤드 제외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수영장에 천정마감이 있을 경우 헤드 적용 여부

🕒 회신 3

●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제외장소인 수영장 상부의 천장과 반자사이의 공간에 헤드는 설치제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수영장 부분과 다른 부분을 구획하도록 안내(권장)하고 있습니다.

질의 4

실외기실에 무전원자동루버를 설치하여, 저온에서 닫혀 있다가 실외기가 작동(약30도 정도)되면 자동으로 개방되며, 별도의 전원이나 기계장치 없이 형상기억합금 장치로 작동되고, 수동핸들이 있어서 수동으로도 개방이 가능하나, 강제로 폐쇄가 되지 않는 구조로설계, 제작 되었다면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103)제 15조 제1항 1호에 따라 직접외기에 개방 되어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볼 수 있어 스프링클러 헤드를설치제외 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회신 4

의반적으로 개폐가 가능한 자동루버의 경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3)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동루버가 저온에서는 닫혀 있다가 실외기가 작동(약 30℃정도)하면 자동개방되며, 별도의 전원이나 기계장치 없이 형상기억합금 장치로 작동된다면 제15조제1항제1호의 직접

외기에 개방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자동루버의 사양서를 확인하니 부가장치 중 수동 개폐장치가 있어 이를 제거하거나 설치하지 않는 다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설치시 상기 사항에 부합되는지 관할 소방서의 확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5

MRI실 및 CT실에 대한 질의입니다. 병원 소급적용 대상의 MRI실 등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가스계 소화설비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 5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자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는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의 명칭이 전자기기실이나 전자기기가 일부 있다고 하여 전자기기실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전자기기실의 경우 물소화약제의 적응성이 없는 설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수손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설치된 MRI실의 경우 소화설비의 배관 등을 설치하는 경우 기기 및 설치자의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차폐시설이 훼손되어 기기의 정확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헤드의 설치 제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CT실의 경우 헤드의 설치가 제외되었다면 자동소화장치 또는 가스계소화설비의 설치를 권장합니다.

질의 6

 천장슬라브에 단열재가 붙어 있고, 석고보드 or 텍스마감으로 잡혀있어서 1m 초과시 상하향식헤드를 설치할려고합니다. 건물천장이 경사지게 설치되어 있고, 반자의 마감 높이도 달라서 어떤 부분은 1m를 초과하고, 어떤부분은 1m미만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초과부분에만 상하향식헤드를 설치하면 되는지 여부?

🕒 회신 6

● 헤드의 설치 높이와 제외 높이가 혼재된 경우「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 기준(NFSC 103)」제15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헤드를 제외할 수 있어 해당 부분은 문구 상 제외가 가능할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하나의 스프링클러설비 방호공간은 전체적으로 헤드가 설치될 때 적정한 방호가 가능하므로 전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설치 높이와 제외 높이 사이에 구획이 되었다면 설치 높이 부분에만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7

- 전장슬라브에 단열재(250mm)가 붙어 있고, 반자는 석고보드(9.5t×2), 천장과 반자의 거리는 1.2m인 경우
 - 가. 상기 현장의 경우 천장의 재질은 단열재 상단인 콘크리트인지 단열재인지?
 - 나. 천장과 반자의 거리는 콘크리트면과의 거리인지 단열재와의 거리인지?
 - 다. 석고보드(9.5t×2)를 불연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7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5조제1항제5호에는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에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가. 천장이란 상층이 있는 경우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합니다. 단열재는 그 하단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천장의 재질이 콘크리트라면 단열재가 부착되었다 하더라도 불연재로 취급됩니다.
 - 나. 천장면 즉, 콘크리트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거리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 다. 소방법령에는 불연재의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담당기 관인 국토교통부 또는 시·군·구 건축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제2항 제10조제7항제6호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드 렌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개구부에 한하여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질의 1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방화지구안의 지붕 방화문 및 외벽 등)제2항에 따라 방화지구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 등에 설치하는 드렌처설비의 경우 소방시설의 수원, 가압송수장치, 배관 등을 겸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1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스프링클러설비의 펌프는 전용으로 하여야 하나,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화지구에 설치하는 드렌처설비는 소방시설이 아니나 전문가 회의를 통해 검토한 결과 수원, 배관 및 펌프를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간이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관계법령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제8조(배관 및 밸브)

질의 1

■ 간이스프링클러 캐피넷형을 설치할 경우 하나의 가지배관 25mm로 3개의 헤드설치 가능

한지요? 또한, 고시원 4층 건물인데 층별 팩케이지 있고 송수구 설치해야하나요?

🔍 회신 1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별표1] (주) 4 에 따라 가지배관은 25m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하나의 가지배관에는 간이헤드를 3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가지배관 25mm 이상"은 표의 간이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과 관계없이 "캐비닛형" 및 "상수도 직결형" 가지배관의 최소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가지배관에는 간이헤드를 3개 이내로 설치"는 결국 가지배관 최소 구경 25mm에서 간이헤드 3개를 허용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기 답변의 근거로 스프링클러설비의 규약배관방식에서 25mm의 경우 80 l pm 2개는 160 l pm이고 간이헤드의 경우 50 l pm 3개는 150 l pm이라는 것을 기술적 배경으로 완화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또한, 상기 기준 제11조 본문 단서조항에 따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영업장 (건축물 전체가 하나의 영업장일 경우는 제외)에 설치되는 상수도직결형 또는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송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고시원이 다중이용업소이고 건축물의 전체가 영업장이라면 송수구를 설치하여야 하나, 일부 층이 영업장이라면 송수구의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2

○ 간이스프링클러(펌프방식)의 알람밸브에 사이트글라스를 부착한 형태의 유수검지장치를 형식승인 받은 제품이 있다면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시험밸브로 사이트글라스는 유수 검지장치와 결합된 것만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회신 2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제8조제16항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시험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끝에 개방형간이 헤드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때 간이스프링클러의 알람밸브에 사이트글라스가 설치된 형식승인 제품으로 그 사이트글라스가 간이스프링클러 시험장치의 기능과 동일한 성능을 가지는 경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이트글라스는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 제품이 아니며, 유수검지장치와 일체형으로만 사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시험장치의 끝에 개방형간이헤드를 대체하여 개방형간이헤드와 동일한 오리피스 구경을 가진 사이트글라스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분무소화설비의 물분무해드 성능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 제10조]

관계법령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0조(물분무헤드)】

질의 1

물분무헤드가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에 해당되나 물분무 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 (NFSC 104)에는 물분무헤드의 성능인증에 대한 강제 기준이 없습니다. 물분무 헤드현장 시공시 성능인증 제품을 강제 사용하여야 하는지 성능인증 제품이 아닌 물분무헤드를 사용하여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회신 1

○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제10조제1항에 따라 물분무 헤드는 표준방사량으로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하는데 필요한 수를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분무 헤드의 사용은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의무로 성능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제조사별로 헤드의 유효 사정거리, 분사각도, 살수유효반경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성능에 적합하게 배치하면 됩니다. 다만, 물분무소화설비의 소화 성능 확보를 위하여 공인된 성능인증제품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황성기체 화재안전기준 기동용기 기준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관계법령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제8조

질의 1

□ 「NFSC 107A」 제8조 기동용가스용기에서는 「NFSC106」, 「NFSC 107」, 「NFSC 108」에서와 같이 기동용기의 용적에 대한 구체적 기술이 없습니다. 이 경우 「NFSC 107A」의 기동용가스용기의 용적은 어떤 기준을 따르는지

그 회신 1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의 기동용가스용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산화 탄소의 경우 누설시 쉽게 알수 있는 방법이 없어 질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NFSC 107A」의 기동용가스용기의 용적은 5L이상으로 질소를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지하층 피난용트랩 설치 기준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관계법령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별표1】

질의 1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별표1에서 지하층의 경우 피난용트랩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피난용트랩을 구할 수 없어서 질의합니다. 피난용트랩을 대신한 다른 피난 기구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 회신 1

● 현재 지하층에 적응성이 있는 피난용트랩에 대한 형식승인등 제품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피난사다리로 대체하여 설치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설치기준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제4조]

관계법령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제4조제3항】

제10호아목.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 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u>질의 1</u>

- 1.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어야 하는데 세대 내 설치된 월패드로 인정해주는지?
 - 2. 또한 감시 제어반에서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 해야하는데 반드시 수신기와 연동되어 작동을 확인해야 하는지?
 - 3. 만약 월패드에 연결된다면 월패드 네트워크서버실 및 관리실에서 작동이 가능할 경우, 별도의 감시 제어반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 4. 감시 제어반과 표시등 및 경보장치 전부 설치해야 하는지?

🔼 회신 1

집 답변1) 세대내 별도의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월패드에 표시등 및 경보장치

기능이 있어 재실자에게 인지하게 할 수 있다면 월패드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답변2) 방재실 등에서 피난기구의 작동을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제어반이 있는 경우 반드시 소방수신기에 연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 답변4) 화재안전기준에서는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 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두 설치 되어야 합니다.

■ 피난기구 설치개수 질의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제4조]

관계법령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제4조】

③ 질의 1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를 보면 피난기구의 설치개수가 나와있는데 노유자시설은 그 층의 바닥면적 500㎡ 마다 1개씩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닥면적이 700㎡인 노유자시설이 있다면, 500㎡ 마다 1개씩이므로 피난 기구의 설치개수는 한 개인지?

아니면 500㎡을 초과하였기에 나머지 200㎡를 절상하여 2개 설치인지?

🔍 회신 1

○ 노유자시설로 사용되는 층은 그 층의 바닥면적 500㎡ 마다 1개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유자시설로 사용되는 층의 바닥면적이 700㎡ 인 경우 700㎡ ÷ 500㎡ = 1.4 이므로 2개의 피난기구가 설치되어야합니다.

제연설비 설치시 면적 산정 기준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제13조]

관계법령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제13조】

질의 1

- ▲ 소방시설법 [별표5]에 따라 주용도가 숙박시설로서 지하층에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층은 제연설비 설치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해당 용도'에 범위(범주)에 대한 궁금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3조(설치제외)에는 제연설비의 설치제외 장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들어 기계실, 전기실, 공조실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출구 및 공기유입구설치 등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 Q1. 만약 숙박시설 지하층의 바닥면적은 1천㎡ 이상 이상이나 위에 해당 하는 장소를 제외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하가 되는 경우 제연설비 설치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Q2.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산정시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고, 배출구 및 공기 유입구 등만 설치 제외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1

- 「2번이 맞습니다. 소방시설법상 설치 면적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정한 면적을 준용하므로, 건축법에서 바닥면적이 1천㎡ 이상으로 산정되었다면 제연설비설치 대상면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제연설비는 설치되어야 하며 다만, 「NFSC 501」 제13조(설치제외)에 해당되는 부분은 배출구·공기유입구의설치 및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 하나의 피트 내 급기 및 배기 수직풍도를 인접하여 설치가능 여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14조]

관계법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제14조】

질의 1

■ 내화구조의 하나의 피트내에 급기풍도(아연도금강판으로 마감)와 배기풍도(아연도금강판으로 마감)를 같이 설치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급기풍도와 배기풍도사이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하는지요?

🕒 🔊 회신 1

○ 「NFSC 501A」제14조(수직풍도에 따른 배출)제1호"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하되~", 제18호(급기풍도)제1호 "수직풍도는 제14조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급기풍도 및 댐퍼는 화재시 직접적으로 열에 노출되지 않으나, 배출풍도는 화재시 화재층의 뜨거운 열기류를 배출 하기 때문에 만약 급기풍도와 배기풍도를 하나의 내화구조내에 설치할 경우 배출풍도의 고온에 의하여 급기풍도가 파손되어 오염된 연기가 풍도로 유입된 후 제연구역으로 확산되어 거주자들의 피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수 있어 배출풍도와 급기풍도사이는 내화구조로 분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방공사 표준시방서 3.7. 제연덕트의 수직풍도 다목에서는 "배출풍도는 원칙적으로 제연구역 내에 설치하고 급기풍도와 인접하여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기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급기풍도와 배기풍도 사이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상용승강장 단독제연시 계단실 창문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21조]

관계법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제21조】

질의 1

■ 비상용승강장을 단독 제연 하는경우 일선 현장에서는 계단실의 창문이 개폐가 가능한

창일경우 창문용자동폐쇄장치를 설치 하고 있고 또한 소방서에서도 창문용자동폐쇄장치를 요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침을 살펴보면 창문용자동폐쇄장치를 설치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1호및 3호 경우에만 해당되고 비상용승강장만을 단독 제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되지 않으므로 계단실에 창문용자동폐쇄장치를 설치 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여부

🕒 🔊 회신 1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제연구역의 출입문(창문을 포함 한다)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아파트인 경우 제연구역과 계단실 사이의 출입문은 자동폐쇄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연구역 외에 해당하는 계단실 창문의 경우「NFSC 501A」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연구역의 경우는 비제연구역의 창문에 설치된 자동폐쇄장치 설치여부와는 상관없이, 「NFSC 501A 제25조」에서 요구하는 성능은 만족하여야 합니다.

□ 제연설비(T.A.B) 측정 관련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25조]

관계법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25조】

질의 1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25조(시험, 측정 및 조정 등)제2항제5호가목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및 계단실의 출입문을 동시에 개방할 경우" 계단실에 창문형 폐쇄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창문을 열고 측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폐쇄하고 측정하여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1

● 현재「화재안전기준(NFSC 501A)」상 제연구역(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이 아닌 비제연구역(계단실)에 설치되어 있는 창문의 개폐여부는 화재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단실의 창이 열려 있는 경우와 닫혀 있는 경우 모두 제연구역의 제연성능은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성능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세대 차압측정공 설치 시 T분기 가능여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25조]

관계법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제25조】

◎ 질의 1

→ 차압측정공을 방화문에 설치하는 것 말고도 댐퍼에 연결하는 차압관을 T 분기하여 댐 퍼그릴에서 차압을 측정 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상관이 없다는 답변을 봤습니다. 저희 현장에도 방화문에 타공하여 차압공을 설치하기보다는 차압측정관을 T분기 하여 차압을 측정하고자 합니다. (방화문 시험성적에는 차압공설치 후 시험성적이 존재하지 않아서 따로 시험을 의뢰해야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시공을 해도 관계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회신 1

○ 「NFSC 501A」 제25조제2항제5호나목에서는 "출입문 등에 차압측정공을 설치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압의 측정시 실측이 용이하도록 출입문 등에 설치하도록 규정된 내용으로 기술의 변화, 건축 환경, 건물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 차압 을 측정할 수 있다면 T분기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T분기를 하는 경우 배관의 찌그러짐, 누설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중 물분무소화설비등 적용범위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2조]

관계법령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2조(적용범위)】

①「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15조의2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이하 이 조에서 "각 설비"라한다)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각 설비의 성능시험배관, 지중매설배관 등은 제외한다.

질의 1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에서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적용 범위는?

🕒 회신 1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2(소방시설의 내진설계)제2항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에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합니다. 물분무등소화설비는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18조에 따라 가스계 및 분말소화설비에 한하여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지하매립배관으로 지하층으로 인입하는 연결송수구배관의 내진 적용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6조]

관계법령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6조]

제3항 송수구 그리고 다른 기타배관을 포함하여 벽, 바닥 또는 기초를 관통하는 모든 배관 주위에는 충분한 이격이 있도록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질의 1

■ 지하 매립배관에서 지상1층 바닥으로 인입되는 경우에 지진분리장치 생략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회신 1

○ 지중매설되어 지하벽체 또는 바닥을 관통하여 인입되는 경우에는 지하층과 지반면이 같이 움직여 차등변위가 적어 지진분리장치 생략이 가능하며, 관통부 이격거리를 확보하거나 관통하는 벽면 또는 바닥면에서 30cm 이내에 지진 분리이음(신축이음쇠)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배관 관통부 이격거리 관련 문의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6조]

관계법령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6조】

질의 1

- 제6조 (배관) 조항 중 벽, 바닥 또는 기초를 관통하는 모든 배관 주위에는 충분한 이격 거리가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면제조항으로써
 - 1) 내화성능이 요구되지 않는 석고보드나 이와 유사한 부서지기 쉬운 부재를 관통하는 배관과
 - 2) 벽, 바닥 또는 기초의 각 면에서 30cm 이내에 신축이음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질의 1) 상기 면제사항의 적용이 1), 2)를 모두 만족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1) 또는 2)를 한가지만 만족해도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질의 2) 현재 진행중인 현장에 석고보드와 같은 비내력벽에도 관통부 이격거리를 준수 하여 시공중이며, 이 경우 관통부 양쪽면에 신축이음쇠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 는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1

○ 답변1)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6조의 규정은 내화성능이 요구되지 않는 석고보드나 이와 유사한 부서지기 쉬운 부재를 관통하는 배관 이거나, 벽·바닥 또는 기초의 각 면에서 30 cm 이내에 신축이음 쇠가 있는 경우에는 배관주위에 충분한 이격을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1) 과 2) 중 한가지만 만족하여도 가능합니다.

집 답변2) 답변1) 참조바랍니다.

□ 유동식 그루브 조인트가 신축이음쇠에 해당하는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7조]

관계법령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7조(지진분리이음)】

질의 1

■ 제7조 (지진분리이음) 신축이음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는데 이때, 신축이음쇠 (지진분리이음)의 종류가 여러가지 일것으로 판단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루브 유동식 커플링'도 신축이음쇠 (지진분리이음) 에 해당 하는지요?

🕒 회신 1

○ '유동식 그루부 조인트'도 신축이음쇠(지진분리이음)에 해당되며,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루브 조인트'는 '고정식 그루브 조인트'와 '유동식 그 루부 조인트'로 구분됩니다. '지진분리이음'이란 건축물 층간변위 발생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므로 지진시 배관에 손상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최소한 1도 이상의 변형(각)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관의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각도 변위가 1도 이상인 유동식 그루브 조인트를 사용합니다.

□ 내력벽이 없을 경우, 입상관 4방향 버팀대 설치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11조]

관계법령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11조(입상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질의 1

● 현장 구조상 입상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측벽에 설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닥에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도 되는지요?

🕒 회신 1

○ 건축 구조상 내력벽이 없어 벽면에 입상배관용 4방향 버팀대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바닥 또는 천장면에 4방향 버팀대 설치가 가능한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동력제어반(MCCF)의 경우도 내진적용 대상인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14조]

관계법령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14조]

벽면에 설치하는 경우 직경 8mm 이상의 고정용 볼트를 4개 이상 고정하여야 한다.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어야 한다. 수계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수신기 및 중계기는 지진발생 시 전도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질의 1

내진설계시 제어반의 개념이 수신반, 중계반등만 해당되는지아니면 소방 MCCF 반까지 포함되는지

🔍 회신 1

○ 「소방시설의 내진설게기준」에서의 "제어반등"이란 수신기(중계반을 포함),동력제어반, 감시제어반 등을 의미합니다.

2 화재안전기준(전기)

□ 비상방송설비 확성기 수평거리의 정의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관계법령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제4조(음향장치)】

2. 확성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설치할 것

질의 1

■ 주차장 방송 장비(컬럼형 10W 스피커) 위치 설계 시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의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를 스피커로부터 경보를 듣는 청자의 위치까지의 거리를 25m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스피커와 스피커의 설치 간격이 25m 이하로 해야 하나요?

🕒 회신 1

○ 수평거리란 건축물 내부의 지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수평면 상의 두점 사이의 거리를 말합니다. 이는 하나의 확성기를 중심으로 25m원을 만들었을때, 그층의 각 부분이 25m 원안에 포함되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해설서 p151 수평거리에 대한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상방송설비 우선경보방식 적용층 및 계단 등 수직공간 경보방식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제4조제7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8조제1항제2호]

관계법령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제4조제7호】

- 7.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 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8조제1항 제2호,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8조제1항제2호】

- 2.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 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 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질의 1

□ 비상방송설비 화재안전기준 제4조제7호의다목에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지하2층이 발화층일 경우에는 직상층이 지하1층까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상1층 까지를 직상층으로 봐야 하는 것인가요?

그 회신 1

-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제4조제7호의다목에 따라 비상 방송설비의 우선경보방식은 5층 이상,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 대상물에 적용되며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해당 규정에 따라 지하2층 발화 시에는 발화층인 지하2층과 직상층인 지하

1층 및 기타 지하층에 경보를 발하여야 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와 같이 지하2층 발화 시 지상 1층에 경보를 발하는 것은 현행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2

□ 대규모 고층 건축물 같이 수용인원이 많은 경우 전층 경보를 일제히 내보내면 계단에 동시에 피난자가 몰려 피난이 용이하지 않고 패닉현상도 유발되어 피해를 더욱 증가시킬 우려가 있어, 지금까지는 계단, EV실(엘레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 등의 감지기가 작동을 하였을 때는 수신기의 주경종만 작동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계단실의 경우 담배연기, 먼지 등에 의한 비화재보가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해설서 139P 내용과 괴리가 있어 이럴 경우 경보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 회신 2

-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에 '연면적 3천5백㎡ 이상인 것,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8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상방송설비의 우선경보방식은 5층 이상,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며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 그 직상층 및 지하층,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하도록'경보방식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화재안전기준 해설서 p.139 중 "계단 또는 경사로의 경우는 45m가 하나의 경계구역이고, 린넨슈트, 파이프피트 등은 수직로가 하나의 경계구역이다. 이에 따라 수직공간에서 화재 발생시 지구음향장치(시각경보 장치 포함)는 전체 명동하여야 한다"라고 수록한 부분은

- 화재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계단실 또는 E/V 승강로 상에 설치된 감지기가 작동한 경우 화재발생지점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화재가 건물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므로 건물 전체에 경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한 내용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 참고로, 현행 화재안전기준 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현재 계단실 등에서 발화한 때에는 전층에 경보하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 화장실 감지기 설치시 적응성 있는 감지기 문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1항, 제5항]

관계법령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1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제5항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다만, 제1항 단서 각호의 감지기로서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 2.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 3.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 4.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 5.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6.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 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 단면적이 5㎡ 이하인 것
- 7. 먼지·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감지기에 한한다)
- 8. 삭 제
- 9. 프레스공장·주조공장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질의 1

■ 근린생활시설 혹인 주민공동시설같은 상가에 화장실 감지기는 연기식감지기와 차동식 감지기 중 어떤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일 회신 1

-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또한 목욕실,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에는 오동작의 우려를 고려하여 화재감지기 설치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 상기 화재안전기준 및 설치 제외대상이 아니라면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 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 제1항에 따라 차동식감지기를 포함하여 부착높이별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실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발전기실 화재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1항, 제5항]

관계법령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1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제5항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다만, 제1항 단서 각호의 감지기로서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 2.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 3.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 4.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 운 장소
- 5. 목욕실 ·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 ·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6.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 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

단면적이 5㎡ 이하인 것

- 7. 먼지·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감지기에 한한다)
- 8. 삭 제
- 9. 프레스공장·주조공장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질의 1

■ 저희 사업장내에 설치된 발전기실에 교차회로 방식으로 연기감지기가 설계/설치 되어 있습니다. 화재안전기준에 의하면 "배기가스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에 "자가발전실" 항목이 있는데 여기선 연기감지기가 사용 안된다고 되어 있더군요. 위의 기준대로라면 연기감지기 대신 열감지기를 설치 해야 하나요?

🕒。 회신 1

- □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업장내 설치된 연기감지기가 적응성에 맞게 부착높이를 충족하여 설계 및 설치된 감지기가 발전기실 특성상 배기가스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적 특성으로 오동작이 자주 발생한다면 적응성에 맞는 감지기로 교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7항에 따라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는 [별표1]을 적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 발전기 기동시 급/배기 휀에 의해 배기가스가 체류하지 않고 바로 빠져나가는데 이럴 경우 그냥 연기감지기를 사용해도 괜찮은가요?

🖳 회신 2

○ 급·배기 시설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연기감지기 설치로 인한 비화재보 발생이 빈번하며「(NFSC 203)」제7조제7항 관련 [별표1]에 따라 배기가스가 다량

으로 체류하는 장소로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3

20년도 7~8월 기간에(장마기간) 연기감지기가 12개 중 5개가 오작동 했는데 감지기 제작 업체 연구소에 원인 분석 결과 "단순 먼지유입에 의한 작동"으로 판명 났습니다. 급/배기 휀 기동에 따른 강한 바람에 의해 먼지가 날리면서 감지기 내부에 들어갔다가 장마철 습기로 인해 오작동이 앞으로도 예상 되는데 이럴경우 연기감지기 이외에 열감지기 설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회신 3

○ 적응성에 맞는 감지기(열감지기 포함) 교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 질의 4

■ 마지막으로 열감지기 설치가 가능하다면 어느 것으로 사용 해야 하나요? 가스 발전기는 차동식 감지기, 디젤 발전기는 정온식 감지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감지기 판매처 사이트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연료 구분에 따른 열 감지기를 따로 사용 하는게 맞나요?

🔍 회신 4

○ 답변2에서 언급한대로 배기가스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경우에는 「NFSC 203」[별표1]에 따라 연기감지기가 아닌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고, 가스식이나 디젤식의 구분에 따른 감지기 종류는 현행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지 않고 있으니「NFSC 203」[별표1]에 따라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감지기와 조명기구 이격거리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3항]

관계법령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3항

제1호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제10호의나 연기감지기는 설치시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제10호의마 연기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질의 1

● 이파트 세대의 감지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조명기구와 감지기(연기감지기)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해 문의합니다.

🔍 회신 1

- 현행 화재안전기준 상 감지기와 조명기구의 이격거리에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 조명기구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해 감지기 감열부가 작동하여 감지기가 오작동 할 확률은 다소 미약하다고 판단되나, 최근 인테리어 등의 목적으로 발열이 강한 조명기구 설치가 증가하고 있어 감지기 인근에 설치한 조명기구로 인해 비화재경보 가능성이 있을 경우 감지기를 조명기구와 이격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 소공간 감지기 설치시 이격거리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3항]

관계법령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3항

제1호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제10호의나 연기감지기는 설치시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제10호의마 연기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질의 1

→ 공동주택의 침실이 구획되어 옷장(드레스룸)에 문을 달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옷장의 면적이 가로1.18m x 세로 1.08m로 되어 있습니다. 연기감지기를 달려고 보니 벽과의 이격거리 0.6m를 만족하지 못하는데, 이럴 경우 차동식감지기를 설치 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드레스룸에 연기감지기를 설치 하고 싶은 경우, 소공간 벽과의 이격거리 0.6m무시하고 설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회신 1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203)」제7조제3항 제10호마목에 의해 연기감지기 벽면에서의 이격거리로부터 0.6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하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이격거리를 충족하기 어려운 좁은 실내에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 감지기 성능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드레스룸이 붙박이장이나 신발장과 같이 가구류라면 감지기를 설치하지아니할 수 있습니다

질의 2

▼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 등 생활시설의 거실에 가로 1m, 세로 0.8m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이 수납공간 안에는 전등, 전열 콘센트 시설이 없으며, 이블 또는 옷 기타 생활용품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수납공간 안에 소방설비인 감지기와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2

□ 문의하신 작은 수납공간이 붙박이장과 유사하게 별도 구획된 실이 아니라면고정식 가구류로 볼 수 있어 감지기와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설치를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차동·

차동식열감지기 및 연기감지기 이격거리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3항]

관계법령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3항

제1호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제10호의나 연기감지기는 설치시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제10호의마 연기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질의 1

전장형 시스템냉난방기 설치시 천장에 붙어있는 열감지 및 연기감지기와 안전거리가 궁금합니다. 거리가 부족할 경우 시스템냉난방기의 바람나오는 4개 부분에서 감지기 쪽부분을 차단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회신 1

- 이전에는 시스템에어컨 등을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 볼 수 있어 1.5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최근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제정 관련 실물실험 결과 시스템에어컨 등이 연기감지기 작동에 영향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어 시스템에어컨 등을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 보지 않는 것으로 답변을 변경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연기감지기의 경우「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NFSC203)」제7조제3항제10호마목에 의해 연기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하나, 에어컨의 기류방향에 영향을 받을 확률이 낮아 감지기 성능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위치 또는 형태로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스템에어컨 설치시 연기감지기 이격거리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3항제1호. 제10호의마]

관계법령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3항제1호, 제10호의마,]

제7조제3항제1호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 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 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 야 한다.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하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 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제7조제3항제10호의마 연기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할 것

🚫 질의 1

아파트 침실내 시스템에어컨(냉방 전용, 난방안됨) 설치시 연기감지기가 도면과 같이 에어컨의 모서리 방향으로 설치되었을 경우 감지기 위치가 시스템에어컨에서 1.5m이 내일 때 이설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u>의</u> 회신 1

- 이전에는 시스템에어컨 등을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 볼 수 있어 1.5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최근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 제정 관련 실물실험 결과 시스템에어컨 등이 연기감지기 작동에 영향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어 시스템에어컨 등을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 보지 않는 것으로 답변을 변경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203)」제7조제3항 제10호의마에 따라 연기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 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아파트 대피공간 및 실외기실 감지기 설치 관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5]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5항제2호]

관계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5]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법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 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5항제2호] 제5항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2.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질의 1

제가 시공한 다른 아파트에선 대피공간 및 실외기실에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 난방도되지 않는 대피소, 실외기실, 베란다 감지기가 동절기 실내외 온도차로 결로가 생겨 수시로 오작동 하여 민원이 끊이질 않아 입주자 및 관리자가 불편을 호소하거나 어느 세대는 임의로 감지기를 떼버리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관리가 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꼭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면 대피공간등에는 단독형 감지기를 설치해서 동 전체에 오류 신호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해당 세대에만 감지가가 작동하는 방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기존 자탐 설비에 연동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연동해야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 1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203)」제7조제5항 제2호에 따라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갂지할 수 없는 장소"에는 갂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창이 설치되어 외기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감지기를

설치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다만, 「공동주택 세대 내 감지기 설치 업무처리지침('19.6.26.)」에 따라 침실과 거실(통상적 개념의 장소)에만 연기감지기를 설치하고, 실외기실, 발코니 등이 온도변화와 외부먼지 유입 등으로 인해 비화재보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라면 「NFSC203」제7조제7항에 따라 설치장소별 감지기 적응성을 고려하여 정온 식을 포함한 열감지기 등을 설치가능 하며 대피공간은 감지기 설치 제외, 실외기실은 외기와 상시 개방된 경우 제외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지기 설치 제외 장소 해당 여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5항제2호]

관계법령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5항제2호]

제7조 제5항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갂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2.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질의 1

작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 안전기준에 보면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 할 수 없는 장소나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라고합니다. 저희가 소유한 공장은 건축물 외벽 4면 및 지붕 일부가 개방공간으로 외기와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환경적으로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화성소방서에서도 저희 공장은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화재감지기가 외부에 있어 설치 유지관리가 되지 않음에도 설치를 꼭 해야 하는 건가요?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203)」제7조제5항

제2호에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에는 감지기의 설치제외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첨부하신 사진과 질의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문의하신 공장용도의 건축물은 외벽 4면과 지붕이 개방된 구조로 외기가 직접 노출되어 감지기가 유효하게 화재를 감지하기 어려운 구조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NFSC203)」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라 감지기 설치 제외가 가능할 것으로 파단됩니다.

질의 2

2016년도 개교 이후로 누수·습기·먼지 등의 사유로 화재 감지기 오작동이 끊임 없이 발생하여 주차장은 2020년 7월 연기감지기에서 열감지기로 교체하였으나 교직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필로티 앞에 천장에 설치한 감지기에서 오작동이 여러 차계 발생하여 실제로 소방서 및 무인경비시스템의 출동이 여러 차례 있어 행정력 등의 낭비를 초래 함.

감지기 오작동률을 줄여서 학생 및 교직원들이 혼란 없이 실제 화재 대피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소방 관련 법령 및 규정상 교직원 주차장에 설치한 감지기(4개) 철거가 가능한지 여부

교 회신 2

● 귀기관에서 언급한 사항을 토대로 유추해 보면 감지기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 감지기 설치 장소의 결로로 인해 감지기가 오작동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작동 방지를 위해 감지기 교체 등 다양한 조치를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면,「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 기준(NFSC 203)」제7조 제5항 제4호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에 감지기설치를 제외하는 규정을 적용하여 감지기 철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식성가스(암모니아)가 체류하는 장소로써 감지기 설치 제외가능 여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5항제3호]

관계법령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5항제3호]

제7조제5항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다만, 제1항 단서 각호의 감지기로서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 2.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 3.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질의 1

■ 돼지를 직접 가두어 키우는 축사(돈사)에 감지기 설치시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한 감지기 설치제외 장소로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 회신 1

- 귀하께서 돈사 가축 분뇨에서 발생하는 부식성가스로 인해 감지기 오작동을 우려하여 감지기 설치제외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 ◎ 축사환경과 관리시스템에 따라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장소에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별표 1]를 참고하여 설치하거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 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 1항 단서에서 따라 특히 비화재보 우려가 높은 장소에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파다됩니다.
- 다만, 감지기 유지·관리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 제5항 3호에 따라 감지기 설치제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2

↑축분뇨(돼지)와 음식물쓰레기를 혼합/발효하여 Bio Gas를 만들어 도시가스에 판매하고, 전기를 만들어 매전하며 물은 정화하여 연계처리 및 공정수로 전환 퇴비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퇴비동 상부에 설치된 연기감지기 및 판넬이 퇴비에서 나오는 SOx,Nox, 암모니아등 부식성 가스와 수증기에 의해서부식에 의해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화재 감지기 설치를 해도 수명이 짧아 매년 3천만원정도의 교체비용이 발생하고 유지 관리가 매우 어려운 2개소에 대해 설치 제외 혹은 다른 방법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2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203) 제7조제5항 제3호에 따라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에는 감지기의 설치제외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문의하신 퇴비동은 "부식성가스(암모니아 등)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로 보여 집니다.
- 따라서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203) 제7조 제5항제3호"로 판단되며 이러한 경우 "감지기 설치 제외 장소"로 볼 수 있습니다.
- 현장확인이 가능한 관할소방서 건축담당자에게 문의 후 협의하여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시각경보장치 설치장소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203) 제8조제2항제1호]

관계법령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8조제2항제1호

- 제8조(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제2항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질의 1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203)」제8조제2항제1호의 "기타 이와유사한 장소"의 기준은 무엇인지?

🕒 회신 1

○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란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의 범주"에 해당하는 장소를 의미하며 화재안전기준에서 사용하는 "거실"의 정의는 「건축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청각장애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지하 주차장과 같은 주차시설등이 포함이 되는지? 청각장애인도 건축물의 모든 시설, 모든 장소를 사용하는데, 청각장애인이 사용하는 공용 거실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하는지?

🕒 회신 2

○ 귀하께서 상기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8조제2항제1호의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을 "청각장애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 한정하여 오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규정은 청각장애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만을 한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조문을 다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3

주차장은 시각경보기 설치 대상인가요?

🕒 회신 3

○ 시각경보장치 설치대상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에서 규정하고 있고 아래와 같습니다.
사.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라목에 따라 자동화

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같다.

- 1)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 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 2)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발전시설 및 장례시설
- 3)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 4) 지하가 중 지하상가
- 귀하께서 문의하신 지하주차장이 상기 설치대상의 부속시설에 해당한다면 시각경보장치 설치대상에 해당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발신기 보행거리 기준에 관한 질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9조]

관계법령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9조제1항제2호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질의 1

A,B 발신기가 2개소 있으며, 건축물 내 각 부분에서 각각의 발신기까지 보행거리는 40m이내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A발신기와 B발신기 2개의 발신기 사이 보행거리가 40m이상일 경우에도 발신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1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9조제1항 제2호의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발신기와 발신기간 보행거리 기준이 아닌 복도의 길이 내지 별도로 구획된 실로부터 보행거리 기준으로 40m를 의미합니다.

냉동창고 내 발신기 면제가능여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9조]

관계법령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9조제1항제2호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 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 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질의 1

냉동창고내 온도가 영하 20도시 정도로 유지 되여 운영됩니다. 이로 인하여 냉동창고내 소방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발신기를 설치하였으나 발신기의 결로 현상으로 오동작이 지속 되는바. 감지기의 경우는 특수 장소의 경우 설치 제외 장소가 명문화 되어 있으나. 발신기는 설치 제외장소에 대한 규정이 없어 오동작이 지속되어도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감지기 설치 제외 장소와 같이 준하여 발신기도 기준이 마련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신 1

- 현행 화재안전기준상 냉동창고로 사용되는 부분의 경우 감지기는 면제규정이. 있어 면제가 가능하나. 발신기는 면제 규정이 없어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파다됩니다.
- 다만, 현재 영하 -20℃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발신기가 없고, 기존 발신기 설치시 결로 · 습기등으로 오동작이 지속되어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 하고 있는등 이와 같은 사유로 부득히 냉동창고 내부에 발신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외부에 발신기를 설치하여 수평거리 25m기준 (「NFSC 203. 제9조제1항제2호)을 맞추는등의 다양한 방법(냉동창고 내부 음향도 고려)을 고려하여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축행위 없는 단순 내부 칸막이 변경시 기존 HIV 배선 사용 여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관계법령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33호, 2015. 1. 23., 일부개정, 시행 2015.3.24.]

질의 1

● 예전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이라 기존 감지기 배선은 HIV 및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하였는데 기존 건축물에서 단순 레이아웃 변경이나 인테리어 변경 등으로 구획된 실이 생겼을 때 새로 구획된실에 감지기를 증설하고자 합니다.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및 감리지정 미대상인, 단순 감지기 증설공사) HIV배선과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하여 감지기와 감지기사이의 배선을 공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국민안전처고시 제2015-33호, 2015. 1. 23., 일부개정, 시행 2015.3.24.]이 개정되면서 제11조(배선)제2호의 단서조항 '다만, 감지기 상호간의 배선은 600V비닐절연전선으로 설치할 수 있다.'가 삭제되었으며, 해당 고시 부칙〈제2015-33호, 2015.1.23.〉제2조(경과조치)에 의하면 건축허가 등의 동의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고되어있습니다.
- □ 따라서, 이 고시 시행 전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 소방대상물에 건축행위(증축, 용도변경등)가 없는 단순한 칸막이 구획으로 인해 생기는 감지기 배선작업의 경우 기존 화재안전기준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방전기분야에 통신선로로 TSP AWG 전선 사용 문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11조제2호

관계법령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11조제2호

- 2.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다음 각목 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가.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쉴드선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광케이블의 경우에는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열성능이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가목외의 일반배선을 사용할 때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 할 것

질의 1

■ 소방전기분야에 통신선로는 F-CVV-SB 케이블은 KS인증 제품이라 사용이 가능하지만 TSP AWG는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KS인증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UL인증이 있어 일반적으로 사용승인이 나는 부분인데 이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여 문의 드립니다.

-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 질의자께서 TSP AWG를 R형수신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문의하신 경우라면 (NFSC 203)제11조제2호의가목에 따라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쉴 드선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광케이블의 경우에는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열성능이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않는 방식의 광케이블의 경우 내열성능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로 배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추가로 제공하신 자료(UL1424)를 검토해 본 결과 전자파 방해 방지 기능

(Electromagnetic shielding)이 언급되어 있으나 문의하신 내용 및 제품이 명확하지 않은 관계로 반드시 제조사에 문의하시어 전자파 방해 방지 기능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고, 포함되어 있는 경우 R형 수신기 배선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수전설비반에서 전기분전반까지 배선처리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11조]

관계법령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11조제2호

- 2.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다음 각목 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가.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쉴드선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광케이블의 경우에는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열성능이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가목외의 일반배선을 사용할 때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 할 것

질의 1

B동의 수신기,유도등, 시각경보장치의 보조전원반에 연결된 전기분전반은 A동의 수전설비반에 연결되는 전선은 일반F-CV로 해도 되는지 소방전선 F-FR8로 해야 되는지요? (수신기를 B동에 따로 놓았습니다.)

🕒 회신 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11조 각 호에 따라 전원 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을, 그 외의 배선(아날로그식 등 제외)은 내화 또는 내열배선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수전설비반에서 전기분전반까지 배선처리"는 "전원회로의 배선"처리방식에 해당하며 "내화배선"으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 내화배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 제1호에 따라 HFIX 전선 등을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등에 수납 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일정 깊이 이상으로 매설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 제1호 비고에 규정된 성능을 충족하는 내화전선을 케이블 공사방법에 따라 노출시공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소방간선 제어케이블 내열배선 적합여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11조]

관계법령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11조]

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외에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질의 1

- NFSC 102 [별표1], NFSC 203 화재안전기준해설서(p173) 4항 관련입니다.
 - 배선용도; 화재감시(수신반에서 아파트동 중계반)
 - 배관; 약전덕트(지하주차장노출)
 - 배선규격; CCV1.5㎜**3C(제어용 가교폴리에틸렌절연 비닐시스케이블) CCV-AMS1.5 ㎜**1Pr(제어용 가교폴리에틸렌절연 비닐시스 알루미늄 마일러 테이프 차폐케이블) 배선 규격(제어케이블)이 내열배선 규정에 적합여부와 부적합시 제어케이블로 FR-CVV-SB (난연성 비닐절연 비닐시이즈케이블)로 사용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 회신 1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11조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 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1]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수신반에서 중계기까지 배선처리'는 '그 밖의 배선'처리 방식에 해당하며 '내열배선'으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 내열배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의 [별표1] 제2호에 따라 HFIX 전선 등을 금속관·금속제 가요전선관·금속 덕트에 수납하여 시공 또는 케이블 공사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 이러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 제2호 비고에 규정된 성능을 충족하는 내열전선·내화전선을 케이블공사방법에 따라 노출시공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천장속 감지기 배선처리 방법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11조제2호나목]

관계법령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2.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다음 각목 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가.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쉴드선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광케이블의 경우에는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열성능이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가목외의 일반배선을 사용할 때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 할 것

질의 1

■ "첨부1"에 해당하는 내용 해석은 "내화 및 내열전선을 사용","내화 및 내열 구조가 된 곳에 일반전선 사용"으로 해석 가능 여부.

🕒。 회신 1

- 내화배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 제1호에 따라 HFIX 전선 등을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등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일정 깊이 이상으로 매설하거나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 제1호 비고에 규정된 성능을 충족하는 내화전선을 케이블 공사방법에 따라 노출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화 및 내열전선을 사용"의 해석을 "내화 및 내열 구조가 된 곳에 일반전선 사용"으로 해석하지 않으며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일정 깊이 이상 매설하여야 화재안전기준에서 규정한 내화배선 시공방법에 해당함을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첨부2"에 해당하는 "케이블 공사방법(노출시공을 말함)에 따를 것" 해석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 2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 제1호 비고에 규정된 성능을 충족하는 내화전선을 케이블공사방법에 따라 노출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질의 3

■ "첨부3"에 해당하는 내용 해석을 "내화전선 인증을 받은 제품을 난연합성수지관을 사용

하여 천정속 같은 은폐장소에 사용가능한지"여부

<u>교</u> 회신 3

● 화재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화배선 시공방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내화전선 인증을 받은 제품을 케이블공사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출시공이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질의 4

■ "첨부4"에 해당하는 내용 해석을 "내열전선 인증을 받은 제품을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사용하여 천정속 같은 은폐장소에 사용가능한지" 여부.

🔍 회신 4

● 화재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열배선 시공방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내열전선 인증을 받은 제품을 케이블공사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출시공이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질의 5

■ "첨부5"과 같이 감지기 배선을 시공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11조제2호 나목에 따라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 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첨부파일5"로 문의하신 감지기 배선 시공방법은 HFIX 전선을 금속제 가요전선관에 수납하여 시공한 부분은 내열 또는 내화배선 시공법에 적합하나, 단열재에서 천장면 난연CD전전관에 수납한 시공방법은 화재안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열・내화배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따라서 답변1을 참고하여 내화배선에 따른 시공을 하거나 내열배선에 따른

시공으로 배선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 설치 관련 질의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5조제1항]

관계법령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5조제1항

제5조(피난구유도등) ① 피난구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2. 직통계단 ·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질의 1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에 대하여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303)제5조(피난구유도등)만 본다면 제5조에 해당되지 않는 곳은 피난구 유도등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옥상에 잠시라도 대피하여 구조를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잠겨있지 아니하거나 재실자가 옥상 출입문을 개방할 수 있는 경우라면 옥상으로의 출입문에도 피난구유도등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아울러, 최근 지어지는 건축물의 경우 옥상을 통해 건물내 다른 직통 계단 (피난층으로 통하는)으로 통하는 다른 출입구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 유도등 설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현장확인이 가능한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도통로유도등 설치 높이 및 설치제외 여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6조제1항제1호, 제10조제2항제2호]

관계법령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6조제1항제1호, 제10조제2항제2호]

제6조제1항제1호 통로유도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가. 복도에 설치할 것
 -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 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라.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 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제10조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 1.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질의 1

● 현재 시공중인 판매시설(지하2층~ 지상 4층)로써 옥외에 완전 개방된 복도 통로에 복 도통로유도등을 벽체 및 바닥매립 시 눈, 비등에 의해 침수우려가 높아 복도통로유도 등 설치 높이를 바닥으로부터 1.5 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설치 제외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회신 1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복도통로유도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의 통로에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 위치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판매시설 복도에 설치할 복도통로유도등 설치 높이는 1m이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거실통로유도등 설치높이 1.5m를 준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화재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로유도등 제외 규정은 다음과 같고, 이에 해당한다면 설치 제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NFSC 303」 제10조제2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1호.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 2호.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 구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 다만, 개방된 옥외 복도로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더라도 빗물 유입 등 침수피해로 유지보수 문제로 인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복도통로유도등이 없는 상태에서도 지상으로 피난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외부 복도에 유효 한 조명이 설치된 경우)라면 복도통로유도등을 일부 제외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복도통로유도등 설치 제외와 관련한 사항은 현장확인이 가능한 관할 소방서 건축민원담당자와 협의하여 정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거실통로유도등 설치 높이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6조제1항제2호]

관계법령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6조제1항제1호. 제10조제2항제2호]

제6조제1항제2호 통로유도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가.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 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질의 1

유도등 및 유도표지 화재안전기준 제6조 1항 2호에 "거실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m이상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 부터높이 1.5m이하에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방된 지하주차장의 기둥에 거실통로유도등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m이상에 설치하여도 가능한지요?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303)」제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규정한대로 거실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 부터 1.5m이상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 기둥부분의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m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주차장과 같이 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 1.5m 이하에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반드시 1.5m 이하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화재시 농연이 천장부터 쌓여 내려와 1.5m 이상에 위치한 유도등이 식별이 불가능 할 경우 농연으로 인해 기둥등이 대피상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기둥 아래부분에 거실통로유도등을 설치해 마지막까지 대피를 유도하기 위하여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합니다. 그러나 만약 기둥의 형태가 대피에 장애를 주지 않는 경우라면 1.5m이상의 위치에 설치하여도 화재안 전기준 위반사항은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피난구유도등 제외 대상 여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제5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1항제1호]

관계법령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5조제1항제1호. 제10조제1항제1호]

제5조(피난구유도등) ① 피난구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제10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난 구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1.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외부 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한다)

🛇 질의 1

상기 대상물은 아파트 상가로 건축물 대장상 지하1층으로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출입구로 나가면 지상으로 바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관할시청 건축과 질의결과 지하1층을 지상 1층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고합니다. 이미 설치되어있는 소방시설이지만 유지관리의 이유 때문에 설치제외대상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의 제3호다목에 따라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 하며 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도등 및 유도 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을 설치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상기 화재안전기주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한다)"를 만족하는 경우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현장확인이 가능한 관할소방서에 문의하여 설치제외 관련사항을 협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ED 센서등 비상조명등 구성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제4조]

관계법령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제4조]

제4조(설치기준) ① 비상조명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 2.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lx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3.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 4.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 치)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질의 1

☑ 공용계단내 조명기구를 인체감지센서가 내장된 비상겸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평상시 인체감지센서로 점등 되다가 비상시 자가발전전원을 사용하여 상시등이 되어 비상등에 역활을 합니다. 이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은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 비상전원으로부터 자동으로 전력을 공급받도록「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제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 귀하께서 언급하신 센서등이 화재 등으로 인한 정전시 점멸되지 않고 비상 전원에 의해 자동으로 상시 점등된 상태로 유지되고 기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다면 비상조명등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상콘센트의 비상전원 인정 범위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제4조제1항제2호의단서]

관계법령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제4조제1항제2호의단서]

둘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은 수 있도록 상용 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질의 1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중 비상콘센트의 비상전원 공급과 관련하여 둘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아야 비상전원설비(자가발전설비, 비상전원 수전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의 조건가 다르게 하나의 변전소에 변압기 뱅크가 분리되어 있으며,서로 다른 D/L라인 으로 2회선 전력을 공급받는다면, 상기의 비상콘센트 설비용 비상전원설비(자가 발전설비, 비상전원수전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회신 1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둘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사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귀하께서 언급하신 '하나의 변전소에서 2회선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것은 현행 기준 상 '다른 변전소'에서 전력을 공급받는 방식이 아니므로 비상전원 설치를 제외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다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동일 변전소의 서로 다른 분배라인이 2회선 수전 가능하다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니 동 전력공급 담당부서에 확인하여 변전소가 정전시 2개의 분배라인이 동시에 전력공급이 중단될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전소와 고객사와의 책임분기점 및 예비전원제도 등 정전시 전력공급이 중단 없이 상용전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추가 답변을 받으신다면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로 볼 수 있어 화재안전기준에서 규정한 비상전원 설치 제외대상으로 볼 수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 무선기기접속단자 설치 기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제6조]

관계법령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제6조]

- 제6조(무선기기 접속단자) 무선기기 접속단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이동중계기를 설치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에 의한 지장을 받지 않고 지상에서 유효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 2. 단자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3. 지상에 설치하는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0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접속단자에서 5m 이상의 거리를 둘 것
 - 4. 지상에 설치하는 단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견고하고 함부로 개폐할 수 없는 구조의 보호함을 설치하고, 먼지·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 5. 단자의 보호함의 표면에 "무선기 접속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질의 1

■ 무선통신보조설비 공사에서 무선기기 접속단자는 지상에 설치할경우 통상 유효하게 소방

활동을 할수 있는 장소 또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를 하게끔 화재안전기준에 명시되어있는데 통상적으로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우 건물 외벽에 매립시키거나 경비실 내부에 접속단자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 없어 질의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미관상의 이유로 경비실외부에 매립 또는 노출 시키지만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상시 사람이 근무할수 있는 경부실 내부에 접속단자를 설치해도 무방한지 알고싶습니다.

- 귀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에 의한 지장을 받지 않고 지상에서 유효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 따라서 수위실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제9조제3항제3호 라목 규정에 따라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 접속단자가 감시제어반실에도 있어야 합니다.

【기 획】

소방청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국장 남화영

소방분석제도과장 최재민

제도계장 김문하

안전기준계장 정홍영

소방시설민원센터 문찬호, 도진선, 박종화, 안성수,

권태규, 민경일, 차선영, 여광동

2021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

발 행 일 : 2021년 9월

발 행 처 : 소방청

소방정책국 소방분석제도과

TEL: 1661-9119

FAX: 044) 715-7621

인 쇄 처 : 윤기획 : 044)862-7997

〈 비매품 〉